

세법연구 24-01

#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 EU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

홍병진·박수진·김민경

2024. 10.

## 연구진

### 연구책임자

홍 병 진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박 수 진 공인회계사

김 민 경 선임연구원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방법 .....	2
II.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규제 및 과세제도 .....	7
1. 규제제도 .....	7
2. 토큰증권 사례 .....	19
가. 비금전신탁수익증권 .....	19
나. 투자계약증권 .....	22
3. 과세제도 .....	24
가. 가상자산 .....	24
나. 토큰증권 .....	28
다. 과세제도 요약 .....	39
III.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 및 회원국별 현황 .....	42
1. EU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 .....	42
가. MiCAR(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	43
나. MiFID II .....	46
다. DLT 파일럿 시장 인프라 규칙(DLTR) .....	50
2. EU 회원국 현황 .....	52
가. 규제제도 .....	52

나. 과세제도 .....	53
3. 독일 .....	55
가. 규제제도 .....	55
나. 증권토큰 사례 .....	64
다. 과세제도 .....	65
4. 프랑스 .....	77
가. 규제제도 .....	77
나. 증권토큰 사례 .....	82
다. 과세제도 .....	84
IV. 국제 비교 및 시사점 .....	93
1. 규제제도 .....	93
2. 과세제도 .....	96
가. 가상자산 .....	96
나. 토큰증권 .....	102
3. 시사점 .....	105
가. 경제적 실질에 따른 이분화된 접근방식의 확립 .....	105
나. 가상자산 과세 실무 개선 방안 .....	107
다. 가상자산 과세소득 범위의 점진적 확대 .....	111
라. 토큰증권 과세 규정 정비의 필요 .....	113
V. 결론 .....	116
참고문헌 .....	118
[별첨 1] EU 회원국별 암호자산 규제제도 현황 .....	125
[별첨 2] EU 회원국별 암호자산 과세제도 현황 .....	142

## 표 목차

〈표 II-1〉 토큰증권 규제 현황 및 개정방향 .....	18
〈표 II-2〉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의 특례내용 .....	20
〈표 II-3〉 부동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특례내용 .....	22
〈표 II-4〉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 .....	28
〈표 II-5〉 신탁소득 과세제도 .....	33
〈표 II-6〉 투자조합 과세제도 .....	38
〈표 II-7〉 우리나라의 토큰증권 과세제도 .....	41
〈표 III-1〉 독일 가상화폐 단계별 소득세 처리 .....	72
〈표 III-2〉 독일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 토큰 단계별 소득세 처리 .....	74
〈표 III-3〉 프랑스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적 규제 연혁 .....	82
〈표 III-4〉 프랑스의 디지털자산과 토큰증권의 과세제도 .....	92
〈표 IV-1〉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 규정 .....	98
〈표 IV-2〉 조사국의 가상자산 과세 처리(취득·보유 단계) .....	99
〈표 IV-3〉 조사국의 가상자산 과세 처리(처분 단계) .....	101
〈표 IV-4〉 주요국의 토큰증권 과세제도 .....	104
〈표 1〉 EU 회원국별 암호자산 규제제도 .....	137
〈표 2〉 EU 회원국별 암호자산 과세제도 .....	164

## 그림 차례

[그림 II-1] 조각투자 사업의 일반적 거래구조 .....	12
[그림 II-2] 토큰증권의 개념 .....	15
[그림 II-3]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하에서 토큰증권의 발행 방법 .....	17
[그림 II-4] 에이판다파트너스의 부동산담보 대출채권의 토큰증권 발행 사례 .....	20

# I. 서론

## 1. 연구배경

- 최근 디지털 기술을 금융상품에 적용하려는 다양한 시도와 함께 새로운 투자수단인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이 등장함에 따라 전 세계에서 디지털자산을 정의하고 규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sup>1)</sup>
  
- 우리나라도 2016년 가상자산 규제 논의를 처음 개시한 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원화된 규제 인프라를 구축 중이고,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조각투자상품의 등장으로 금융법률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음
  - 2022년 7월 정부는 디지털 금융의 혁신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현재는 가상자산 관련 전반적 규율체계를 마련 중에 있음
  - 2023년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고 2024년 법제화를 예정한 바 있음
  
- 2020년 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세제를 마련하였으나, 과세 인프라의 개

---

1)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는 2019년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하고 회원국에게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정지수, 2020, p. 1), 유럽연합(EU)은 2018년 제5차 자금세탁방지 지침(AMLD 5)을 공개한 후 2020년 암호자산 시장 구축을 위한 규제내용을 담은 디지털 금융 패키지를 발표하고, 2024년 현재 그 결과물인 MiCAR, DORA, DLTR를 시행(예정)하여 디지털자산 시장의 조성과 시장 참여자와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경감하고자 함

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조각투자상품의 과세에 대한 논의가 대두함에 따라 현행 세제의 개선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음

- 해외 주요국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토큰과 그 외 가상자산을 이분법적으로 과세하는데, 이는 조세 중립성의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우리나라 가상자산 세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 연구방법

□ 본 보고서는 문헌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회원국의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 및 과세처리 규정을 조사함

-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럽연합 준칙과 규정을 토대로 암호자산 과세에 대한 국내 입법을 마련하기 때문에, 회원국의 제도 소개에 앞서 암호자산 관련 유럽연합 준칙 및 규정을 살펴보고 회원국별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함
- 조사국은 유럽연합 회원국 중 암호자산 규제를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암호자산 관련 소득을 과세하는 독일과 프랑스를 채택함
- 시간과 지면상 제약으로 국제조세의 측면에서 소득원천 및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비)과세 판단에 관련한 내용과 암호자산 세무 관련 데이터의 자동 교환 프레임워크에 해당하는 OECD의 암호자산신고프레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과 EU의 조세분야 행정협력 준칙(DAC8)과 관련한 내용은 다루지 않음<sup>2)</sup>

□ (용어) 암호화폐, 암호자산, 가상화폐,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등에 대해 보편적으로 통용하는 정의를 내릴 수 없음<sup>3)</sup>

2) 참고로 OECD CARF 이행을 위한 2024년 세법 개정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되어 안전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을 암호화자산이라고 정의한 법률상 용어를 담고 있어 이후 가상자산과 암호화자산 간 개념 및 범위상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Apolline Blandin et al., 2019, p. 15

- 국가 제도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범위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해당 국가가 그 범위나 의미를 의도적으로 구분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실무적으로 선호하는 용어를 표시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 국제기관 또는 국가에서 공개하는 규정, 유권해석, 보고서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치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보임
  -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또는 전자 화폐(e-money)의 디지털 표현을 의미할 수 있으며 종종 가상화폐라는 용어와 혼용함<sup>4)</sup>
  - 가상화폐를 ‘전환 불가능한’ 또는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로 구분할 때 전자는 법정 화폐로 교환할 수 없고 특정 환경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하고<sup>5)</sup> 후자인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로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음<sup>6)</sup>
  - 양방향(Bi-directional)으로 전환가능한 가상화폐는 암호화폐(cryptocurrencies)와 동의어로 간주함<sup>7)</sup>
  - 암호화폐는 코인(coin)과 토큰(token)을 포함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코인은 자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체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인 반면<sup>8)</sup> 토큰은 기존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단위 가치를 의미하며 사례별로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 토큰으로 세분화함
  - 최근 암호화폐는 암호자산(cryptoassets)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면서<sup>9)</sup> 암호화폐를 교환토큰 또는 결제토큰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으며<sup>10)</sup> ‘식별 가능한 실체

4) 전자화폐(e-money)는 법정 화폐의 디지털 표현인 반면 가상 화폐는 화폐의 정의 기능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만 정부가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화폐의 법적 지위가 없음(FATF, 2014, p. 4.)

5) FATF, 2014, p. 4

6) FATF, 2014, pp. 4~5; ECB, 2015, p. 28

7) FATF, 2014, p. 4; ECB, 2015, p. 29

8) Aleksandra Bal, 2018, p. 1

9) 암호자산을 가치 또는 계약적 권리의 디지털 표현(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or contractual rights)으로 설명하거나(HMRC, “CRYPTO10100 - Introduction to cryptoassets: what are cryptoasset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10100>, 검색일자: 2024. 8. 20.; Financial Conduct Authority, 2019, p. 8),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전송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이라고 설명함(EU, “What the EU is doing and why,” [https://finance.ec.europa.eu/digital-finance/crypto-assets\\_en](https://finance.ec.europa.eu/digital-finance/crypto-assets_en))

에 대한 금융상 청구 또는 채무'를 암호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함<sup>11)</sup>

-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 토큰,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의 기록으로 구성하거나 표시하는 모든 자산을 포괄하여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이라는 용어가 쓰임<sup>12)</sup>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조사국의 제도를 설명할 때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는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암호자산, 가상화폐, 암호화폐, 토큰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함
  - EU MiCAR의 순차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간 용어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용어 차이가 반드시 제도의 적용 범위상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만 볼 수 없고, 국가 제도의 일률적인 비교는 용이하지 않고 단편적인 면만 강조할 여지가 있음
- 우리나라는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을 활용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토큰증권이라 하고, 조사국은 금융규제를 받는 토큰을 증권토큰으로 칭함에 따라 국가 제도를 설명할 때 토큰증권과 증권토큰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함

---

10) HMRC, "CRYPTO10100 - Introduction to cryptoassets: what are cryptoasset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10100>, 검색일자: 2024. 8. 20.; Financial Conduct Authority, 2019, p. 9; BaFin, "Guidance Notice Second advisory letter on prospectus and authorisation requir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issuance of crypto tokens Ref.: WA 51-Wp 7100-2019/0011 and IF 1-AZB 1505-2019/0003," [https://www.bafin.de/SharedDocs/Downloads/EN/Merkblatt/WA/dl\\_wa\\_merkblatt\\_ICOs\\_en.html](https://www.bafin.de/SharedDocs/Downloads/EN/Merkblatt/WA/dl_wa_merkblatt_ICOs_en.html)

11) 이에 따라 암호자산의 범위에 증권 토큰을 포함하지 않고, 식별 가능한 발행자가 있는 경우 가치를 법정 통화 또는 상품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도 제외하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토큰도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ECB Crypto-Assets Task Force, 2019, p. 8)

12) Kate Goldman and Arnav Kumar, 2021, p. 8;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Re: File No. 87-25-20: Custody of Digital Asset Securities by Special Purpose Broker-Dealers (Release No. 34-90788)," <https://www.sec.gov/comments/s7-25-20/s72520-8634796-230930.pdf>, 검색일자 2024. 8. 20.;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Regulatory Notice 20-23 FINRA Encourages Firms to Notify FINRA if They Engage in Activities Related to Digital Assets," 2020, <https://www.finra.org/rules-guidance/notices/20-23>, 검색일자: 2024. 8. 2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igital Assets and SEC Regulation," Updated June 23, 2021, <https://sgp.fas.org/crs/misc/R46208.pdf>, 검색일자: 2024. 8. 20.

- (암호자산 유형) 암호자산은 일반적으로 통화/결제/교환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금융/투자 토큰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지만<sup>13)</sup> 규제 측면에서 최근 국제 합의나 국가적 접근 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본 보고서 본문은 변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함
  - 암호자산은 결제성, 기능성, 투자성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 통화/결제 토큰은 주로 교환 수단, 가치 저장 및 계산 단위로 사용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대표적이며 리브라(Libra)와 같은 스테이블코인도 포함함
    - 유틸리티 토큰은 네트워크 내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공하는 토큰으로 블록체인 기반 생태계의 기능적 사용을 가능하게 함
    - 증권/금융/투자 토큰은 기초자산에 연계되고 자산의 전체 가치에 대한 부분적 소유권을 표시하는데, 미래 수익에 대한 권리를 제공함
  - 증권/금융/투자 토큰이 자본시장법률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암호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자본시장법률에 따라 규제함
  
- (토큰화, tokenization) 블록체인 또는 DLT를 이용한 자산 토큰화는 투자 및 자금 조달이나 유동성의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본 보고서는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이용하여 관련 내용을 소개함
  - DLT로 알려진 데이터베이스 기술 인프라에서의 자산 토큰화는 일반적으로 분산 원장에 전통적 자산을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임<sup>14)</sup>
  - 자산 토큰화(asset tokenization)는 토큰화 증권과 네이티브 토큰(또는 증권토큰)으로 구분하는데 두 유형의 증권을 DLT 기반 증권(DLT-based Securities)이라고도 함<sup>15)</sup>
    - 토큰화 증권(Tokenized Securities)은 분산원장 외부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기초자산(증권, 부동산, 동산)의 소유권을 반영한 디지털 트윈(또는 미러) 토큰을

13) Dirk A. Zetsche et al., 2021, p. 206; Blandin et al., 2019, p. 38; 강동익·홍성희·박수진, 2022, pp. 11~12

14) 분산원장에 기존 실물자산을 디지털로 표현하는 과정 또는 금융상품, 담보 또는 실물자산 바스켓 등의 전통적 자산을 분산원장에 표현한 것임(OECD, 2020, p. 11); GFMA, 2023, p. 15

15) OECD, 2020, p. 24; GMFA, 2023, pp. 42~43

통해 분산원장으로 전환한 증권임

- 네이티브 토큰(native token)은 분산원장 외부에 실물 자산의 존재 없이 기본적으로 분산원장상에서만 발행 및 보관하는 증권임<sup>16)</sup>

- 이 둘의 차이를 분산원장 인프라 운영의 잠재적 실패에 대해 증권 소유자가 갖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로 보는 의견도 존재함<sup>17)</sup>

□ 본 보고서는 제I장 서론과 제V장 결론을 포함하여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함

- 제II장은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제도 및 과세제도를 정리하고, 토큰증권 사례를 살펴봄
- 제III장은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형성하는 EU 법률을 개관하고, 회원국별 규제 및 과세제도 그리고 프랑스, 독일의 암호자산 관련 규제 및 과세제도를 설명함<sup>18)</sup>
- 제IV장은 우리나라와 조사국의 제도를 바탕으로 국제비교를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

16) 블록체인에 직접 구현하고 분산원장에서만 사용 및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비트코인(Bitcoin)이나 ICO를 통해 발행한 코인 등 가상자산은 네이티브 토큰의 다른 한 예시라고 할 수 있음(OECD, 2020, p. 12)

17) OECD, 2020, p. 12

18) 미국, 일본, 영국에 대한 가상자산 세제 역시 우리나라 제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겠지만 강동익·홍성희·박수진(2022)의 보고서에서 상세히 다루므로 본 보고서는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설명함

## II.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규제 및 과세제도

### 1. 규제제도

-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하고 이원적으로 규제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음<sup>19)</sup>
- 2023년 2월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누어 이원적으로 규율할 것을 발표함<sup>20)</sup>
  - 비증권형 디지털자산의 대표 사례로 가상자산이 있고, 증권형 디지털자산의 대표적 사례로 토큰증권이 있음
  - 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은 2024년 현재까지 입법하지 않음

#### 가. 가상자산

- 우리나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sup>21)</sup> 권고사항에 따라 2020년 3월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을 제정하고 2021년 3

---

19) 대한민국정부, 2022, p. 70

20) 금융위원회, 2023a.

21)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의 국제기관에 해당하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효과적으로 대처 차원에서 FATF의 권고사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규범에 해당함(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https://www.kofiu.go.kr/kor/policy/iois02.do>, 검색일자: 2024. 8. 23.)

월 25일부터 시행함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규제를 적용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함
  -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이행을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실명확인 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원화 입출금을 하는 경우에 한함) 등을 갖추어야 함<sup>22)</sup>
  
- 2022년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디지털 자산을 이원적으로 규제하고 규제 인프라를 2단계로 나누어 구축할 예정임을 밝힘<sup>23)</sup>
  - 1단계는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내용을 입법하고, 2단계는 가상자산을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입법할 예정임
  - 입법 초기에는 유럽연합(EU)의 MiCA와 같이 가상자산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의 구축을 염두에 두었으나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함에 따라 1단계를 먼저 착수함<sup>24)</sup>
    - MiCA의 입법이 지연됨과 동시에 루나 사태와 같이 국내 시장에서 불공정거래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해외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됨
  
- 1단계 법안으로 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함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와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예치금 보호, 보험가입 등의 여러 방안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등이 주요 내용임

---

22) 금융위원회, 2021.

23) 이정수, 2023, pp. 94-95

24) 이정수, 2023, pp. 94-95

-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규율체계를 다루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예정임<sup>25)</sup>
  -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포함할 주요 내용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 가상자산 평가업·자문업·공시업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시세 및 공시 관련 통합시스템 구축,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율 등이 있음<sup>26)</sup>
  
- (가상자산의 정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로 정의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sup>27)</sup>
  -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sup>28)</sup>

25) 이정수, 2023, pp. 94-95

26)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포함되는 내용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제시되었던 내용임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2조 제1항; 종래 「특금법」 제2조 제3호에 두었던 정의 규정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옮겨간 것임

2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아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 발행하는 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 특정 금융기관<sup>29)</sup>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네트워크(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발행·관리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취급하는 예금 및 그에 준하는 전자적 증표
-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며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함<sup>30)</sup>
-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것<sup>31)</sup>

## 나. 토큰증권

- 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관련 법률 개정안은 마련하였지만 현재까지 입법된 바는 없음
- 금융위원회는 2022년 4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도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sup>32)</sup>과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각종 방안을 발표함

29) 특정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을 의미함(「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각목)

30)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2조에 따르면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를 말함

31) 2024년 9월 현재 고시한 바 없음

32) 금융위원회, 2022a, pp. 8~10

-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위해 기존 분산원장의 기록내용을 공부로 인정하고, 발행인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토큰증권의 유통을 위한 장외, 장내거래소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지만 현재까지 입법된 바 없음<sup>33)</sup>
-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과 관련하여 실물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로서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함<sup>34)</sup>
-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로 실물 거래<sup>35)</sup>에 해당하지 않고

33) 금융위원회, 2023a, pp. 8~10

34) 금융위원회, 2022d, pp. 1~4. 금융위원회는 2022년과 2023년 조각투자상품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증권 판단에 대한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음(금융위원회, 2022d, pp. 1~2; 금융위원회, 2023a, pp. 1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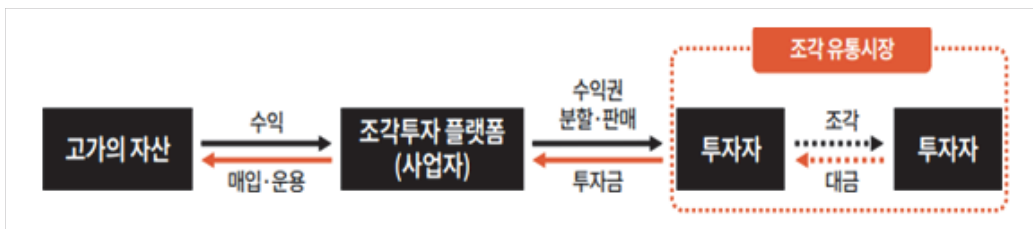
-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는 (i)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및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예: 지분증권) (ii)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경우(예: 채무증권) (iii) 신탁의 수익권을 갖게 되는 경우(예: 수익증권) (iv)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사전에 정해진 방식대로 달라지는 회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예: 파생결합증권) (v)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취득할 권리가 부여된 경우(vi) 예탁된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가지는 경우(예: 증권예탁증권) (vii) 발행인이 투자자의 금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그 결과로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특히 투자자 모집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발행인의 노력 경험과 능력 등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제시된 경우(예: 투자계약증권) (viii)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이 형식적으로는 투자자 활동의 대가 형태를 가지더라도, 해당 대가의 주된 원천이 발행인이 투자자의 금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한 결과로 발생한 수익이고 해당 대가가 투자자 활동보다는 사업 성과와 비례적인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투자자 모집 시 사업 성과에 따른 수익분배 성격이 적극적으로 제시된 경우(예: 투자계약증권) 등을 예시로 제시함
-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로는 (i)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가 가진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ii) 디지털자산에 표시된 권리가 없거나, 사업 수익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가 없는 경우 (iii) 현재 또는 미래의 재화 서비스의 소비 이용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사용되는 경우 (iv) 지급결계 또는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 (v) 투자자가 사업의 관리 운영에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이 없는 경우 (vi) 투자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 금전 등만을 지급받는 경우 (vii) 실물자산에 대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로서 공유목적물의 가격가치 상승을 위한 발행인의 역할 기여 및 이익귀속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35) 실물 자산 등의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투자자는 소유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 성패에 무관하게 재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

조각투자상품이 증권성을 가지는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함

- 조각투자 사업은 일반적으로 자산소유권자, 조각투자 사업자(플랫폼), 투자자의 3개 참가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수익증권 발행 조각투자자와 투자계약증권 발행 조각투자자로 나뉨<sup>36)</sup>([그림 II-1] 참조)
  - 수익증권 발행 조각투자자는 거래 구조에 신탁을 추가하고, 투자계약증권 발행 조각투자자는 조각투자 사업자(플랫폼)가 실물 자산을 직접 매입 및 위탁매매함
- 조각투자상품이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투자자가 얻게 되는 수입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i) 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려운 경우 (ii)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iii) 투자자 모집 시 사업자의 노력·능력을 통해 사업과 연계된 조각투자상품의 가격 상승이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경우 등임<sup>37)</sup>
- 조각투자상품의 증권성을 충족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면서 소유권 등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sup>38)</sup>

[그림 II-1] 조각투자 사업의 일반적 거래구조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2024, p. 8

우(예를 들자면 아파트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투자·보유하면서 그 월세와 매각차익을 나누어 갖는 경우 등) 일반적 상거래에 해당하여 관련 사법(민법, 상법 등)을 적용함(금융위원회, 2022d, pp. 2~3)

36) 삼일PwC경영연구원, 2024, p. 8

37) 금융위원회, 2023a, pp. 17~18

38) 금융위원회, 2022d, p. 4

### 1) 「자본시장법」상 증권

-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됨<sup>39)</sup>
  -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임<sup>40)</sup>
  
- 증권의 유형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의 6가지로 구분하되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에 대한 수익권이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은 별도로 집합투자증권으로 규정함<sup>41)</sup>
  - 채무증권(예: 채권), 지분증권(예: 주식 등), 수익증권(예: 펀드), 파생결합증권(예: ELS, ETN), 증권예탁증권(예: DR)은 정형화된 증권으로 적용례가 보편적으로 형성됨
  - 투자계약증권은 다른 5가지 증권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용하는 자본시장법의 포괄주의규제 원칙에 기반한 개념으로서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의하며<sup>42)</sup> (i) 공동사업의 형태 (ii) 금전 등을 투자 (iii) 주로 타인이 사업을 수행 (iv)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v) 이익 획득 목적 등 주요 요건이 있음<sup>43)</sup>

39)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 금융위원회, 2022d, 별첨 pp. 1~3. 5 투자자가 원본을 초과한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임

40)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41) 금융위원회, 2022d, 별첨 pp. 1~3

42)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 금융위원회는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성 판단에 앞서 집합투자업 등 여타 금융업 해당 여부 및 자본시장법 외 여타 법률상 허용 여부도 구체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별도로 검토·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임<sup>44)</sup>
-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증권성)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과 형식, 특정 기술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함<sup>45)</sup>

##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토큰증권

-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분산원장 기술(DLT)을 활용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규정함<sup>46)</sup>
-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증권을 기존의 실물증권이나 전자증권 외에 토큰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임(그림 II-2) 참조
  - 기존의 증권을 실물증권 또는 전자증권으로 발행하는 경우 중앙집중식 계좌부에 기재하나 토큰증권으로 발행 시 분산원장에 기재함
- 현재 토큰증권을 미러링 방식으로 사용하므로, 그 토큰 자체가 제삼자에 대해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sup>47)</sup>

43)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은 미국의 하위(howey) 기준을 차용함(금융위원회, 2023a, p.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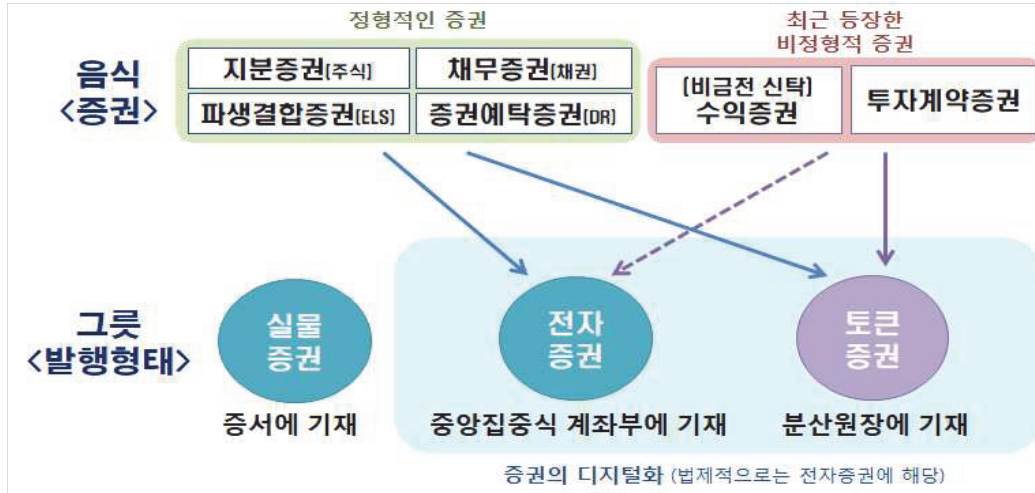
44) 금융위원회, 2022d, 별첨 p. 2

45) 증권인지 여부는 명시적 계약약관백서의 내용 외에도 묵시적 계약, 스마트계약에 구현된 계약의 체결 및 집행, 수익배분 내용, 투자를 받기 위해 제시한 광고·권유의 내용, 여타 약정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며,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함(금융위원회, 2022d, p. 4)

46) 금융위원회, 2023a, p. 2

47) 조웅규·최영노·남궁주현, 2021, pp. 171~178

[그림 II-2] 토큰증권의 개념



자료: 금융위원회,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2023a, p. 3

-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을 받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두 가지 형태의 토큰 증권에 한정하여 정비방향을 제시함<sup>48)</sup>
  - 해당 증권의 특성상 현행 법체계 내에서 발행·유통이 어려운 경우로서 증권 발행·유통을 통한 사업의 혁신성 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한시적인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sup>49)</sup>
  - 「자본시장법」상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은 발행 또는 유통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함
    - 「자본시장법」은 금전신탁을 통한 수익증권의 발행만 허용하므로 부동산, 미술품 등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은 불가능하고<sup>50)</sup>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 제출 시 발행은 가능하나 유통을 위한 법적

48) 금융위원회, 2023a, p. 2

49) 금융위원회, 2023a, pp. 20~21

50) 「자본시장법」 제110조

근거가 없음<sup>51)</sup>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을 통해 현행 「자본시장법」상 규정은 적용 배제하는 특례가 적용되어 각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함<sup>52)</sup>

□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발행 및 유통되는 토큰증권의 분산원장 거래기록은 전자등록계좌부<sup>53)</sup>에 전송하여 등록하는 방식(이하 “미러링”)을 통해 권리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음([그림 II-3] 참조)

- 토큰 증권에 대해 현행 「전자증권법」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규제특례가 불가능하여 토큰과 1:1로 매칭되는 전자증권을 발행하는 등 기존 전자증권화가 필요함<sup>54)</sup>
- 「전자증권법」의 개정을 통해 향후 분산원장에 기록된 거래기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면 향후 미러링 절차 없이 전자등록계좌부와 분산원장의 거래기록 모두 동일하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sup>55)</sup>

51)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 제2편 제5장(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특례), 제3편 제1장(증권신고서 관련 규정), 제178, 179조의 부정거래행위 규정이 적용될 때만 증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은 제3편 제1장의 증권신고서 규정이 적용되어 증권의 발행은 가능하나 유통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없어 유통은 불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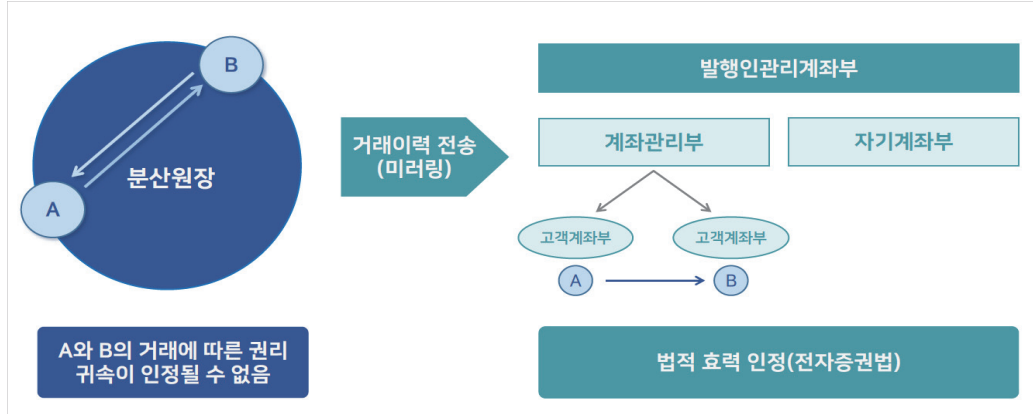
52)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https://sandbox.fintech.or.kr/overview/about\\_system.do?lang=ko](https://sandbox.fintech.or.kr/overview/about_system.do?lang=ko), 검색일자: 2024. 8. 12.

5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자등록계좌부로서 제2조에서는 주식 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로 정의하고 있음

5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주식’은 전자등록이 가능하나 투자계약증권은 동법의 주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55) 윤창현 의원은 2023년 7월 28일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분산원장기록을 법률적 장부로 인정하는 안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현재는 폐기된 상태임

[그림 II-3]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하에서 토큰증권의 발행 방법



자료: 한서희, 「신종증권 및 토큰증권 관련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법무법인 바른, 2024.(내부자료)

- 2023년 12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을 위한 거래소 개설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어 향후 토큰증권 거래를 위한 거래소가 개설될 예정임<sup>56)</sup>
  -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내에 신종증권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만을 위한 거래소를 신설하는 것임
  - 분산원장기술의 적용은 허용하지 않고, 기존의 전자증권 형태로 거래소에 상장해야함
  
- 2024년 현재까지 법 개정안은 입법된 바는 없으나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서비스 테스트 후 토큰증권의 규제완화를 위한 법제화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7월 28일 토큰증권 발행 시 분산원장 허용 및 발행자 계좌관리기관 도입, 투자한도 제한, 장외거래를 통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도록 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됨<sup>57)</sup>

56) 금융위원회, 2023b, pp. 4~5

57) 의안번호 2353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3. 7. 28.; 의안번호 2353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3. 7. 28.

○ 2023년 11월 29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됨<sup>58)</sup>

〈표 II-1〉 토큰증권 규제 현황 및 개정방향<sup>1)</sup>

구분		현행	개정방향
발행	토큰증권 발행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은 가능하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불가능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허용 <sup>2)</sup> (자본시장법 개정)
	분산원장 등록 허용	유가증권 점유 또는 전자증권 계좌부에 기재하는 방식	전자증권법을 개정하여 분산원장에 기록내용도 법률적 장부로 인정 (전자증권법 개정)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도입	증권사 등 기존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토큰증권 발행 가능	토큰증권 발행인이 토큰의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 <sup>3)</sup> (자본시장법 개정)
유통	토큰증권 유통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유통 불가능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유통 허용(자본시장법 개정)
	장외거래중개 인가 신설	다자간 상대매매 금지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 중개 인가단위를 신설하여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업무를 허용함
	장내거래 신설	토큰증권 유통을 위한 시장 부재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을 거래하는 한국거래소 내 디지털증권 시장 개설

주: 1) 표에서 기술한 내용 외에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정방향에는 토큰증권을 공모로 간주하고, 소액공모 상향 및 전문투자자인 경우 사모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2) 김희곤 의원 대표 발의안으로 현재는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이며,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 외에 다른 개정방향은 금융위원회와 윤창현 의원 발의안에서 모두 제안하고 있는 내용임  
 3)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자기자본 요건, 전산설비 및 물적설비 요건, 대주주의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요건 등을 만족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기존처럼 증권사를 통해 토큰증권의 발행이 가능함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a, p. 11 참고하여 저자 수정

58) 의안번호 212564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등 10인), 2023. 11. 29.

## 2. 토큰증권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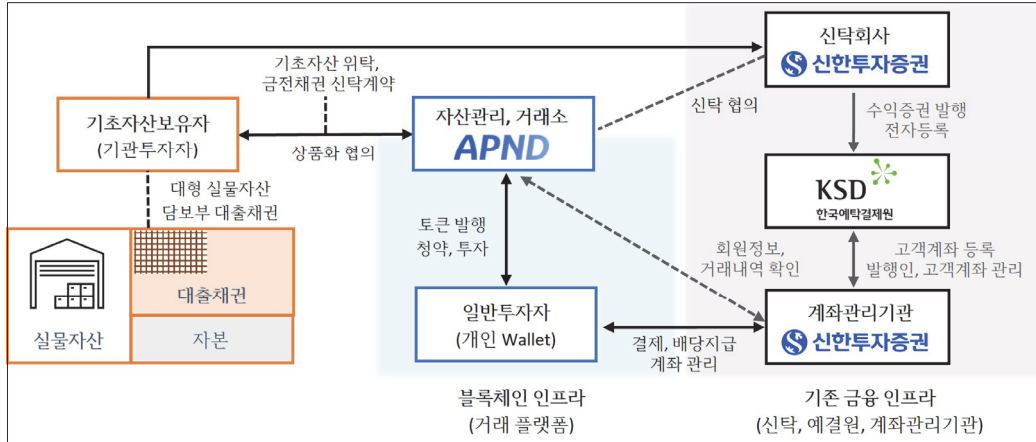
- 본 장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채권, 부동산의 조각투자가 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된 사례와 한우 및 미술품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된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함
- 조각투자상품이 증권성을 갖춘 경우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으므로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일부 조각투자 사례도 포함함

### 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 1) 채권

- 에이판다파트너스의 부동산 담보대출채권 신탁수익증권을 토큰형태로 발행하는 서비스가 2022년 12월 21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음
  - 부동산은 국내 대형 상업용 부동산(상가, 오피스, 호텔, 물류센터 등) 및 사회간접자본, 에너지시설, 교통시설 등을 대상으로 함
- 부동산 담보부 대출채권의 관리신탁 계약을 하고 발행한 수익증권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 분류되며, 주요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음([그림 II-4] 참조)
  - 조각투자 사업자(에이판다파트너스):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선별하여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기초자산을 결정하며, 기초자산 보유자와 금전채권 신탁계약을 체결함
  - 신탁회사(신한투자증권): 에이판다파트너스와 대출채권 관리처분 및 수익증권 발행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발행한 수익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함
  - 에이판다파트너스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 수익증권을 조각한 토큰증권을 투자자에게 발행하고, 투자자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수익증권에 투자함

[그림 II-4] 에이판다파트너스의 부동산담보 대출채권의 토큰증권 발행 사례



자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규제 샌드박스-지정사례,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 2022. 12. 21. <https://sandbox.fintech.or.kr/business/enterprise.do?lang=ko&id=290>, 검색일자: 2024. 8. 6.

- 에이판다파트너스의 부동산담보 대출채권의 토큰증권 발행은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면제함(〈표 II-2〉 참조)
  - 채권을 신탁하고 발행한 수익증권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거래시장 개설, 수익증권의 공모 주선 및 매출중개를 허용하고, 증권신고서의 제출·비치 의무를 면제함<sup>59)</sup>

〈표 II-2〉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의 특례내용

특례 규정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공모 주선, 매출중개를 허용
「자본시장법」 제110조 제1항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허용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자본시장법」 제123조 제1항	투자설명서의 제출·비치 의무 면제
「자본시장법」 제129조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인터넷 공시 의무 면제
「자본시장법」 제373조	거래시장 개설을 허용함

자료: 금융위원회, 2022c, p. 2

59) 금융위원회, 2022c, p. 2

## 2) 부동산

- 중소형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카사코리아, 루센트블록, 펀드블록글로벌의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음<sup>60)</sup>
  
- 부동산 소유자(위탁자)와 부동산 신탁회사 간 관리처분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증권은 조각투자 사업자(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등)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공모를 통해 투자자에게 매매함
  - 신탁회사는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계약에 따라 「전자증권법」에 따라 수익증권(부동산 토큰증권)을 발행함
  - 조각투자 사업자와 투자자 간 토큰 매매계약 체결 후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대금 지급 및 토큰증권을 이전함
  - 분산원장에 기록되는 토큰증권 거래기록은 거래 플랫폼과 연동된 계좌관리기관의 계좌부에 등재되는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함
  -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는 토큰증권을 매매하고, 부동산 임대수익과 처분 시 발생하는 매각차익을 지분율에 따라 배당받음
  
- 부동산 수익증권 발행 조각투자는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면제함(〈표 II-3〉 참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허용,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수익증권 발행 및 유통을 위한 거래소 허가, 투자중개업 인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

---

60)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502호, 제2021-117호, 제2021-183호

〈표 II-3〉 부동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특례내용

특례 규정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공모 주선, 매출증개를 허용
「자본시장법」 제110조 제1항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허용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자본시장법」 제373조	거래시장 개설을 허용함
「자본시장법」 제21조	블록체인 상 개인정보는 참조값의 형태로 저장

자료: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502호, 제2021-117호, 제2021-183호

## 나. 투자계약증권<sup>61)</sup>

□ 투자계약증권으로 보는 미술품 조각투자상품과 한우 조각투자상품의 사업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봄

○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은 미술품의 공유지분과 함께 미술품을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투자자에게 제공함<sup>62)</sup>

- 조각투자 사업자가 미술품을 선정하여 선매입하거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미술품을 조각으로 나누어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판매함
- 투자자는 미술품 공유지분을 표상하는 청구권(조각)을 동일 사업자가 개설한 유통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미술품 보관, 관리, 처분에 대한 위탁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하고 향후 미술품의 매각에 따른 수익배분의무도 부담함

○ 한우 조각투자 사업은 사업자가 일반 구매회원과 농가회원을 모집한 후 이 둘 간의 거래를 위탁 및 중개함<sup>63)</sup>

- 투자자는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특정 송아지를 선택하고 투자금을 납입하여 송아지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고, 사업자는 해당 투자금으로 농가에서 송아지를

61) 금융위원회, 2022b.

62) 한서희, 2023, p. 84

63) 이영경, 2022, p. 42

매입하고 동시에 사육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함

- 농가는 약 2년간 소를 사육하여 경매에 매각하고, 해당 판매대금은 투자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자가 투자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함

□ 미술품 및 한우 조각투자 사업은 투자물에 대한 (공유)지분 취득을 통해 투자물의 가격변동이나 투자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누린다는 측면에서 투자 목적의 거래라는 공통점을 띄고 있음<sup>64)</sup>

- 투자자는 투자물의 교환가치 또는 지분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이나 배당 또는 분배수익을 취하고 직접 투자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않음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2년 11월 29일 미술품 및 한우 등 조각투자상품을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하고 증권의 모집 매출 시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과징금 내지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였으나,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조치를 보류함<sup>65)</sup>

-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미술품 및 한우 조각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함<sup>66)</sup>

- 투자자 간 미술품 및 한우 매각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투자자가 얻는 매각 수익과 사업자의 수수료가 연동되어 있어 공동사업 요건을 만족함
- 사업자가 매수 대상 자산 선정·매입·매도·보관·관리 업무 등을 전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주로 타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요건을 만족함
-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매각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 인정되어 “이익 획득목적”의 요건을 만족함

- 2023년 7월 12일과 12월 15일 사업개편 요건을 모두 이행한 것이 확인되어 미술품 및 한우 조각투자상품에 대한 제재면제 처분을 함<sup>67)</sup>

64) 이영경, 2022, p. 53

65) 증권선물위원회 보도자료, 2022. 11. 29.

66) 투자계약증권으로 판정받기 이전 증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매출함. 이에 금융선물위원회는 2022년 11월 29일 해당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지정하면서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모두 준수하도록 함

67) 증권선물위원회 보도자료, 2023. 7. 12.

- 현재 미술품 및 한우 등 조각투자 사업의 투자계약증권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지 않아 유통은 불가능함
  -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발행·유통의 겸영을 허용할 수 있지만 유통시장에서 조각가격 산정 시 정보비대칭성이 크고, 투자기간이 짧다는 점 등의 사유로 발행·유통의 겸영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함

### 3. 과세제도

#### 가. 가상자산

- 우리나라는 2020년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마련 하였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sup>68)</sup>
  - 당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의 구축 미비로 시행시기를 두 차례 연기함
  -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안을 담고 있음<sup>69)</sup>
-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정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가상자산의 정의를 차용함<sup>70)</sup>
  - 당초 「소득세법」은 특금법의 가상자산 정의를 차용하였으나 2023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제정으로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 정의를 차용하도록 개정함

68)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69) 기획재정부, 2024, p. 64

70)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대여·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함<sup>71)</sup>
  -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가상자산과 법정화폐의 교환거래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간의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함<sup>72)</sup>
  - 가상자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지 않음
  
- 한편 제21조 규정은 가상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명시적인 과세 규정을 두지 않음
  - 가상자산 취득 유형<sup>73)</sup> 중 채굴·스테이킹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하드포크·에어드롭의 경우 불분명함<sup>74)</sup>
  -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 구분이나 필요경비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하지 않음
    - 가상자산 채굴 및 스테이킹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이나 불분명함<sup>75)</sup>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가상자산이 대가성 없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sup>76)</sup>

---

7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72)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재화 및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가상자산을 법 규정상 처분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에 대한 기존 과세 실무 및 사법상 해석을 통해 처분으로 포섭될 것으로 보임

73) 가상자산 취득유형으로는 가상자산의 채굴,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롭, 랜딩을 통한 가상자산 취득이 있음. 단, 개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도록 맡기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받는 스테이킹의 경우 이를 가상자산의 취득으로 볼지 대여로 볼지 애매하다는 의견도 존재함

74) 강동익 외, 2023, pp. 44~47. 다만 최근 코인 발행업체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을 통해 2018~2021년 중 진행한 ‘가상자산 에어드롭’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에 대해 국세청이 에어드롭으로 수령한 가상자산을 경품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빗썸이 조세불복을 착수한 사례가 있어 과세 실수가 명확해 질 것으로 보임(법무법인(유한) 대륜, 「[칼럼] 빗썸의 에어드롭과 국세청의 날벼락, 에어드롭 코인에 세금 부과될까?」, <https://www.daeryunlaw.com/broadcast/3115>, 검색일자: 2024. 9. 19.)

75)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에서는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76)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이 무상으로 지급받는 가상자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대가성 여부, 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 등

- 가상자산 대여·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함<sup>77)</sup>
- 취득가액은 가상자산 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며, 가상자산 과세 시행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함<sup>78)</sup>
    -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sup>79)</sup>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인 경우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
  - 의제취득가액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적용하며,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함<sup>80)</sup>
    - 2024년 12월 31일 당시 시가는 다음과 같음
      - 시가고시 가상자산사업자<sup>81)</sup>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각 시가고시 가상자산사업자가 2025년 1월 1일 0시 기준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 그 외의 가상자산: 시가고시 가상자산사업자 외 가상자산사업자가 2025년 1월 1일 0시 기준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 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함<sup>82)</sup>
- 가상자산 간 교환의 예로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가 있음<sup>83)</sup>

거래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814, 2022. 7. 25.)

77)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78)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5호

7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함

80)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81)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로 2021년 2월 17일 고시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이 해당됨. 이 고시는 2024년 12월 27일까지 적용됨(자료: 국세청 고시 제 2021-58호)

82)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83)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검색일자: 2024. 8. 9.

- 기축가상자산 가액은 시가고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자산인 경우: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임
  -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임
- 가상자산 대여·양도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소득 내에서만 통산이 가능하며, 이월 공제는 허용하지 않음
-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차감한 기타소득 과세표준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함<sup>84)</sup>
- 과세연도 중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 납세자는 다음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연도별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순소득금액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비과세함<sup>85)</sup>
- 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은 원천징수의 적용을 배제하고,<sup>86)</sup>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은 소득세 원천징수함<sup>87)</sup>

---

84) 「소득세법」 제64조의 3,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85)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86)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87)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제8호 나목, 제16호

〈표 II-4〉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

구분	내용	근거 법령
가상자산 정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가상자산 정의 규정을 차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로 규정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과세대상 소득 <sup>1)</sup>	가상자산의 대여·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상자산 간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소득분류	기타소득	
과세표준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 기본공제금액 ·취득가액: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의제취득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및 제2항 「소득세법」 제64의3조
세율	20%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과세방법	분리과세(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하며,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함)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제8호 및 제16호
시행시기	2025년 1월 1일 <sup>2)</sup>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주: 1) 현행 세법에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취득 및 보유단계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채굴 및 스테이킹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2024년 세법개정안 통과 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자료: 본문의 내용을 저자 요약함

## 나. 토큰증권

- 현행 「소득세법」은 토큰증권의 과세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세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함
- 토큰증권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비금융자산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의 형태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관련 과세제도를 기술함

- 토큰증권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인 조각투자상품을 표상하는데 본문은 간접투자<sup>88)</sup>와 관련한 과세 규정을 다룸

### 1)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 가) 신탁 과세 개요

- (일반신탁) 「소득세법」은 신탁으로부터의 이익과 관련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수익자과세)<sup>89)</sup>
  - 한편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에 대해 지배권과 통제권을 보유하여 신탁을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 그 신탁의 위탁자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과함(위탁자과세)<sup>90)</sup>
  - 수익자과세나 위탁자과세는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 또는 수탁자는 소득을 수익자 또는 위탁자에게 통과시키는 도관으로 본다는 신탁도관이론을 토대로 함<sup>91)</sup>
    - 신탁재산 자체를 실체가 있다고 보고 세법상 법인격을 부여하여 처리하는 신탁 실체이론이 있는데 후술하는 법인과세신탁이 그러함

- (법인과세신탁) 2020년 세법 개정<sup>92)</sup>을 통해 일부 신탁은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88)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간접투자(구 간접 투자자산운용법 제2조 제1호)는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2인 이상에 대한 투자 권유, 투자자의 일 상적인 운용지시 배제, 투자대상자산과 운용방법의 포괄화 등의 집합투자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 (문성훈, 2009, p. 267)

89) 「소득세법」 제2조의3 제1항; 「법인세법」 제5조 제1항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소득세법」과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음

90) 「법인세법」 제5조 제3항, 「소득세법」 제2조의3 제2항

91) 백제흠, 2020, pp. 106~107

92) [법률 제17652호, 2020. 12. 22, 일부개정(시행 2021. 1. 1.)]

보고, 수탁자에게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과함(법인과세신탁)<sup>93)</sup>

- (i) 수익자가 불특정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법인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신탁 (ii)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장기간 신탁소득을 신탁에 유보할 가능성이 높고 수익증권이 유통된다는 점에서 신탁이 단순히 도관의 역할만 수행한다고 볼 수 없는 수익증권발행신탁 (iii) 신탁재산에 1차적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효율적인 신탁에 대해 신탁재산을 별도의 내국법인으로 보고 수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함<sup>94)</sup>
    - 적용대상에는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이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함
  - 법인과세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sup>95)</sup> 신탁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배당으로 봄<sup>96)</sup>
  - 법인과세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배당비율과 관계없이 허용함<sup>97)</sup>
- 2020년 세법 개정<sup>98)</sup>으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함<sup>99)</sup>
- 다음에 해당하는 수익권 등의 양도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않음<sup>100)</sup>

93)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2020년 세법 개정에는 법인과세신탁 규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021년 1월 1일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였으나 2023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법인과세 신탁 규정의 선택적 적용 규정을 삭제하고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전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부칙 <제19930호, 2023. 12. 31.> 제1조, 제9조)

94) 이종교, 2020, p. 123;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 2021, p. 649; 조경준, 2024, p. 53

95) 「법인세법」 제75조의11 제1항

96) 「법인세법」 제75조의11 제3항;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의 2호

97) 「법인세법」 제75조의14

98)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일부개정(시행 2021. 1. 1.)]

99)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6호. 2021년 1월 1일 이후 신탁 수익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100)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3. 기존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에

-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금전신탁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 「자본시장법」 제189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및 수익증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 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수익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익권

□ (적격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시장간접금융을 위한 투자기구로 이용하는 투자신탁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격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 투자신탁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 신탁재산에 귀속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sup>101)</sup>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시점에 투자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함<sup>102)</sup>
  - 투자신탁의 결산일에 잔여이익을 분배하거나, 그 이익을 재투자하거나, 투자자가 보유 중인 수익증권을 환매 또는 매도하여 그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 모두를 분배받은 것으로 보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함<sup>103)</sup>
- 세법상 요건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하고,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함)하는 신탁을 말함<sup>104)</sup>
- 2021년 세법 개정<sup>105)</sup>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적격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

---

따라 이미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101) 「소득세법」 제2조의3 제1항;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10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10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손영철, 2012, p. 108

104)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자본시장법」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적격투자신탁은 금전신탁을 의미함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  
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함)와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  
자기구'로 규정함

- (비적격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적격투자신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투자신탁  
에서 발생하는 신탁의 이익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과  
세함<sup>106)</sup>
  - 여기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거나, 금전신탁이 아니거나, 매년 1회 결산·분배를 하지 않는 등의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
    - 다만 법인과세신탁은 비적격투자신탁의 범주에서 제외함<sup>107)</sup>
  - 그러나 2020년 세법 개정<sup>108)</sup>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  
자신탁·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이 적격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과  
세신탁의 규정을 적용함<sup>109)</sup>
    -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하나의 내국법인으  
로 보아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해당 투자합자조  
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법」 제75조의14를 준용하여 수익자에  
게 배당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배당비율과 관계없이 허용함<sup>110)</sup>

105) [대통령령 제31442호, 2021. 2. 17, 일부개정]

106)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제1호;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제2호 단서규정

107)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제1호

108)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109)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부칙 <제  
17759호, 2020. 12. 29.> 제16조, 2022. 12. 31. 개정)

110)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3항

〈표 II-5〉 신탁소득 과세제도

구분		신탁 단계 <sup>1)</sup>		투자자 단계		
		현행	2025년 이후	현행	2025년 이후	
신탁	일반신탁	도관과세	도관과세	수익자 과세	수익자 과세	
	법인과세 신탁 <sup>2)</sup>	소득 분배 환매, 양도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배당소득 양도소득 <sup>3)</sup>	배당소득 양도소득 <sup>3)</sup>
투자신탁	적격	소득 분배 환매, 양도	도관과세	도관과세	배당소득 배당소득 <sup>4)</sup>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 <sup>5)</sup>
	비적격	소득 분배 환매, 양도	도관과세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소득내용별 과세 배당소득 <sup>4)</sup>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 <sup>5)</sup>

- 주: 1) 도관과세는 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투자자(수익자)에게 과세함을 의미하며,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의 경우 이중과세 경감을 위해 배당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허용함  
 2) 「법인세법」 제5조 2항. 법인과세신탁에는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이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함  
 3)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6호.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전신탁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등은 제외함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5항. 집합투자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일부 비과세 항목과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증권 제외)  
 5) 2024년 세법개정안 통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됨

자료: 저자 본문을 요약, 정리함

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관련 과세 규정

- 현행 「소득세법」은 조각투자상품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과세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기존 유권해석과 일반 세법규정에 따라 과세 처리함
- 기획재정부는 2020년과 2023년에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 유권해석 대상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신종 금융

투자상품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매매가  
 가능함

- 2020년 유권해석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신탁수익권의 공유지분을 디  
 지털화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 DABS)의  
 매매차익 및 신탁 부동산 임대 및 처분으로 분배받은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봄<sup>111)</sup>  
 - 유권해석은 DABS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결합증권<sup>112)</sup>으로 보고, 해당  
 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의 2호에 따라 배당소득  
 으로 판단함
- 2023년 유권해석은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신탁  
 수익증권의 보유·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봄<sup>113)</sup>  
 - 유권해석은 해당 신탁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고 판단함
- 2024년 세법개정안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sup>114)</sup>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 범위는 대  
 통령령으로 위임할 예정임

## 2) 투자계약증권

### 가) 투자조합 과세 개요

□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최초 도입한 이후 사용하지 않다가 최근

111)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0667, 2020. 5. 27.;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342, 2020. 6. 18.

112)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  
 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  
 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함

113) 서면-2023-법규소득-2674, 2024. 1. 9.

114) 기획재정부, 2024, p. 31. 개정안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예정임

조각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인정된 증권의 유형으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지 않은 간접투자기구로 해석할 수 있음

- 제정 당시 투자계약증권의 도입 이유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전통적인 증권과 자산 운용법상 간접투자증권뿐만 아니라 현행 자산운용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비정형 간접투자의 지분까지 포괄’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음<sup>115)</sup>
  - 비정형 간접투자의 예시로 인터넷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네티즌 펀드(Netizen Fund)에 대한 지분, 상법상 익명조합이나 민법상 조합을 활용한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지분 등을 예로 제시함
- 투자계약증권과 집합투자증권과의 관계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투자계약증권이 적용되는 것은 주로 집합투자적 성격을 가진 계약 가운데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지 않는 투자구조’라고 2014년 3월 16일자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sup>116)</sup>

□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한 조각투자 사업구조는 「상법」상 익명조합이나 합자조합으로 볼 수 있음<sup>117)</sup>

- 조각투자 사업은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인이 투자물(기초자산)에 대해 투자자가 공유지분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사업 구조를 만들고, 공동사업을 통해 특정 투자물에 대한 지분권<sup>118)</sup>과 공동사업에 대한 수익배분청구권을 결합한 조각투자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조각투자 사업은 대체로 모든 투자자가 의사 결정 및 경영 참여가 보장되는 것과 같이 외형상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정보 비대칭성으로 투자자의 경영 참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으로 ‘주로 타인

115) 재정경제부, 2006, p. 11; 한서희, 2023, p. 86

116) 한서희, 2023, p. 88

117) 사업 구조의 법적 성격에 대해 정훈·김재경(2023, pp. 410~414), 한서희(2023), 이영경(2022, pp. 50~58)을 참조할 것

118) 한서희, 2023, p. 90. 한서희(2023, p. 90)과 정준섭(2023, p. 97)은 물권 법정주의를 토대로 일반 상품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거래한다는 조각투자 사업자의 설명에 대해 물권이나 준물권의 증권화 또는 채권화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함

이 수행한 공공사업의 결과'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조합으로 보기 어려움<sup>119)</sup>

- 사업자가 투자자에게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분배를 약속한다면 사업자-투자자의 내부관계는 공동사업관계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상법」상 익명조합 또는 합자조합을 상정할 수 있음<sup>120)</sup>
  - 시장간접금융을 위한 투자기구로 이용하는 조합형태의 집합투자기구는 투자합자조합과 투자익명조합이 있으며, 세법상 적격 요건<sup>121)</sup>을 충족한 법인격 없는 투자기구는 투자신탁과 동일하게 과세함<sup>122)</sup>
    - 투자기구 단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투자자가 소득을 분배받을 때 투자자 단계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 세법상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신탁과 동일하게 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함<sup>123)</sup>
    -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이 적
- 
- 119) 조각투자 사업을 「민법」상 조합의 설립을 통해 조합체가 투자물을 합유하고 투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의 출자지분으로 보는 견해에 대하여 이영경(2022, p. 56)은 「민법」상 출자지분이 추가지급의 무의 부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증권의 개념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지분증권의 범위에서 제외된 「민법」상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다시 투자계약증권으로 규율하는 것은 어렵고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120) 정훈·김재경, 2023, pp. 411~414; 정순섭, 2023, pp. 96~97. 합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계약 관계로 업무집행조합원은 무한책임을 지나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액 한도에서 유한 책임을 부담함(「상법」 제86조의2). 익명조합은 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1명 이상의 익명조합원이 출자하고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영업자는 무한책임을 지나 익명조합원은 출자액 한도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함(「상법」 제78조)
- 121) 세법상 적격 요건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하고,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함)하는 투자기구를 말하며(「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적격 요건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함)임
- 12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 1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제1호

격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신탁제도의 법인과세규정을 준용함<sup>124)</sup>

- 비적격 투자조합의 출자지분 양도로 인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나<sup>125)</sup>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임

□ 한우 및 미술품 등 조각투자 사업을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또는 익명조합 형태의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고, 이 경우 투자자는 수동적 동업자<sup>126)</sup>가 될 것으로 보임<sup>127)</sup>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은 조합단계에서는 법인세과세를 면제하고 투자자 단계에서 과세하는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sup>128)</sup>
  - 수동적 동업자가 분배받는 소득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봄<sup>129)</sup>
  - 동업자가 동업기업<sup>130)</sup>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함<sup>131)</sup>

124)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부칙 <제 17759호, 2020. 12. 29.> 제16조)

125) 정훈·권순오·이미현, 2022, p. 22.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함(「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 2 제5항)

126)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행한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이 없고, 법인세법상 임원이 아닌 자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동업기업의 유한책임사원을 수동적 동업자라고 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1항)

127) 「상법」상 합자조합 또는 익명조합이 개인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나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영업자인 법인과 투자자인 개인인 익명조합원으로 구성되어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12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 제2호

1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4항

130)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의미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4 제1호)

1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 제1항. 2025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세법」 제87조의2 제1호 또는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 또는 제11호 가목에 따른 자산,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나목 또는 제9호 가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함

- 다만 조각투자 사업의 투자자 모두 유한책임을 지고 자산운용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 투자자 간 인적결속을 예상하기 곤란하고 실제 사업이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경우 익명조합에 관련한 유권해석<sup>132)</sup>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1-6〉 투자조합 과세제도

구분			조합 단계 <sup>1)</sup>		투자자 단계	
			현행	2025년 이후	현행	2025년 이후
투자조합	적격	소득 분배	도관과세	도관과세	배당소득	배당소득
		환매, 양도			배당소득 <sup>2)</sup>	금융투자소득
	비적격	소득 분배	도관과세	법인세 과세	소득 내용별 과세	배당소득
		환매, 양도			배당소득 <sup>2)</sup>	금융투자소득
동업기업 과세		소득 분배	도관과세	도관과세	소득 내용별 과세/ 배당소득 <sup>3)</sup>	소득 내용별 과세/ 배당소득 <sup>3)</sup>
		양도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융 투자소득세

주: 1) 도관과세는 조합 단계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과세함을 의미하며, 법인세 과세의 경우 이중과세 경감을 위해 배당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허용함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집합투자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일부 비과세 항목과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증권 제외)  
 3) 수동적 동업자의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자료: 저자가 본문을 요약, 정리함

나) 투자계약증권 관련 과세규정

-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투자계약증권의 보유 및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명시적인 과세 규정은 없음

132) 유권해석(재소득 46073-173, 2002. 12. 13.)은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해당 펀드가 익명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처리함(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은 서면-2016-법인-2758, 2016. 6. 2.; 서면-2015-소득-0596, 2015. 5. 7.; 소득세과-1065, 2011. 12. 20. 등이 있음)

-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할 예정임<sup>133)</sup>
  -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담고 있어 세법개정안 통과 시 과세하지 않음
  
- 2024년 세법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모두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안을 담고 있어 세법개정안 통과 시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임<sup>134)</sup>
  - 환매, 매도 외에 해지, 해산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며, 구체적인 과세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임

## 다. 과세제도 요약

### 1) 가상자산 과세제도

- 가상자산의 대여·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하기 위해 2020년 「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해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현재까지 과세 유예함
  - 두 차례의 시행을 연기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이나 2024년 세법개정안 통과 시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임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대여·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함
  -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250만원의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적용함

133) 「소득세법」 제87조의6 제1항 제3호

134) 기획재정부, 2024, p. 31

## 2) 토큰증권 과세제도

- 최근 등장한 신종증권인 조각투자상품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증권에 해당하는데 주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 증권의 비정형화된 증권 유형을 띠
  - 현재 조각투자상품 관련 소득을 과세하기 위한 명시적인 「소득세법」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일반 세법의 해석이나 유권해석을 통해 과세 처리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분배 및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 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발행된 바 있으나<sup>135)</sup> 투자계약증권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않음
- 조각투자상품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세법의 해석을 통해 분배 및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과세 처리할 수 있다고 보임
  - 조각투자 사업에 끼워넣은 비금전신탁을 법인과세신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투자자가 수령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sup>136)</sup>
    - 법인과세신탁 규정의 시행 이전 체결한 비금전신탁계약은 신탁소득이 발생한 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고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할 때 수익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함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은 조각투자상품으로 처음 이용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는 소득세법 규정은 없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135)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0667, 2020. 5. 27.;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342, 2020. 6. 18.

136)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 발행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음

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임

- 만일 투자계약증권을 과세 목적상 익명조합 출자지분으로 간주한다면 분배와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기존 유권해석<sup>137)</sup>에 따라 익명조합원이 수령하는 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는 ‘주식 등’에 포섭되는 지분증권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을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sup>138)</sup>
-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세법에 명시하는 안을 담고 있어 해당 증권에 대한 과세 처리는 앞으로 명확해질 것임

〈표 II-7〉 우리나라의 토큰증권 과세제도

구분		현행	법령해석	2024년 세법개정안
소득 분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배당소득 <sup>1)</sup>	배당소득 <sup>2)</sup>	배당소득
	투자계약증권	- <sup>3)</sup>	-	배당소득
양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양도소득 <sup>4)</sup>	배당소득 <sup>2)</sup>	배당소득
	투자계약증권	- <sup>5)</sup>	-	배당소득

주: 1) 비금전신탁을 법인과세신탁으로 보는 경우 투자자가 수령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2건의 유권해석이 있는데, 2020년 유권해석은 파생결합증권(사채)으로부터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 과세하고 2023년 유권해석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 과세 처리함

3) 투자계약증권을 과세 목적상 익명조합 출자지분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5)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 예정임

자료: 「소득세법」 제87조의6, 제94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0667, 2020. 5. 27.;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342, 2020. 6. 18.; 기획재정부, 2024, p. 31

137) 재소득 46073-173, 2002. 12. 13.; 서면-2016-법인-2758, 2016. 6. 2.; 서면-2015-소득-0596, 2015. 5. 7.; 소득세과-1065, 2011. 12. 20. 등 다수

138) 정훈·권순오·이미현, 2022, p. 9

### Ⅲ.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 및 회원국별 현황

#### 1. EU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

- EU 규제 인프라는 금융상품의 범주에 속하는 토큰은 EU 금융시장 규제 체계를 따르고 그 외는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규칙(MiCAR)<sup>139)</sup>을 통해 규제하는 이분화된 접근방식을 취함<sup>140)</sup>
  - EU 자본시장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MiFID II<sup>141)</sup>와 DLT 파일럿 규칙(DLTR)<sup>142)</sup>으로 DLT 기반 증권(증권 토큰)의 발행 및 유통, 시장참여자를 규제함<sup>143)</sup>
  - 비증권 암호자산(결제/교환 토큰, 스테이블 토큰 등)에 대해 MiCAR를 적용함
  
- 주요 규제 인프라에 해당하는 MiCAR와 DLTR은 2020년 디지털 금융 패키지(Digital Finance Package)의 일환으로 마련하여 현재 일부 시행 중임

---

139) (EU) 2023/1114(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R)(<https://legalnodes.com/article/mica-regulation-explained>)

140) Maum and Kesper, 2023, p. 2

141) Directive 2014/6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May 2014 on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and amending Directive 2002/92/EC and Directive 2011/61/EU (recast) Text with EEA relevance

142) Regulation (EU) 2022/85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a pilot regime for market infrastructures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600/2014 and (EU) No 909/2014 and Directive 2014/65/EU, OJ L 151, 2. 6. 2022.

143)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rypto-asset service provider)가 증권 토큰의 발행 및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MiFID II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DLTR에 따라 특례 허가를 신청함

- 디지털 금융 패키지는 유럽 핀테크(Fintech)와 기술경쟁력 향상, 유럽 금융안정성 보장을 목표로 하여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9월 24일자로 공개함<sup>144)</sup>
  - 디지털 금융 패키지는 (i) EU 디지털 금융 전략 (ii)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규칙(MiCAR) (iii) 암호자산 사업자를 포함한 금융시장의 디지털 운영상 복원력 확보 요구 입법 제안(DORA)<sup>145)</sup> (iv) DLT 기반 시장 인프라에 대한 분산원장 기술의 시범 적용에 관한 입법 제안(proposed DLT pilot regime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으로 구성함
  - MiCAR, DORA, DLT 파일럿 규칙 모두 EU 법률 체계상 규칙(regulation)에 해당하며 EU 의회의 최종 채택 이후 회원국의 국내 입법 없이 시행(예정)함
    - DLTR는 2022년 5월 30일 제정되어 202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함
    - MiCAR는 2023년 5월 31일에 제정되어 2024년 6월 30일 일부 규칙을 시행하고 2024년 12월 30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임
    - DORA는 2022년 12월 14일에 제정되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임
- 본문에서는 EU의 이분화된 접근방식의 골계를 이루는 MiCAR, MiFID, DLTR의 내용을 살펴봄

### 가. MiCAR(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규칙(MiCAR)은 유럽의회와 이사회로부터 2023년 5월 31일자로 승인받고 6월 29일자로 발효함<sup>146)</sup>

144) EU, "Digital finance package," [https://finance.ec.europa.eu/publications/digital-finance-package\\_en](https://finance.ec.europa.eu/publications/digital-finance-package_en), 검색일자: 2024. 8. 9.

145) 금융시장의 디지털 운영상 복원력 확보 요구 입법 제안(proposal of regulation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financial sector)은 유럽의회에서 2022년 11월 10일 채택되고 디지털 운영 복원력에 관한 법률(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Act, DORA)로 제정되고, 2023년 1월 16일부터 발효함. EU 회원국은 2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임(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2024, p. 5)

146) EU 증권시장당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과 EU 은행당국(European Banking Authority)은 MiCA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기술 규제 표준, 구

- 기존 EU 법률의 규제 범주로 포섭하지 못하는 암호자산 관련 서비스 및 활동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MiCAR을 마련함
  - (i) EU 회원국의 개별 규정을 단일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로 대체하고 (ii)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토큰 발행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확립하고 (iii) 기존 금융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암호자산에 대한 규정의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함
- MiCAR은 2023년 5월 31일자로 제정되고 2024년에 전부 시행 예정임
  - 타이틀 제3장(Title III)의 자산준거토큰(ART) 및 타이틀 제4장(Title IV)의 전자화폐토큰(TMT) 규정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적용함
  - 타이틀 제2장(Title II)의 유틸리티 토큰과 기타 토큰 관련 규정, 타이틀 제5장(Title V)의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승인 및 감독에 대한 규정, 타이틀 제6장(Title VI)의 기타 규정은 2024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적용함
- MiCAR의 적용 대상 암호자산은 자산준거토큰(Asset-Referenced-Token, ART),<sup>147)</sup> 전자화폐토큰(Electronic Money Token, EMT), MiCAR의 규제 대상 예외 분류에 속하지 않는 암호자산임
  - 암호자산은 '분산원장기술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전송 및 저장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함<sup>148)</sup>
  - 규제 대상인 자산준거토큰(ART)과 전자화폐토큰(TMT)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자산준거토큰(ART)는 전자화폐토큰은 아니고 하나 이상의 법정 화폐를 포함하여 다른 자산이나 기타 권리 또는 이들의 조합에 연동하여 가치 안정성을 유지

현 표준 및 지침을 개발 중에 있음

- 147)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금지하면서 법정 화폐에 준거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NFT(대체불가능 토큰)은 MiCAR을 적용하는 자산 중 하나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경우에만 적용하고 대량으로 발행한 NFT의 경우 대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승인을 요함
- 148) MiCAR 제3조 제1항 제2호: [https://www.bafin.de/DE/Aufsicht/MiCAR/MiCAR\\_node.html?cms\\_gtp=19649886\\_list%253D2#ID\\_19649884](https://www.bafin.de/DE/Aufsicht/MiCAR/MiCAR_node.html?cms_gtp=19649886_list%253D2#ID_19649884), 검색일자: 2024. 7. 23. '분산원장기술' 또는 'DLT'는 분산원장의 운영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분산원장'은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일련의 DLT 네트워크 노드 간에 공유 및 동기화되는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정보 저장소를 말함

하도록 의도한 암호자산임(제3조 제1항 제6호)

- 전자화폐토큰(TMT)은 법정 통화의 가치를 기준으로 가치 안정성이 유지되는 암호자산임(제3조 제1항 제7호)

□ 금융시장 규제 체계의 적용을 받는 다음 암호자산은 MiCAR의 적용 대상에서 포함하지 않음<sup>149)</sup>

- EU 준칙 MiFID II 제4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금융상품
- EC 준칙 EMD II<sup>150)</sup>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화폐(전자화폐토큰은 제외함)
- EU 준칙 예금보증제도<sup>151)</sup>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예금
- EU 준칙 MiFID II 제4조 제1항 제43호에 따른 구조화 예금
- EU 준칙 증권화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증권화(Securisation)

□ MiCAR는 암호자산의 발행 시장(제1차 시장) 활동과 암호자산 서비스라고 불리는 제2차 시장 서비스를 구분하여 규제함

- 암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투명성 및 공개 의무,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rypto Asset Service Provider, CASP) 및 암호자산 발행자에 대한 승인 요건 및 감독, 암호자산 발행자와 암호자산의 사업 조직 규제, 암호자산의 발행, 유통, 보관에 대한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암호자산 유통 시장에서 시장 남용의 방지 등을 규제함

□ 암호자산 서비스의 제공은 유럽연합 내 본사를 두고 관할 감독기관으로부터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승인받은 경우에 한함<sup>152)</sup>

---

149) MiCAR 제2조 제4항 제a호

150) Directive 2009/11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September 2009 on the taking up, pursuit and prudential supervision of the business of electronic money institutions amending Directives 2005/60/EC and 2006/48/EC and repealing Directive 2000/46/EC

151) Directive 2014/49/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on deposit guarantee schemes

- 암호자산 서비스는 암호자산의 보관 및 관리,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 암호자산의 매입 및 교환, 암호자산 유통(주문실행, 배치, 주문수락 및 전송), 암호자산 어드바이스 및 포트폴리오 관리 등이 있음<sup>153)</sup>
- 승인 요건은 신용기관, 증권기관, 전자화폐 발행기관과 같은 특정 법인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고<sup>154)</sup> 신고 의무만 부여함<sup>155)</sup>

## 나. MiFID II

- MiFID II는 EU의 투자 서비스 및 금융 시장 활동을 규제하는 주요 인프라에 해당함
  - 본문은 MiFID II 상 토큰의 증권성 판단기준과 거래소 규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봄

### 1) 증권성<sup>156)</sup>

- 증권성 유무에 따라 토큰을 MiFID II/MiFIR에 따른 규제 대상인 금융상품 여부를 결정함
  - MiFID II 제4조 제1항 제15호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Annex I의 섹션 C에서 열거한 상품으로 규정하고, Annex I의 섹션 C는 양도성 증권을 비롯한 11개의 금융상품을 열거함<sup>157)</sup>

---

152) MiCAR 제59조, 제63조

153) MiCAR 제3조 제1항 제16호 a)~j), 제17호~제26호

154) MiCAR 제60조 제1항~제6항

155) MiCAR 제60조 제7항

156) 증권의 개념에는 MiFID II 외 투자설명서 규정(Prospectus Directive/Prospectus Regulation), 시장남용규정(the Market Abuse Regulation, MAR)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되는데 본문은 투자설명서 규정과 MiFID II를 중심으로 살펴봄

157) Annex I의 섹션 C에서 열거하는 금융상품은 1) 양도성 증권(Transferable securities) 2) 단기 금융상품(Money-market instruments) 3) 집합투자기구 단위(Units in collective investment undertakings) 4) 물리적 또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옵션, 선물, 스왑, 선도 금리 계약 및 증권, 통화, 금리 또는 수익률, 배출권 또는 기타 파생 상품, 금융 지수 또는 금융 수단과 관련된 기타 파생 계약 5)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거나 채무불이행이나 그 밖의 해지 사유가 아닌 당사자 일

- 최근 준칙 개정<sup>158)</sup>을 통해 금융상품의 범위에 분산원장기술 기반 상품 (instruments)을 명시적으로 포함
- 미국은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하위(Howey) 테스트를 통해 판정하지만, EU는 MiFID II에 따른 금융상품이라는 용어의 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에 따라 토큰의 증권성을 판단함
- EU 법률은 증권성을 양도 가능성(transferability), 자본시장에서의 거래를 보장하는 협상 가능성(negotiability)과 표준화(standardization)의 형식적인 기준을 토대로 판단함<sup>159)</sup>
  - 양도 가능성은 증권의 소유권을 승계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반면, 협상 가능성은 소유권 이전의 용이성과 관련이 있는 기준으로 사실상 유통 가능성을 의미함<sup>160)</sup>
  - 증권의 발행 단위(issued units)는 충분히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 EU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보지 않음
    - 발행 단위가 한 종류(class)로 간주될 수 있도록 여러 특성을 공유해야 하며, 발행자와 투자자 간 단위로 표시되는 청구권을 개별적으로 협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
  - MiFID II 제4조 제44항은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양도성 증권(transferable securities)'을 자본시장에서 협상 가능한(negotiable) 증권 종류로 정의하면서 세 가지 증권의 유형을 열거함

---

방의 선택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품과 관련된 옵션, 선물, 스왑, 선도이자율계약 및 기타 파생상품 계약 ... (중략) 등이 있음

158)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s 2006/43/EC, 2009/65/EC, 2009/138/EU, 2011/61/EU, EU/2013/36, 014/65/EU, (EU) 2015/2366 and EU/2016/2341, 제6조 제1항(<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0PC0596>, 검색일자: 2024. 8. 13.)

159) Hacker and Thomale, 2017, p. 19. 회원국은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기존 증권 투자자의 권리의 유사성 또는 비유사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회원국 대부분은 미국과 같이 '형식보다 실질(substance over form)'이라는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음(Sonija Safro, 2023, p. 28)

160) Hacker and Thomale, 2017, p. 21

- (i) 주식 및 이에 상응하는 발행 단위 (ii) 채권 및 기타 형태의 유동화된 부채 (iii) 양도성 증권을 취득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기타 증권 또는 양도성 증권, 통화 또는 기타 지표나 조치를 참조하여 결정된 현금 결제가 발생하는 기타 증권
  - 위 기준을 토대로 발행자에서 소유자에게 자본적 흐름(capital flow)을 부여하는 모든 토큰은 MiFID II의 의미 내에서 양도성 증권으로 간주하여<sup>161)</sup>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고 분석함<sup>162)</sup>
  - 증권성이 있는 토큰(증권 토큰)의 발행과 유통은 투자설명서 공개 규정과 시장납용규정(MAR)의 적용을 받음<sup>163)</sup>
- 증권성 판단의 세 가지 기준은 회원국별로 달리 해석하여 양도성 증권의 특성 및 유형에 대한 이해는 각기 다르다고 평가되었지만<sup>164)</sup> 개정 MiFID II와 DLTR의 시행으로 증권성 판단에 있어 회원국 간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 2019년 유럽증권시장감독국(ESMA)과 유럽 은행감독국(EBA)<sup>165)</sup>은 ICO/STO을 통해 발행한 특정 토큰이 '양도성 증권'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회원국 관할 당국의 책임이며 이로 인해 국가별로 EU 법률의 구현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sup>166)</sup>

---

161) Maume, 2020, p. 193

162) Maume, 2020, p. 191; Zetzsche et al., 2020, pp. 209~210

163) Maume and Kesper, 2023, p. 2

164) Clifford Chance, 2020, p. 10; Zetzsche et al., 2021, p. 218

165) 유럽증권시장감독국(ESMA)과 유럽 은행감독국(EBA)이 2019년 발표한 암호자산과 최초 코인 공개(ICO)에 대한 보고서는 일부 디지털자산을 MiFID II에 따른 양도성 증권이나 EMD II에 따른 전자 화폐(electronic money/e-money)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MiFID II에 따른 증권이나 금융상품으로 간주하거나 EMD II에 따른 전자화폐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166) ESMA. 2019, p. 5

## 2) 거래소(trading venue)

- MiFID II에 따른 다자간 거래시설(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MTF)은 투자회사나 시장 운영자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운영하는 다자간 시스템을 의미함<sup>167)</sup>
  - 전통적인 거래소는 금융 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ies)<sup>168)</sup>만 거래소 접근 권한을 부여함
  - 거래소의 증권 거래는 일반적으로 증권 거래(trading), 청산(clearing) 및 결제(settlement)로 이루어짐<sup>169)</sup>
    - 거래는 MiFID II가 규정하는 호가(offer)와 매수(demand)를 연결하는('매칭') 시장 절차이고 청산은 중개기관이 수행하는 절차로 포지션을 비교하고 상계하는 과정('네틱')이며, 결제는 중앙예탁기관과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거래 절차임
- 가상 거래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중개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 투자자의 직접 접근을 허용하지만 기존 MTF 규정은 본질적으로 DLT의 잠재적 이점을 무력화함<sup>170)</sup>
  - 그리고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시장남용규칙(MAR)은 MiFID II에 따른 거래 장소에만 적용함<sup>171)</sup>
  - 집합투자기구(UCITS)를 포함한 EU 규제 펀드는 규제 거래 장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함

---

167) MiFID II 제4조 제1항 제22호

168) MiFID II 제31조 제1항

169) Maume and Kesper, 2023, pp. 4~5

170) DLTR 문단 5; Maume and Kesper, 2023, pp. 4~5

171) MAR 제2조 제1항

## 다. DLT 파일럿 시장 인프라 규칙(DLTR)<sup>172)</sup>

- EU는 2023년 3월 23일부터 DLT 파일럿 규칙을 시행하여 MiFID II에서 다루지 못하는 DLT 기반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한 금융 시장 인프라를 제공함
  - DLTR은 (i) 금융상품으로 적절한 암호자산 및 DLT 시장 인프라의 개발 (ii) 투자자 보호, 시장 무결성, 금융 안정성 및 투명성 유지 (iii) 규제대상 차익거래 및 법률상 허점의 예방을 목표로 함<sup>173)</sup>
  - MiFID II 제4조 제1항 제44호에 따른 유동성 증권으로 DLT 기반으로 발행 및 유통하는 증권을 대상으로 함
  - DLTR은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분산원장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한 규제 샌드박스에 해당함<sup>174)</sup>
  - DLTR은 2023년 3월부터 최대 6년으로 적용하여 운영자에 대한 특정 허가는 ‘최대 6년’ 동안만 부여함<sup>175)</sup>
- DLT 파일럿 규칙은 특정 DLT 시장 인프라에게 MiFID II의 요건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허용함<sup>176)</sup>
  - DLT 시장 인프라는 DLT 시장 거래의 근본적인 행위자로 DLT 다자간 거래시설 (Multi Trading Facility, MTF), DLT 결제시스템(Settlement System, SS),

172) Regulation (EU) 2022/85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a pilot regime for market infrastructures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600/2014 and (EU) No 909/2014 and Directive 2014/65/EU, OJ L 151, 2. 6. 2022.

173) ESMA, “DLT Pilot Regime,” <https://www.esma.europa.eu/esmas-activities/digital-finance-and-innovation/dlt-pilot-regime>, 검색일자: 2024. 8. 10.

174) 전통적 금융시장에 적용하는 MFID II, 중앙예탁에 관한 준칙, 결제시스템의 결제 최종성 등의 적용을 면제하여 시장인프라 운영자와 신규 진입자가 DLT 기반 증권 관련 시장인프라를 운용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함(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2024, p. 2)

175) DLTR 문장 48. 유럽증권시장기관(ESMA)은 2026년 3월 24일(완전 시행 첫 날로부터 3년)까지 DLTR의 기능 및 효율성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고(DLTR 제14조 제1항) 이를 토대로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DLTR의 적용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함(DLTR 제14조 제(2)항).

176) DLTR 문장 6

- DLT 트레이딩 결제시스템(Trading and settlement System, TSS)을 포함함<sup>177)</sup>
- DLT MTF는 DLT 기반 금융상품만의 거래만 허용하는 특정 유형의 MTF임
    - MiFID II에 따라 투자회사로 승인받거나 규제시장의 운영을 승인받은 법인에 한해 DLTR 제8조 제(1)항에 따라 DLT MTF 적격 요건을 충족함<sup>178)</sup>
  - DLT SS는 DLT 금융상품의 거래를 지불 또는 인도에 따라 결제하는 결제 시스템으로, DLT 금융상품의 초기 기록을 허용하거나 관련 보관 서비스를 제공함<sup>179)</sup>
    - 중앙증권예탁기관으로 승인된 법인<sup>180)</sup>은 DLT SS 적격 요건을 갖춘<sup>181)</sup>
  - DLT TSS는 DLT MTF와 DLT SS의 기능을 통합한 형태로 거래, 청산, 결제로 이루어지는 증권 거래의 절차를 모두 운영하여 중개자의 개입을 배제함<sup>182)</sup>
    - DLT MTF와 DLT SS는 기존 금융 중개기관을 수정하여 도입한 반면, DLT TSS는 새로운 유형의 인프라에 해당함<sup>183)</sup>
- 현재 DLT 시장 인프라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그 유형과 한도에 있어서 제한이 있으며, DLT 시장 인프라 역시 다룰 수 있는 금융상품의 규모에 대해 제한이 있음
- 거래를 허용하는 금융상품은 (i) 발행인의 시가총액 또는 잠정적인 시가총액이 5억유로 미만인 주식 (ii) 발행 규모가 10억유로 미만인 채권 및 기타 형태의 담보부채, 예탁증서 및 단기금융시장펀드<sup>184)</sup> (iii) 운용자산(AUM)의 시장가치가 5억유로 미만인 인가받은 개방형 공모펀드(UCITS)의 단위 지분임<sup>185)</sup><sup>186)</sup>

---

177) DLTR 제2조 제5항

178) Maume and Kesper, 2023, pp. 6~7. MiFID II에 따른 투자회사는 DLT MTF의 운영 외에도 MiCAR의 적용을 받는 암호자산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음(MiCAR 제60조 제3항)

179) DLTR 제2조 제7항

180) Regulation (EU) No 909/2014 (the 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Regulation, CSDR)에 따라 따라 중앙증권예탁기관(central securities depository)으로 승인받은 법인을 의미함

181) DLTR 제9조 제1항

182) DLTR 제2조 제10항

183) Maume and Kesper, 2023, p. 7

184) 파생상품 또는 구조화된 증권을 포함하는 복잡한 금융상품을 제외함

185) 비 UCITS 집합투자기구 및 구조화된 UCITS는 제외함

186) DLTR 제3조

- DLT 시장 인프라의 모든 DLT 금융상품의 총시장가치는 새로운 상품을 수용하거나 처음 등록할 때 60억유로를 초과할 수 없음<sup>187)</sup>
  - 모든 DLT 금융상품의 총시장가치가 90억유로에 이르면, DLT 시장 인프라 운영자는 전통적 시장으로의 전환 전략을 개시하여야 하고 관할당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sup>188)</sup>
- DLTR은 거래소의 금융 안정성과 무결성을 위해 DLT MTF에 대한 접근성을 일부 소매 투자자에게만 허용함<sup>189)</sup>
- 투자자는 분산원장 기술의 기능에 대한 지식, 거래능력, 역량, 경험이 충분하고, DLT MTF 시장 조성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DLT MTF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트레이딩 기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등의 자격 요건을 둬

## 2. EU 회원국 현황

### 가. 규제제도<sup>190)</sup>

- 유럽연합 회원국의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살펴보면 대부분 회원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AML/CFT) 규정 외 구체적인 법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MiCAR 도입을 통해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
- 대부분 회원국의 가상화폐 발행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는 EU 제 5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AML/CFT) 준칙<sup>191)</sup>을 토대로 이루어짐

187) DLTR 제3조 제2항

188) DLTR 제7조 제7항

189) Roy Choudhury et al., 2023, p. 151; DLTR 제4조 제2항

190) 회원국별 규제제도 현황은 별첨 1 참조할 것

191) Directive (EU) 2018/8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amending Directive (EU) 2015/849 on the prevention of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purposes of money laundering or terrorist financing, and amending Directives 2009/138/EC and 2013/36/EU

- AML/CFT 관련 법률을 통해 암호자산 정의 및 분류를 규정함
- 그리고 가상화폐 발행 및 유통, 홍보 등에 대해 엄격한 법적 규제를 하지 않지만 MiCA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금융감독당국의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MiCAR 도입 이전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확인할 수 있는 회원국은 프랑스와 독일, 몰타가 있음
  - 프랑스는 2017년 블록체인 명령과 2019년 Pacte 법률의 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함
  - 독일은 「은행업법」, 「전자증권법」, 「증권기관감독법」의 개정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체계를 마련함
  - 몰타는 「가상금융자산법」, 「디지털혁신기관법」, 「혁신기술조치 및 서비스법」의 제정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함
  
- 2023년 EU DLTR의 시행으로 일부 국가는 DLT 기반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한 법률 체계를 마련함
  -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는 DLTR 도입 이전부터 중앙 증권예탁기관 없이 DLT를 대체로 하는 증권 등록을 허용하여 DLT 기반 증권의 발행을 허용함
  -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DLT 기반 금융상품을 다루는 법률을 2023년에 제정함

#### 나. 과세제도<sup>192)</sup>

- 대부분 유럽연합 회원국은 암호자산 관련 소득을 과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을 제·개정하기보다는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함
  -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는 암호화폐 관련 소득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법 규정을 도입하였고, 폴란드는 암호자산 과세를 위한 세법 개정을 준비 중임

---

192) 회원국별 과세제도 현황은 별첨 2를 참조할 것

- 2024년 현재 암호자산 관련 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회원국은 사이프러스, 그리스, 몰타, 슬로베니아가 있음
  - 그리스는 암호자산 관련 소득을 전부 과세하지 않고, 사이프러스와 몰타는 코인 및 토큰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함
  - 슬로베니아는 자본자산(부동산, 증권, 투자펀드)에 해당하지 않거나 파생상품으로 분류하는 가상화폐의 매매, 교환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 회원국은 비사업용 자산인 암호화폐의 매매, 교환, 이전으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 자본(자산)소득(금융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 벨기에,<sup>193)</sup> 체코, 독일,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회원국은 벨기에(33%)가 있고, 체코(15%, 23%), 독일(14~45%), 리투아니아(15%, 20%), 룩셈부르크(1.14~34.55%), 슬로바키아(19%, 25%)은 누진세율을 적용함
  - 자본(자산)소득, 금융소득으로 분류하는 회원국 중에서 핀란드(30%, 34%)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은 단일세율을 적용함
    - 양도소득이나 자본(자산)소득 등으로 분류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회원국은 오스트리아(27.5%), 불가리아(10%), 크로아티아(12%), 헝가리(15%), 아일랜드(33%), 이탈리아(26%), 라트비아(20%), 폴란드(19%), 포르투갈(28%), 루마니아(10%), 슬로베니아(25%), 스웨덴(30%)이 있음
  - 프랑스(12.8%, 사회보장세 포함 시 30%)와 에스토니아(20%)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며, 네덜란드는 저축/투자소득으로 32%의 부유세를 적용하고, 스페인은 저축 소득으로 분류하고 19~28%의 누진세율을 적용함
  - 덴마크는 투자자산 처분소득으로 분류하고 최대 52.07%(지방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함

---

193) 벨기에는 NFT 거래로 인한 소득은 자본이득으로 과세함

- 일부 회원국은 비영업용 자산(사적 재산)인 암호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 기타소득, 자본소득에 대해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함
  - 일정 보유기간 이상 보유하는 암호자산 매매 등으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하는 회원국은 크로아티아(2년 이상), 독일(1년 이상), 룩셈부르크(6개월 이상), 포르투갈(365일 이상)이 있음
    - 슬로바키아는 보유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저율 과세함
  
-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는 DLT 기반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지만 DLT 기반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법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음
  - 독일은 유권해석을 통해 DLT 기반 증권과 관련한 소득을 증권이 구현하는 권리에 따라 자본자산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프랑스는 DLT 기반 증권 토큰을 자본소득으로 과세함
  - 한편 몰타와 리투아니아는 DLT 기반 증권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두지 않았지만, 증권으로 분류하는 토큰이나 코인의 매매, 교환, 이전으로 인한 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 처리함

### 3. 독일

#### 가. 규제제도

##### 1) 개요

- 독일은 금융 및 증권 관련 일반법의 개정을 통해 암호토큰(Kryptotoken) 규제 인프라를 마련함<sup>194)</sup>

194) 금융 및 증권 관련 일반법에는 「은행업법(Kreditwesengesetz, KWG)」, 「증권거래법(Wertpapierhandelsgesetz, WpHG)」, 「자본투자법(Kapitalanlagegesetzbuch, KAGB)」, 「증권투자설명서

- 주요 규제 감독기관인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aFin)은 2018년과 2019년 금융 및 증권 관련한 규제 처리 및 분류에 관한 유권해석을 공개하여 암호자산 처리 규정을 명시한 바 있음<sup>195)</sup>
- 암호토큰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금융당국<sup>196)</sup>의 규제는 일반적으로 토큰 자체의 감독 분류에 따라 달리 적용함<sup>197)</sup>
- 결제토큰(Zahlungstoken): 토큰 발행자가 법정 통화를 대체하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로 의도한 토큰으로 가상화폐(Virtuelle Währung)라고도 함
  - 「은행업법(KRW)」상 금융상품으로 분류하지만, 「증권투자설명서법(WpPG)」 의미

---

법(Wertpapierprospektgesetz, WpPG)», 「지급결제법(Zahlungsdienstleistungsgesetz, ZAG)», 「투자법(Vermögensanlagegesetz, VermAnlG)」 등이 있음. 독일 「증권거래법(WpHG)」은 증권 거래소에 상장한 증권 및 금융 선물을 거래하는 금융서비스 회사를 통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내부자 거래, 시장조작, 공매도 금지 등을 다룸(<https://de.wikipedia.org/wiki/Wertpapierhandelsgesetz>). 독일 「자본투자법(KAGB)」은 2013년 7월 22일부터 발효한 소규모 및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펀드로 분류할 수 있는 모든 투자를 규제하는 법률로 개방형 및 폐쇄형 펀드 관리자에 대한 법적 요건을 규정함(<https://de.wikipedia.org/wiki/Kapitalanlagegesetzbuch>). 「증권투자설명서법(WpPG)」은 증권 공모에 필요한 투자 설명서의 준비, 승인, 발행에 관한 법률임. 독일 「투자법(VermAnlG)」상 자산투자는 익명의 파트너십, 신탁기금 수익증권, 수익참여권, 등록채권으로 독일 「자본투자법(KAGB)」의 규제 대상 외 자산투자를 규제함(<https://de.wikipedia.org/wiki/Verm%C3%B6gensanlagegesetz>)

- 195) BaFin - Advisory Letter (WA) - GZ: WA 11-QB 4100-2017/0010([https://www.bafin.de/SharedDocs/Downloads/DE/Merkblatt/WA/dl\\_hinweisschreiben\\_einordnung\\_ICOs.html](https://www.bafin.de/SharedDocs/Downloads/DE/Merkblatt/WA/dl_hinweisschreiben_einordnung_ICOs.html), 검색일자: 2024. 8. 20.); BaFin - Guidance Notice: Second Advisory Letter - GZ: WA 51-Wp 7100-2019/0011 and IF 1-AZB 1505-2019/0003([https://www.bafin.de/SharedDocs/Downloads/DE/Merkblatt/WA/dl\\_wa\\_merkblatt\\_ICOs.html](https://www.bafin.de/SharedDocs/Downloads/DE/Merkblatt/WA/dl_wa_merkblatt_ICOs.html), 검색일자: 2024. 8. 20.); BaFin - Guidance notice: Guidelines concerning the statutory definition of crypto custody business([https://www.bafin.de/SharedDocs/Veroeffentlichungen/EN/Merkblatt/mb\\_200302\\_kryptoverwahrgeschaefte\\_en.html](https://www.bafin.de/SharedDocs/Veroeffentlichungen/EN/Merkblatt/mb_200302_kryptoverwahrgeschaefte_en.html), 검색일자: 2024. 8. 20.)
- 196) BaFin과 독일 연방은행은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의 발행자 및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및 규제기관임
- 197) BaFin, "Guidance Notice Second advisory letter on prospectus and authorisation requir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issuance of crypto tokens Ref.: WA 51-Wp 7100-2019/0011 and IF 1-AZB 1505-2019/0003," [https://www.bafin.de/SharedDocs/Downloads/EN/Merkblatt/WA/dl\\_wa\\_merkblatt\\_ICOs\\_en.html](https://www.bafin.de/SharedDocs/Downloads/EN/Merkblatt/WA/dl_wa_merkblatt_ICOs_en.html). 이하 본문은 Bafin, "Kryptotoken," 2022. 9. 1. ([https://www.bafin.de/DE/Aufsicht/FinTech/Geschaeftsmodelle/DLT\\_Blockchain\\_Krypto/Kryptotoken/Kryptotoken\\_node.html](https://www.bafin.de/DE/Aufsicht/FinTech/Geschaeftsmodelle/DLT_Blockchain_Krypto/Kryptotoken/Kryptotoken_node.html), 검색일자: 2024. 8. 20.)을 요약하고 본문에는 별도 각주를 달지 않음

내에서의 증권 또는 독일 「투자법(VermAnlG)」에 따른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음  
- 결제토큰은 비트코인과 같은 내재가치가 없는 토큰과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자산준거토큰(Wertreferenzierende Token)<sup>198</sup>)으로 구분함

- 증권토큰(Security Token): 자산에 대한 계약상 청구권(배당금 지급 청구권, 의결권, 권리 상환 청구권, 이자 지급 청구권)을 부여한 토큰으로 주식 또는 채무증권 등과 같이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속성과 유사한 토큰을 포함함
  - 일반적으로 「증권투자설명서법(WpPG)」 및 독일 「증권거래법(WpHG)」에 따른 증권 또는 「은행업법(KWG)」 및 「증권기관감독법(WpLG)」에 따른 금융상품으로 봄
  - 증권토큰은 「전자증권법(eWpG)」에 따라 암호증권등록부(DLT 기반)에 등록된 경우에만 암호증권으로 봄
- 기타
  - 전자증권(암호증권(Kryptowertpapiere) 포함): 「전자증권법(eWpG)」의 제정으로 문서 증권 없이 전자등록을 통한 민법상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sup>199</sup> DLT 시스템 기반 암호증권은 일반적으로 은행 및 증권 규제법에 따른 금융상품에 해당함
  - NFT(Non-fungible token): 현재까지 금융 및 증권 관련 일반법의 규제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지만, 상호 전환 가능성의 측면에서 규제 가능성은 열어둠<sup>200</sup>
  - 유틸리티 토큰: 입장권이나 바우처와 유사한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암호토큰으로 독일 「증권투자설명서법(WpPG)」, 독일 「투자법(VermAnlG)」, 독일 「은행업법(KWG)」 등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음

198) 법정 통화 또는 금, 증권, 기타 암호자산 등과 연동한 비정부기관이 발행한 암호자산으로 블록체인, 블록체인 외부, 알고리즘 절차를 통해 예치금을 보유하여 토큰과 참조 가치의 안정적인 관계를 달성함(BaFin, “Kryptotoken,” 2022. 9. 1., [https://www.bafin.de/DE/Aufsicht/FinTech/Geschaeftsmodelle/DLT\\_Blockchain\\_Krypto/Kryptotoken/Kryptotoken\\_node.htm](https://www.bafin.de/DE/Aufsicht/FinTech/Geschaeftsmodelle/DLT_Blockchain_Krypto/Kryptotoken/Kryptotoken_node.htm), 검색일자: 2024. 8. 20.)

199) 현재는 「전자증권법」 제1조의 무기명 채권과 「자본투자법(KAGB)」 제95조 제1항의 투자펀드 수익증권을 전자적으로 발행할 수 있음

200) BaFin, “Non-Fungible-Token: Auf den Inhalt kommt es an,” 2023. 3. 8., [https://www.bafin.de/SharedDocs/Veroeffentlichungen/DE/Fachartikel/2023/fa\\_bj\\_2303\\_NFT.html?nn=19650346](https://www.bafin.de/SharedDocs/Veroeffentlichungen/DE/Fachartikel/2023/fa_bj_2303_NFT.html?nn=19650346), 검색일자: 2024. 7. 17.

- 하이브리드 토큰: 여러 유형의 토큰이 혼합한 경우 해당 토큰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개별 사례별로 규제 여부를 결정함

## 2) 금융법률상 규제

### 가) 은행업법 규제

- 독일 「은행업법(KWG)」은 ‘암호자산을 중앙은행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보증하지 않고 법정 화폐의 지위를 갖지 않지만, 자연인이나 법인이 합의나 실제 관행에 의해 교환, 지급, 투자 목적으로 수용하고 전자적 수단으로 양도·저장·거래될 수 있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함<sup>201)</sup>
- i) 독일 「결제서비스감독법」 제1조 제2항 제3문의 의미에 따른 전자화폐 ii)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결제 거래에만 사용하는 금전적 가치<sup>202)</sup>는 암호자산으로 보지 않음
- 암호자산의 범주에 가상화폐 또는 결제토큰을 포함하고, 독일 「지급결제법(ZAG)」 제1조 제2항 제3문의 의미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제11호에 따른 결제 거래에만 사용하는 금전적 가치에 해당하는 경우 암호자산으로 보지 않음<sup>203)</sup>

201) 독일 「은행업법(KWG)」 제1조 제11항 제4문. 제5차 EU 자금세탁 방지 준칙에 따른 정의를 차용함

202) 결제 거래에만 사용하는 금전적 가치는 i) 제한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지불 시스템 또는 매우 제한된 제품 범위와 사회적 또는 세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화폐 자산 또는 전자 통신 서비스의 경우 지불 거래에만 사용되는 화폐 자산 ii) 발행인 또는 제3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순수 전자 상품권으로, 상환 시 발행인과 관련하여 경제적 기능을 획득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거래가 불가능하고 상품권의 성과 또는 발행인 또는 제3자의 일반적인 사업 개발에 대한 가치 또는 회계적 측면에서 준투자자의 기대를 반영하지 않음 iii) 거래가 불가능하고 일반적인 교환 및 지불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될 계획이 없는 다중 파트너 프로그램의 전자 토큰을 말함

203) 네트워크 결제 시스템, 전자 통신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결제 거래는 제외하며,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대가로 발행자 또는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순수 전자 상품권도 포함하지 않음(독일 「은행업법(KWG)」 제1조 제11항 제5문)

- 독일 「은행업법(KWG)」은 교환 및 지불 기능이 있는 결제토큰만을 규제 대상 금융상품으로 분류함<sup>204)</sup>
  - 2013년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독일 「은행업법(KWG)」에 따른 결제단위(Rechnungseinheit)인 금융상품(Finanzinstrumente)으로 유권 해석하여 은행업법 규제 체계로 포섭하고자 시도함<sup>205)206)</sup>
    - 2018년 9월 25일자로 베를린 항소 법원이 비트코인은 독일 「은행업법」에 따른 결제단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함에 따라<sup>207)</sup> 과거 BaFin 유권해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유럽연합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sup>208)</sup>을 국내법으로 입법하기 위해 독일 「은행업법」을 개정하고<sup>209)</sup> 결제토큰을 금융상품 중 하나인 결제단위로 분류함<sup>210)</sup>
  - 2020년 1월 1일부터 암호자산 수탁업을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 「은행업법(KWG)」의 규제 대상으로 포섭함<sup>211)</sup>

204) 독일 「은행업법(KWG)」 제1조 제11항 제1문 제10호: [https://www.bafin.de/DE/Aufsicht/FinTech/Geschaeftsmodelle/DLT\\_Blockchain\\_Krypto/Kryptotoken/Kryptotoken\\_node.html](https://www.bafin.de/DE/Aufsicht/FinTech/Geschaeftsmodelle/DLT_Blockchain_Krypto/Kryptotoken/Kryptotoken_node.html), 검색일자: 2024. 7. 17.

205) 결제단위(Rechnungseinheiten)는 교환거래에서 사적 지급수단의 기능을 하거나 또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 다자간 청산에서 화폐를 대신하는 것으로 지급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 독일 은행업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독일 내에서 은행업 또는 상업적으로 금융 서비스(Finanzdienstleistungen)를 영위하려고 하거나 상업적 방식으로 하는 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는 BaFin으로부터 서면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조 정의 규정 제1a항과 제2항에서 금융상품(Finanzinstrumenten)의 매매는 금융서비스에 속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조 제11항에서 결제단위를 금융상품의 하나로 열거함.

206) 독일연방금융감독청(bafin), [https://www.bafin.de/SharedDocs/Veroeffentlichungen/DE/Fachartikel/2014/fa\\_bj\\_1401\\_bitcoins.html](https://www.bafin.de/SharedDocs/Veroeffentlichungen/DE/Fachartikel/2014/fa_bj_1401_bitcoins.html), 검색일자: 2024. 7. 17.

207) KG, Urteil vom 25.09.2018 - (4) 161 Ss 28/18 (35/18); <https://openjur.de/u/2254032.html>

208) Richtlinie (EU) 2018/843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30. Mai 2018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EU) 2015/849 zur Verhinderung der Nutzung des Finanzsystems zum Zwecke der Geldwäsche und der Terrorismusfinanzierung und zur Änderung der Richtlinien 2009/138/EG und 2013/36/EU (ABl. L 156 vom 19. 6. 2018).

209) 제4차 EU 자금세탁 지침 개정 지침 시행법을 통해 국내법을 개정함(zur Umsetzung der Änderungsrichtlinie zur Vierten EU-Geldwäscherichtlinie, Bundesgesetzblatt Jahrgang 2019 Teil I Nr. 50, ausgegeben zu Bonn am 19. Dezember 2019, p. 2602.). 독일 국회, <https://dip.bundestag.de/vorgang/gesetz-zur-umsetzung-der-%C3%A4nderungsrichtlinie-zur-vierten-eu-geldw%C3%A4scherichtlinie/251728>

210) 독일 「은행업법(KWG)」 제1조 제11항 제1문 제7호

- 독일 「은행업법(KWG)」에 따른 암호자산의 범주에 결제토큰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XRP) 등 가상화폐과 함께 채무증권(Schuldtitel), 자산투자(Vermögensanlage), 투자펀드(Investmentvermögen)로 분류할 수 있는 증권토큰(또는 투자토큰, 자산토큰)도 포함함<sup>212)</sup>
- MiFID II 규정이 금융상품을 ‘양도성 증권’으로 정의함에 따라 증권토큰도 「은행업법」에 따른 금융상품으로 간주함<sup>213)</sup>

#### 나) 증권법 규제

- 암호토큰이 증권성을 띠고 있는 경우 유가증권으로 간주하여 증권 관련 규제<sup>214)</sup>를 적용할 수 있음
- 증권 규제의 측면에서 토큰을 분류할 때는 독일 「은행업법」상 금융상품 여부와 관계 없이 「증권투자설명서법(WpPG)」 또는 투자설명서 규정(ProspektVO)에 따른 증권 여부만 고려함
- 유동성 없는 투자상품을 토큰화(tokenization)을 통하여 금융시장에서 양도가능한 토큰의 형태로 디지털화하는 경우,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증권투자설명서법(WpPG)」과 「증권거래법(WpHG)」에 따른 증권으로 분류함<sup>215)</sup>

211) 독일 「은행업법(KWG)」 제1조 제1a항 제2문 제6호

212) 독일 「은행업법(KWG)」 제1조 제11항 제1문 제2호, 제3호, 제5호; BaFin, “Hinweise zu Finanzinstrumenten nach § 1 Abs. 11 Sätze 1 bis 5 KWG (Aktien, Vermögensanlagen, Schuldtitel, sonstige Rechte, Anteile an Investmentvermögen, Geldmarktinstrumente, Devisen, Rechnungseinheiten, Emissionszertifikate, Kryptowerte und Schwarmfinanzierungsinstrumente),” 2022. 12. 1.; 독일연방금융감독청(bafin), [https://www.bafin.de/SharedDocs/Veroeffentlichungen/DE/Merkblatt/mb\\_111220\\_finanzinstrumente.html;jsessionid=FF0C7BA7D6F78CE03F5](https://www.bafin.de/SharedDocs/Veroeffentlichungen/DE/Merkblatt/mb_111220_finanzinstrumente.html;jsessionid=FF0C7BA7D6F78CE03F5), 검색일자: 2024. 7. 17.

213) MiFID II 제4조 제1항 제44호; Stamm and Meinert, 2022, p. 67

214) EU 투자설명서 규정(EU)2017/1129; MiFID II 2014/65/EU.

215) BaFin, “Guidance Notice crypto tokens Second advisory letter on prospectus and authorisation requir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issuance of crypto tokens”, 2019. 11. 22., [https://www.bafin.de/SharedDocs/Downloads/EN/Merkblatt/WA/dl\\_wa\\_merkblatt\\_ICOs\\_en.html](https://www.bafin.de/SharedDocs/Downloads/EN/Merkblatt/WA/dl_wa_merkblatt_ICOs_en.html), 검색일자: 2024. 7. 17.

- 독일 「투자법(VermAnlG)」의 적용을 받는 전통적인 투자상품은 증권성이 없었기 때문에 증권법상 유가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았음
    - 투자상품으로는 회사이익에 대한 참여청구권,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청구권, 이익참여대출, 후순위대출 등이 있음(독일 「투자법」 제1조 제2항)
    - 유통을 허용하지 않는 자본투자는 자본시장에서의 표준화, 거래 가능성, 양도 가능성은 물론 증권에 필적하는 권리의 통합이라는 본질적인 특성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법에 따른 증권으로 보지 않았음<sup>216)</sup>
  - 그러나 토큰화를 통해 증권성을 부여받은 해당 증권은 독일 투자법이 아닌 투자설명서 규정, 「증권투자설명서법」과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음<sup>217)</sup>
    - 경우에 따라 독일 「자본투자법(KAGB)」의 의미 내에서 투자펀드 단위로 취급함
- 토큰의 증권성 판단과 관련하여 BaFin은 양도 가능성, 금융시장에서의 유통 가능성, 증권과 유사한 권리와 같은 지표를 통해 증권성 유무를 확인한 바 있음<sup>218)</sup>
- 양도 가능성(Übertragbarkeit): 토큰의 법률적 또는 기술적 본질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용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경우 양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함
  - 금융시장에서의 유통 가능성(Handelbarkeit am Finanzmarkt):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토큰의 속성에 대해 최소한의 표준화 수준으로, 분산원장이나 블록체인 기술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토큰 보유자와 토큰에 포함된 권리를 문서화할 수 있으면 거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임
  - 유가증권과 유사한 권리(Wertpapierähnliche Rechte): 토큰은 주주 지분 또는 채무증권 등 전통적 증권상 권리와 유사한 권리를 구현하여야 함

216) OECD, 2021, p. 40

217) Stamm and Meinert, 2022, p. 67

218) 독일연방금융감독청(bafin), [https://www.bafin.de/DE/Aufsicht/FinTech/Geschaeftsmodelle/DLT\\_Blockchain\\_Krypto/Kryptotoken/Kryptotoken\\_node.html](https://www.bafin.de/DE/Aufsicht/FinTech/Geschaeftsmodelle/DLT_Blockchain_Krypto/Kryptotoken/Kryptotoken_node.html)

- 독일 「전자증권법(eWpG)」<sup>219)</sup>은 DLT 기반 암호증권을 독일 「민법」 제90조의 물건(동산)으로 의제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등 물건법의 적용대상으로 처리함(제2조 제3항)<sup>220)</sup>
  - 유가증권의 보관방식에 따라 중앙등록부 전자증권(elektronische Wertpapiere)과 암호증권등록부(DLT 기반) 암호증권(Kryptowertpapiere)으로 구분하고(제4조 제2항, 제3항) 전자증권 발행 시 두 가지 등록방식 중 하나를 선택함<sup>221)</sup>
  - 모든 종류의 증권에 대해 전자증권의 발행을 허용한 것은 아니고 무기명 사채,<sup>222)</sup> 무기명 담보부사채의 일종인 저당증권,<sup>223)</sup> 계약형 펀드의 무기명 수익증권<sup>224)</sup>에 대해서만 허용함<sup>225)</sup>
  - 현재 독일 「자본투자법(KAGB)」 제1조 제1항의 집합투자펀드에 대한 암호펀드 지분(Kryptofondsanteilen)<sup>226)</sup>의 발행도 가능함

219) 2021년 2월 24일 독일 연방정부는 전자유가증권에 관한 도입법안(Entwurf eines Gesetzes zur Einführung von elektronischen Wertpapieren, BT-dRUCKS, 19/26925 vom 24. 2. 2021)의 정부안을 발표하고, 2021년 5월 6일 독일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음. 「전자유가증권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을 2021년 6월 10일 발효함

220) 정대익, 2021, pp. 11~14; 이정수, 2022, p. 64; Bafin, “Kryptotoken,” 2022. 9. 1., [https://www.bafin.de/DE/Aufsicht/FinTech/Geschaeftsmodelle/DLT\\_Blockchain\\_Krypto/Kryptotoken/Kryptotoken\\_node.html](https://www.bafin.de/DE/Aufsicht/FinTech/Geschaeftsmodelle/DLT_Blockchain_Krypto/Kryptotoken/Kryptotoken_node.html), 검색일자: 2024. 7. 17.

221) Regierungsentwurf, BT-Drucks. 19/26925, S. 42

222) 무기명 사채(Inhaberschuldverschreibung) 규정은 「전자증권도입법」 제1장 제1조 및 「민법(BGB)」 제793조임

223) 저당증권(Pfandbrief) 규정은 「전자증권법」 제11장 및 「저당증권법(Pfandbriefgesetz)」 제4조 제5항, 제8조 제3항임

224) 계약형 펀드의 무기명수익증권은 「전자증권법」 제10장과 독일 「자본투자법(KAGB)」 제95조 제1항-제3항에서 규정함. 계약형펀드의 수익증권은 원칙적으로 중앙등록부전자증권으로만 발행할 수 있지만 수권받은 독일 「자본투자법」 제95조 제5항에 따라 독일 연방 법무 및 소비자 보호부(BMJ V)와 재무부(BMF)가 시행령을 통해 암호증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면 암호증권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고 함(정대익, 2021, p. 14. 각주 25)

225) 정대익, 2021, pp. 14~15

226) 독일 「전자증권법」이 아닌 독일 「자본투자법」의 개정에 해당하는 암호펀드 수익증권에 대한 규정(Verordnung über Kryptofondsanteile)을 통해 허용하며 이 규정은 2022년 6월 18일자로 발효함(BaFin, “Kryptofondsanteile,” 2022. 9. 1., [https://www.bafin.de/SharedDocs/FAQs/DE/Fintech/Kryptotoken/Tokenarten/0800\\_Krypto-Fondsanteile.html](https://www.bafin.de/SharedDocs/FAQs/DE/Fintech/Kryptotoken/Tokenarten/0800_Krypto-Fondsanteile.html), 검색일자: 2024. 7. 17.)

- 독일 「증권기관감독법(WpIG)」<sup>227)</sup> 제2조 제5항 제10호은 독일 「은행업법」 제1조 제1문 제11항 제4호 및 제5호<sup>228)</sup>의 의미 내에서의 암호자산을 금융상품(Finanzinstrumente)으로 분류함

다) 자본 조달 관련 규제

- 자본 조달을 위해 암호토큰을 발행하는 경우<sup>229)</sup> 토큰 발행자는 증권투자설명서 요건 및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자본 조달 시 발행자는 독일 「투자법(VermAnlG)」과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설명서 작성 및 공개 의무가 있음
  - 암호토큰과 관련하여 बैं킹, 금융, 투자와 같은 특정 활동은 BaFin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sup>230)</sup>

---

227) 「증권기관감독법」은 2021년 6월 26일자로 발효하였고, 증권기관 감독을 위한 법률로서 2019년부터 시행한 증권기관 감독에 관한 유럽 지침을 국내법으로 입법함. 과거 은행업법으로 규제하였던 대형 은행과 소규모 투자회사의 금융서비스를 규제함

228) 제4호는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에 따른 권리의 취득 및 매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해당 권리, 통화, 이자율, 기타소득, 상품, 지수 또는 평가에 따라 현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기타 권리가 고, 제5호는 독일 「자본투자법(KAGB)」 제1항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펀드의 지분을 의미함

229) Initial Coin Offering(ICO), Initial Token Offering(ITO), Security Token Offering(STO) 모두 자본 조달을 위한 암호토큰의 발행을 의미함

230) 예치금 사업(Einlagengeschäft)의 경우 발행자가 법정 통화와 교환하여 토큰을 제공한 후 조건 없이 상환을 약정한 경우 「은행업법」에 따른 승인을 득해야 함. 전자화폐 사업(E-Geld-Geschäft)은 토큰의 자체 발행에 대해 독일 「지급결제법(ZAG)」 제1조 제2항 제2문에 따른 전자화폐 사업 요건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예시를 들자면 토큰을 유로나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경우 「지급결제법」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투자 사업(Investmentgeschäft)의 토큰 발행은 독일 「자본투자법(KAGB)」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예시를 들자면, 토큰 발행자가 ICO를 통해 조달한 자금 또는 가상화폐의 공동 투자를 약정하고 토큰 보유자가 발행자의 후속 분배 또는 재매입과 같은 투자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발행자는 자본관리펀드의 운영자가 될 수 있음. 이 경우 「자본투자법」에 따른 승인이 필요함)

## 나. 증권토큰 사례

- 독일 조각투자(fractional investment) 시장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기반으로 하여 투자자에게 증권 토큰(security token, 또는 Kryptowertpapier)을 발행함<sup>231)</sup>
- 무기명 사채 등 금융채권(Finanzielle Rechte)에 대한 조각투자는 주로 증권형 토큰 또는 독일 「전자증권법(eWpG)」에 따른 크립토큰을 발행하며 전통적인 규제 시장이 아닌 OTC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함
  - 2019년 12월 FR L'Osteria SE와 Invesdor이 베를린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매각과 관련한 후순위 채권을 증권화 토큰으로 발행함<sup>232)</sup>
  - 독일 내 시가총액 3위 규모인 지멘스(Siemens)는 2023년 2월 14일 폴리곤(Polygon) 블록체인을 통해 1년 만기 6천만유로 규모의 디지털 채권을 발행함<sup>233)</sup>
    -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예탁결제원의 관여 없이 기관 투자자에게 채권을 직접 판매한 독일 최초 사례임
- 고가 유형자산(Materielle Vermögenswerte)에 대한 조각투자는 투자자에게 주로 증권 토큰을 발행하며, 발행된 증권 토큰은 가상 마켓플레이스, OTC 및 분산형 마켓플레이스에서 부분적으로 거래가 가능함
  - 대표 조각투자 플랫폼은 2018년에 설립된 베를린 스타트업 Timeless와 함부르크 회사인 Finexity가 있음<sup>234)</sup>

231) <https://www.horn-company.de/epaper/2023-HC-NYALA-DigitaleAssets.pdf>, pp. 8~9. 검색일자: 2024. 3. 14.

232) Invesdor, "L'Osteria goes Blockchain," <https://www.invesdor.com/success-stories/losteria#/>, 검색일자: 2024. 9. 13.

233) 『법률신문』, 「독일 「전자증권법」 제정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채권 발행의 시사점」,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88213>, 검색일자: 2024. 9. 13.

234) <https://www.procontra-online.de/investments/artikel/ein-quaentchen-luxus>, 검색일자:

- Timeless는 최종 고객(Endkunden)을 대상으로 하여 시계, 예술품, 차량, 운동화, 와인, 트레이딩 카드, 기념품 등 고가 현물에 대한 조각 소유권(Fractional Ownership)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고, 대상 자산 보유기간은 1년 이내임<sup>235)</sup>
- Finexity는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부동산, 자동차, 다이아몬드 등에 대한 간접투자의 형태로 증권 토큰(digitalen Anteile)을 판매하고, 해당 토큰의 매매는 비상장 2차 시장(außerbörslichen Sekundärmarkt)에서 이루어지며<sup>236)</sup> 대상 자산 보유기간은 2~15년임<sup>237)</sup>
- Timeless는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은 투자자의 사적 양도거래로 안내하고, Finexity는 조각투자 대상 자산을 간접투자의 형태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데, 해당 조각투자상품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자본자산소득으로 안내함

## 다. 과세제도

### 1) 부가가치세<sup>238)</sup>

- 독일 연방 재무부는 2018년 2월 27일 “가상화폐의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한 지침”<sup>239)</sup>을 공개함
- 이 지침은 2015년 10월 22일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sup>240)</sup>를 반영하여 가상

---

2024. 9. 13.

235) <https://support.timeless.investments/de/articles/31126-sind-erzielte-gewinne-steuerpflichtig>, 검색일자: 2024. 9. 13. Timeless는 투자대상자산이 재판매될 때까지 보관, 보험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대상 자산은 공유로 분할하여 Timeless 플랫폼을 통해 취득할 수 있음. Timeless를 운영하는 New Horizon GmbH는 독일 「증권기관법(WpIG)」에 따른 금융투자중개자임

236) <https://finexity.com/company/about>, 검색일자: 2024. 3. 14.

237) <https://www.finanzfluss.de/blog/sachwert-investments/>, 검색일자: 2024. 3. 14.

238) Library of congress, <https://www.loc.gov/item/global-legal-monitor/2018-03-13/germany-federal-ministry-of-finance-publishes-guidance-on-vat-treatment-of-virtual-currencies/>, 검색일자: 2024. 7. 17.

239)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BMF), BMF-Schreiben. Umsatzsteuerliche Behandlung von Bitcoin und anderen sog. virtuellen Währungen(BMF v. 27.02.2018 - III C 3 - S 7 160-b/13/10001 BStBl 2018 I S. 31)

화폐 등이 관여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처리에 대한 내용을 담음

- 지불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비트코인 또는 기타 가상화폐의 교환은 기존 지불 수단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sup>241)</sup>
  - 기존 통화를 비트코인이나 기타 가상화폐로 교환하거나 그 반대로 교환하는 거래는 대가를 받는 다른 서비스의 과세 공급을 구성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로 처리함
    - 비트코인 시스템의 유지에 핵심적인 채굴(mining) 행위는 부가가치세 비과세(non-taxable) 거래로 봄
  -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s)의 유료 제공에 대해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과세 대상 서비스로 수행 장소가 독일에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운영자가 중개자로서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 화폐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 2) 소득세

- 암호자산 관련 소득을 과세하기 위해 법률로써 정한 바는 없지만, 과세당국의 유권 해석과 법원의 판례를 통해 독일 과세당국의 접근방식을 공개함
-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 논의는 2013년 독일 의회와 독일 연방 재무부 간 질의·답변 절차에서 찾아볼 수 있음<sup>242)</sup>

240) (Case C-264/14 Skatteverket v David Hedqvist [2015] ECR I-498)

241) Library of congress, <https://www.loc.gov/item/global-legal-monitor/2018-03-13/germany-federal-ministry-of-finance-publishes-guidance-on-vat-treatment-of-virtual-currencies/>, 검색일자: 2024. 8. 5.; 독일 「부가가치세(UStG)」 제4조 제8호 (b)목

242) BMF, "Letter to Frank Schäffler, 2013/0566387 (20 June 2013)," [www.frankschaeffler.de/wp-content/uploads/2013/08/2013\\_06\\_20-Antwort-Bitcoin-Koschyk.pdf](http://www.frankschaeffler.de/wp-content/uploads/2013/08/2013_06_20-Antwort-Bitcoin-Koschyk.pdf), 검색일자: 2024. 8. 5.; BMF, "Letter to Frank Schäffler, 2013/0739540 (7 Aug. 2013)," [www.frankschaeffler.de/wp-content/uploads/2013/08/2013\\_08\\_07-Antwort-Koschyk-Bitcoins-Besteuerung-Wirtschaftsgut.pdf](http://www.frankschaeffler.de/wp-content/uploads/2013/08/2013_08_07-Antwort-Koschyk-Bitcoins-Besteuerung-Wirtschaftsgut.pdf), 검색일자: 2024. 8. 5.

- 2013년 6월 의회는 연방 재무부에게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에 대한 소득세 처리를 질의하였는데, 당시 연방 재무부는 비트코인 거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고 비트코인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밝힘
- 2018년 1월 과세 및 금융 규제 목적으로 암호화폐의 취급에 대한 의회의 질의에 대해 연방 재무부는 비트코인은 독일 연방 금융감독청(BaFin)과 같이 독일 「은행업법(KWG)」에 따른 금융상품으로 간주하고 관련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고 답변함<sup>243)</sup>
- 현재 암호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처리는 2022년 5월 10일자로 공개한 독일 연방 재무부(BMF)의 유권해석 “가상 화폐 및 기타 토큰의 소득세 처리에 대한 개별 질문”<sup>244)</sup>을 토대로 함
  - 2020년 6월 가상화폐의 소득세 처리에 대한 BMF의 입장을 반영한 초안을 회람한 바 있는데, 이 문건에 따르면 암호화폐(cryptocurrencies)를 사적자산(Privatvermögen)으로 분류하고, 교환으로 인한 소득은 독일 「소득세법(EStG)」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봄<sup>245)</sup>
  - 2023년 2월 28일 독일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hof, BFH)은 BMF 접근방식을 기반하여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암호화폐 간 교환으로 인한 소득을 과

243) Deutsche Bundestag, “Schriftliche Fragen mit den in der Woche vom 2. Januar 2018 eingegangenen Antworten der Bundesregierung, 19 Wahlperiode, Drucksache 19/370, questions 24 and 25, (5 Jan. 2018),” <https://dipbt.bundestag.de/doc/btd/19/003/1900370.pdf>, 검색일자: 2024. 8. 5.

244) Einzelfragen zur ertragsteuerrechtlichen Behandlung von Virutellen Währungen und von sonstigen Token(Federal Tax Gazette I p,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05/2022-05-09-einzelfragen-zur-ertragsteuerrechtlichen-behandlung-von-virtuellen-waehrungen-und-von-sonstigen-token-englische-version.pdf?\\_\\_blob=publicationFile&v=1](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05/2022-05-09-einzelfragen-zur-ertragsteuerrechtlichen-behandlung-von-virtuellen-waehrungen-und-von-sonstigen-token-englische-version.pdf?__blob=publicationFile&v=1))

245) 독일연방의회(Deutscher Bundestag), <https://www.bundestag.de/resource/blob/704904/16d8ee9f5216e150cb012b65906cd0c7/WD-4-054-20-pdf-data.pdf>, 검색일자: 2024. 8. 5.; 이 문건은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독일 연방의회 하원의원 Frank Schäffler과 Christian Dürr이 대정부 질의를 하자(Antwort der Bundesregierung auf die Kleine Anfrage der Fraktion der FDP: Kryptogeschäfte in Deutschland, Bundestags-Drucksache 19/17024, Antwort Frage 6.; <https://dserver.bundestag.de/btd/19/170/1917024.pdf>) 이에 대한 BMF의 답변을 담고 있음

세대상으로 판결함<sup>246)</sup>

- 가상화폐는 기타 경제적 자산(anderen Wirtschaftsguts)으로 분류할 수 있고, 1년 투기 기간 내 암호화폐(통화 토큰) 거래에서 얻은 소득은 독일 「소득세법(EStG)」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문에 따라 사적 매매 거래로 과세한다고 판결함

□ 과세당국은 BaFin의 접근방식에 따라 토큰<sup>247)</sup>을 통화·결제 토큰(Currency or payment tokens),<sup>248)</sup>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s),<sup>249)</sup> 증권 토큰(Security tokens)<sup>250)</sup>으로 분류하더라도 소득세 처리는 그 분류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임

- 예시를 들자면 유틸리티 토큰을 지불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 목적 상 이를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로 처리함

246) 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원고인 독일 납세자는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거래 플랫폼(bitcoin.de)에서 17건의 거래를 통해 암호화폐(통화 토큰)인 비트코인(BTC)을 취득하고 공개 키와 비공개 키는 그의 지갑에 저장함. 2017년 1월 기준 원고는 22,585.96유로(약 24,026.30달러) 상당의 24.75825 BTC를 소유함. 2017년에 원고는 BTC를 이더리움(ETH)으로 교환하고, ETH의 일부를 암호화폐 XMR로 교환하고, XMR의 일부를 다시 BTC로 전환하여 총 340만유로(약 360만달러)의 이익을 얻음. 2017년 독일 과세당국이 통화토큰의 양도소득에 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리자, 원고는 통화 토큰은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s) 체인이고 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익을 제기하고 나아가 다양한 암호화폐의 개별적인 특성은 거래의 추적가능성과 그에 따른 조세 규정의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구조적으로 과세 집행 절차상 결함이 있다고 주장함(Urteil vom 14. Februar 2023, IX R 3/22; <https://www.bundesfinanzhof.de/de/entscheidung/entscheidungen-online/detail/STRE202310057/>; <https://www.loc.gov/item/global-legal-monitor/2023-03-20/germany-federal-fiscal-court-holds-cryptocurrency-transactions-subject-to-income-tax/>, 검색일자: 2024. 8. 5.)

247) 토큰은 특정 청구권(claims)과 권리(right)가 부여되고 다양한 기능을 갖는 디지털 단위(digital units)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로, 네트워크 내에서 서비스에 대한 지불로 발행되거나 프로젝트 착수자가 중앙에서 발행할 수 있음

248) 통화·결제 토큰은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토큰으로 “가상 화폐(virtual currency)”라고 함

249)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s)은 토큰 보유자에게 특정 사용 권한(예시로는 아직 생성되지 않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또는 토큰을 아직 생성되지 않은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 유틸리티 토큰은 보유자에게 소프트웨어 변경 사항 및 그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 기능에 대한 의견권을 부여할 수도 있음

250) 증권 토큰(Security tokens)은 MiFID II의 제4조 (1)항 44호에 의거한 전통적 금융상품(채무 상품 및 지분 상품)과 비교할 수 있는 토큰에 해당함. 보유자에게 참여권 및/또는 배당권(예: 주식)을 부여하는 지분 토큰(equity token)과 대출이나 이익 참여 권리의 경우와 같이 보유자에게 투자 금액(해당되는 경우 이자를 포함)을 상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채무 토큰(debt token)으로 구분함

- 세무목적상 가상화폐 및 기타 토큰의 개별 단위는 자산이며 거래를 개시하고 공개 키에 할당한 가상화폐 또는 기타 토큰 단위를 “처분(verfügen)”할 수 있는 경우 수익적 소유자(Wirtschaftlicher Eigentümer)로 봄<sup>251)</sup>
- 가상화폐를 외화(foreign currency)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소득세 과세 처리함

가) 가상화폐<sup>252)</sup>

(1) 취득 및 보유

- 블록 생성을 위해 채굴(mining) 및 주조(forging) 활동으로 취득한 가상화폐는 그 채굴 활동 등이 사업성<sup>253)</sup>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Einkünfte aus Gewerbebetrieb)으로 과세함
  - 가상화폐 등 취득원가는 취득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함<sup>254)</sup>
    - 가상화폐 등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유동자산(기타자산) 또는 고정자산(장기금융자산)으로 표시함
- 그러나 채굴 활동 등이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 블록 생성으로 수령한 가상화폐 등은 독일 「소득세법」 제22조 제3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리함<sup>255)</sup>
  -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시장 가격으로 인식하고<sup>256)</sup> 관련 비용을 공제함

251) 수익적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개인 키(privaten Schlüssels)의 소유자가 됨

252) 이하 본문은 2022년 BMF가 공개한 유권해석 “가상 화폐 및 기타 토큰의 소득세 처리에 대한 개별 질문”을 토대로 하며, 각 내용에 대해 별도 각주를 달지 않음

253) 독일 「소득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성은 영리성, 독립성, 지속가능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만일 블록 생성이 반복하도록 설계한 경우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간주하여(H 15.2(Wiederholungsabsich) EStH 2021), 장기적으로 채굴 활동 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여야 하는데 적합하여야 함(H 15.3(Totalgewinn) EStH 2021)

254) 독일 「소득세법(EStG)」 제6조 제6항 제1문에서 추론함.; 거래소에서 공시 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장 가격으로 사용하고, 거래소 공시 가격이 없는 경우 거래 플랫폼(예: Kraken, Coinbase 또는 Bitpanda) 또는 웹 기반 목록(예: <https://coinmarketcap.com/>)에서 가격을 인용할 수 있음

255) 다만 블록 생성으로 수령한 소득이 다른 소득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56) 독일 「소득세법(EStG)」 제8조 제2항 제1문

- 한편 블록 생성에 관여하지 않고 지분(stake)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은 개인자산운용(privaten Vermögensverwaltung)에 따른 소득으로 보고 독일 「소득세법」 제22조 제3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리함
  - 독일 「소득세법」 제22조 제3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과세연도 중 해당 소득과 다른 역무 제공과 관련한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256유로 이상인 경우에 한함<sup>257)</sup>
- 가상화폐의 렌딩(lending)으로 수령하는 가상화폐 등은 소득세로 과세 처리함
- 사업용 자산을 구성하는 가상화폐 등의 렌딩으로 수령한 가상화폐 등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개인자산인 가상화폐 등의 렌딩으로 인한 소득은 독일 「소득세법」 제22조 제3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에어드롭(airdrops)으로 수령하는 가상화폐 등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함
- 에어드롭으로 수령하는 가상화폐 등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해당 가상화폐 등의 취득 원가는 수령 시점의 시장 가격으로 평가함
  - 만일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수령한 가상화폐 등은 독일 「소득세법」 제22조 제3호의 의미 내에서 기타 역무 제공으로 인한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마케팅의 하나로 에어드롭이 이루어지더라도 이해관계자가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에어드롭을 언급하거나 플랫폼에 이미지, 사진, 비디오를 올리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
    - 에어드롭으로 수령하는 가상화폐 등의 취득 원가는 취득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시장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0) 유로로 처리함
  - 만일 에어드롭으로 수령한 가상화폐 등과 기타 역무 제공 간 경제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지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적용할 수 있음
- 블록체인의 하드포크(hard forks)로 인해 새로 발생한 가상화폐는 소득세를 과세하

<sup>257)</sup> 독일 「소득세법(EStG)」 제22조 제3호 제2문

지 않음

- 기존 보유하는 가상화폐 등의 취득 원가를 하드포크로 새로 발생한 가상화폐 단위에 할당함
- 기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등이 개인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하드포크로 새로 발생한 가상화폐의 취득 시점은 기존 보유하는 가상화폐 등의 취득 시점으로 봄

(2) 매매 및 교환

- 가상화폐의 매매 및 교환의 범위에는 가상화폐와 법정화폐와의 교환, 다른 가상화폐와의 교환,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의 지급을 포함함
- 가상화폐 등이 사업용 자산(Betriebsvermögen)인 경우 가상화폐 매매 및 교환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그리고 반복적으로 가상화폐 등을 매매하거나 다른 가상화폐 등과 교환하는 경우 개인자산운용이 아닌 상업적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음<sup>258)</sup>
- 개인자산인 가상화폐 등 매매 및 교환의 경우 독일 「소득세법」 제22조 제2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보유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가상화폐 등의 매매 및 교환으로 인한 소득은 개인 자산 양도<sup>259)</sup>에서 발생한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가상화폐 등의 매매 및 교환에서 발생한 소득 총액이 연간 1,000유로 미만인 경우 기타소득은 비과세함<sup>260)</sup>
  - 가상화폐 등의 보유기간(최소 1년) 동안 소득이 창출하는 데 사용한 경우 가상화폐 등의 취득부터 매매 및 교환까지의 보유기간은 10년 이내로 연장함<sup>261)</sup>

258) H 15.7 (9) (An- und Verkauf von Wertpapieren) EStH 2021

259) 독일 「소득세법(EStG)」 제23조 제1항 제1문 제2호

260) 독일 「소득세법(EStG)」 제23조 제3항 제5호

〈표 Ⅲ-1〉 독일 가상화폐 단계별 소득세 처리

구분	취득 및 보유 단계				매매 및 교환 단계
	채굴·주조	렌딩	하드포크	에어드롭	
사업용 자산	사업소득 <sup>1)</sup>	사업소득	-	사업소득	사업소득
개인자산	기타소득 <sup>2)</sup>	기타소득	-	기타소득 <sup>3)</sup>	기타소득 <sup>4)5)</sup>

주: 1) 독일 「소득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영리성, 독립성, 지속가능성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봄

2) 채굴 활동 등이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개인자산운용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타 의무 제공으로 인한 소득 총액이 연 256유로 미만인 경우 비과세함

3) 기타 의무 제공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며, 만일 에어드롭으로 수령한 가상화폐 등과 의무 제공 간 경제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 증여세를 적용할 수 있음

4) 보유기간 1년 미만의 가상화폐 등의 판매 및 교환은 개인자산 양도거래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며, 개인자산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 총액이 연 1,000유로 미만인 경우 비과세함

5) 가상화폐 등의 보유기간(1년) 동안 소득을 창출하는 데 사용한 경우 가상화폐 등의 보유기간 10년 이내 매매 및 교환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함

자료: 본문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함

#### 나) 증권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 독일 「증권거래법」<sup>262)</sup>에 따른 증권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목적상 증권토큰은 증권(Wertpapiere)으로 취급함<sup>263)</sup>

○ (i) 양도 가능해야 하며(Übertragbarkeit)<sup>264)</sup> (ii) 금융 또는 자본시장에서 거래 가능해야 하며(Handelbarkeit)<sup>265)</sup> (iii) 토큰에 구현한 권리가 존재하며<sup>266)</sup> (iv) 지불 결제 수단<sup>267)</sup>이 아닌 경우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함

261) 독일 「소득세법(EStG)」 제23조 제1항 제1문 제2호 제4문

262) 독일 「증권거래법(WpHG)」 제2조 제1항, 제4항과 MiFID II 제4조 제1항 제44호

263) BaFin in ihrem Hinweisschreiben vom 20.02.2018 (WA 11-QB 4100-2017/0010)

264) 실물증권 여부는 증권 토큰의 양도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필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독일 전자증권법(eWpG)에 따라 분산원장기술이나 블록체인 기술 등을 사용하여 토큰 보유자를 문서화할 수 있으면 충분함

265) 가상화폐 단위의 거래 플랫폼은 원칙적으로 증권 정의의 의미 내에서 금융시장 또는 자본시장으로 간주될 수 있음

266) 주주 권리(Gesellschafterrechten)나 계약상 청구권(schuldrechtlichen Ansprüchen) 또는 이와 유사한 청구권이 토큰에 구현되어야 함

267) 독일 「증권거래법(WpHG)」 제2조 제1항 및 MiFID II 제4조 제1항 44호에서 따른 지불 결제 수단에 대한 요건을 의미함

- 증권성이 있는 경우 권리참여권 또는 배당청구권을 부여하는 지분토큰(Eigenkapital token)과 투자금의 상환권 및 이익참가권이 있는 채무토큰(Fremdkapital token)으로 구분함
  - 현행 독일 「전자증권법」은 분산원장기술 기반 증권의 발행은 무기명 사채 등에 한해 허용함
  
- 증권토큰에 구현한 법적 권리에 따라 증권토큰 관련 소득은 독일 「소득세법」 제20조의 자본자산소득이나 제22조 제2항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처리함
  
- (자본자산 소득) 증권토큰에 구현한 법적 권리가 재무적 청구권(Kapitalforderung)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소득은 자본자산 소득으로 과세함
  - 증권토큰을 독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금융채권으로 보고, 토큰 보유기간 동안 수령한 소득은 독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경상자본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함
  - 증권토큰의 매각으로 인한 소득은 독일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제1문 제7호에 따라 자본이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함
  
- (기타소득) 증권토큰에 구현한 권리가 현물 혜택에 대한 청구권(Sachleistungsanspruch)<sup>268)</sup>인 경우 관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함
  - 발행자에게 예치된 특정 수량의 가상화폐 단위의 인도청구권 또는 가상화폐 또는 기타 토큰의 판매로 인한 기타 토큰 또는 수익의 상환청구권을 토큰에 구현한 경우, 현물에 대한 청구권에 해당함

268) Xetra-Gold 무기명 채권에 대한 연방재정법원의 판결과 금과 증권에 대한 연방재정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계약/발행조건에 발행인이 조달한 자본의 거의 전부를 금 등 원자재에 투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예치된 원자재 인도에 대한 청구권 또는 매각대금 지급에 대한 청구권만 있는 경우 독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7호의 의미 내에서는 자본 청구가 없지만 현물 혜택에 대한 청구가 있다고 판결함(BFH-Urteile vom 12. Mai 2015 - VIII R 35/14, BStBl II 2015 S. 834, und vom 16. Juni 2020 - VIII R 7/17, BStBl II 2021 S. 9; BMF v. 19.05.2022 - IV C 1 - S 2252/19/10003: 009 BStBl 2022 I S. 742)

- 보유기간 동안 수령하는 소득은 독일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채권의 매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문 제2호의 개인(사적)자산의 양도로 보고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보유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채권에 한하여 관련 소득을 과세하고, 모든 개인 자산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 총액이 연간 1,000유로 미만인 경우 비과세함<sup>269)</sup>

〈표 III-2〉 독일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 토큰 단계별 소득세 처리

구분		보유 단계	매매 및 교환 단계
유틸리티 토큰 <sup>1)</sup>		-	기타소득
증권 토큰 <sup>2)</sup>	금융채권	경상자본소득 (자본자산소득)	자본이득(자본자산소득)
	현물혜택 청구권	기타소득	기타소득 <sup>3)</sup>

주: 1) 유틸리티 토큰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득한 유틸리티 토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개인자산 양도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2) 독일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목적상 증권으로 취급함

3) 보유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채권의 판매소득에 한해 과세하며 모든 개인자산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 총액이 연간 1,000유로 미만인 경우 비과세함

자료: 본문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함

-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구현한 유틸리티 토큰으로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sup>270)</sup>
- 유틸리티 토큰의 판매로 인한 소득은 사적 판매거래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독일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 유틸리티 토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득세 처리함

269) 독일 「소득세법(EStG)」 제23조 제3항 제5호

270) BFH-Urteil vom 6. Februar 2018, IX R 33/17, BStBl II S. 525

### 3) 과세제도 요약

- 가상화폐 또는 기타 토큰에 대한 독일 소득세 과세 처리는 주로 과세당국의 유권해석과 법원 판례를 토대로 하여 소득세 일반규정을 적용함
  - 현재와 다른 접근방식의 법원 판례를 생산하는 경우 소득세 처리가 달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지급 결제 수단인 가상화폐의 취득, 보유, 판매 및 교환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성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함
  - 소득 유형의 구분에 따른 조세효과는 주로 보유기간 장단과 과세 최저한도 유무에 있음
    - 개인자산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은 해당 토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함<sup>271)</sup>
    - 보유기간 1년 미만의 개인(사적)자산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은 연 1,000유로 미만,<sup>272)</sup> 기타 역무 제공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연 256유로 미만인 경우<sup>273)</sup> 비과세하는 과세 최저한도를 적용함
  - 개인(사적)자산의 양도 손실은 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 유형에서 발생한 소득과 통산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사업소득과 차이가 있음<sup>274)</sup>
  
- 증권토큰 관련 소득은 증권성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자본자산소득<sup>275)</sup>이나 기타 소득으로 과세함

271) 독일 「소득세법(EStG)」 제23조 제1항 제1문 제2호

272) 독일 「소득세법(EStG)」 제22조 제3호 제5문

273) 독일 「소득세법(EStG)」 제22조 제3호 제2문

274) 독일 「소득세법(EStG)」 제23조 제3항 제8문

275) 자본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상품 양도소득 등)을 규정하는 독일 「소득세법(EStG)」 제20조의 법적 성격은 다른 소득 유형에 대해 보충적 성격을 갖는 반면(독일 「소득세법」 제20조 제8항), 개인 간 양도거래를 규정하는 독일 「소득세법(EStG)」 제23조 제1항 제1문 제2항과 관련한 제22조 제2항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해당하여 우선 적용함(독일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소득 유형에 따른 조세효과의 차이는 적용세율과 보유기간의 차이에서 기인함
  - 자본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금융상품 양도소득 등은 일반적으로 25%의 단일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며,<sup>276)</sup>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14~45%의 누진소득세율을 적용함<sup>277)</sup>
  - 개인(사적)자산의 양도와 기타 의무 제공으로 인한 기타소득<sup>278)</sup>은 종합과세 방식의 누진소득세율을 적용하며 전자(양도)의 경우 자산의 보유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소득세를 비과세함<sup>279)</sup>
  - 독일은 모든 소득세에 대해 연대부가세 5.5%를 추가로 부과하는데 자본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연대부가세 전부를 적용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105,500유로(부부 합산 211,000유로)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연대부가세를 적용함<sup>280)</sup>
- 손익 통산의 측면에서도 조세효과의 차이를 예상함
  - 개인자산의 양도 손실은 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 유형에서 발생한 소득과 통산하지 않는 반면, 자본자산소득은 납세자가 종합과세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다른 소득 유형에서 발생한 손실과 자본이득을 통산할 수 있음<sup>281)</sup>

276) 자본자산소득의 과세표준 산정 시 1,000유로(부부 합산 2,000유로)의 저축자 일괄공제(Sparer-Pauschbetrag)를 적용함(독일 「소득세법」 제20조 제9항). 「독일 소득세법(EStG)」 제32d조 제1항 제1문; 같은 법 제32d조 제2항에서 정하는 특정 경우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277) 독일 「소득세법(EStG)」 제32d조 제2항. 누진세율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 11,604유로(부부 합산 23,208유로) 미만까지는 소득세 면세구간에 해당함  
<독일 소득세 세율(2024년 기준)>

소득세 과세표준(유로)		세율(%)
개별 신고	부부 합산 신고	
0~11,604 미만	0~23,208 미만	0
11,604 이상~66,760 미만	23,208 이상~133,520 미만	14~42
66,760 이상~277,825 미만	133,520 이상~555,650 미만	42
277,825 이상~	555,650 이상~	45

주: 14%에서 42%까지 기하적 누진세율을 적용함

자료: 독일 「소득세법(EStG)」 제32a조: Pwc, <https://taxsummaries.pwc.com/germany/individual/taxes-on-personal-income>, 검색일자: 2024. 7. 11.

278) 개인자산 양도소득은 연 1,000유로 미만, 기타 의무제공 관련 기타소득은 연 256유로 미만인 경우 비과세하는 과세 최저한도를 적용함

279) 독일 「소득세법(EStG)」 제32a조

280) Pwc, <https://taxsummaries.pwc.com/germany/individual/taxes-on-personal-income>, 검색일자: 2024. 7. 11.

## 4. 프랑스

### 가. 규제제도

#### 1) 개요

- 프랑스는 「통화 및 금융법(Code Monétaire et Financier, CMF)」을 통해 디지털 자산 규제 인프라를 운용함
  - 「통화 및 금융법(CMF)」은 2019년 5월 22일 PACTE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개정함
  - PACTE 법률은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새로 도입하고, 디지털자산 및 토큰 발행인,<sup>282)</sup> 디지털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법적 규제를 담음<sup>283)</sup><sup>284)</sup>
    - L54-10-1조: 디지털자산을 암호화폐와 토큰으로 구분하고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토큰은 디지털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 L54-10-2조: 디지털자산 서비스는 디지털자산을 법정통화로 구매·판매하는 서비스, 디지털자산 교환 서비스, 디지털자산 거래를 위한 플랫폼 운용 및 디지털자산 투자자문 등을 포함함
    - L54-10-3, 54-10-4조: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프랑스 금융당국에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신청을 검토함
    - L54-10-5조: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승인을 받은 자가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해 명시함<sup>285)</sup>

---

281) IBFD, "Tax Research Platform," 202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de\\_s\\_1.5.&refresh=1720673863551%23ita\\_de\\_s\\_1.9.2.](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de_s_1.5.&refresh=1720673863551%23ita_de_s_1.9.2.), 검색일자: 2024. 7. 11.

282) 토큰 발행인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토큰의 공개 권유(Initial Token Offering, ITO)를 허용함(Law on Business Growth and Transformation(PACTE Law nr. 2019-486))

283) 「통화 및 금융법」, Book V, Title IV, Chapter X.

284) PACTE 법은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A French point of view: from crypto assets to digital assets," <https://www.ibanet.org/article/f59c675e-e95e-4c74-bdc3-ea5a42e8ef9c>, 검색일자: 2024. 7. 9.

285)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프랑스 금융당국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업무배상책임보험 또

- EU DLTR의 도입을 위해 2023년 DDADUE의 제정을 통해 통화 및 금융법(CMF)을 개정함
- 프랑스는 2019년 「통화 및 금융법(CMF)」의 개정 이전 선제적으로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디지털자산 환경 구축에 힘썼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봄
  - 2014년 1월에 최초 암호화폐 구매자와 판매자 간 자금이체의 중개활동을 결제서비스 제공으로 보아 결제서비스업자 라이선스를 받도록 규제함<sup>286)</sup>
  - 2016년 4월 28일 프랑스 법률에 블록체인 개념을 최초 도입하여 클라우드렌딩(crowd-lending) 플랫폼에서 중소기업이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한 약속어음(minibons)<sup>287)</sup>의 발행·등록·이전하는 것을 허용함<sup>288)</sup>
    - 발행자는 어음 소지자를 기록 및 유지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분산원장의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법적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2016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24일까지 한시 적용함<sup>289)</sup>
  - 2016년 12월 자금세탁방지법(Anti Money Laundering legislation, AML)을 적용하는 대상자에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과 중개자를 포함함<sup>290)</sup>
  - 2017년 12월 8일 블록체인 법률명령<sup>291)</sup>(Ordonnance No. 2017-1674)을 통해 블록체인 또는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여 비상장주식과 채무증권을 발행·등록·거래할 수 있는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함<sup>292)</sup>

는 자체 자금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내부통제시스템, 복구가능한 IT 시스템을 갖춰야 함

286) ACPR BANQUEDE FRANCE, 2014. 1. 29.([https://acpr.banque-france.fr/sites/default/files/20140101\\_acpr\\_position\\_bitcoin.pdf](https://acpr.banque-france.fr/sites/default/files/20140101_acpr_position_bitcoin.pdf), 검색일자: 2024. 7. 16.)

287)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직접 발행할 수 있는 단기채권임

288) Ordinance No. 2016-520; Michael S Sackheim & Nathan A Howell, 2020, p. 121. 재인용  
289) 「통화 및 금융법」 L223-12조

290) Ordinance No. 2016-1635, Article 2; Michael S Sackheim & Nathan A Howell, 2020, p. 120. 재인용

291) 프랑스의 법은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Loi), 법률명령(Ordonnance), 시행령(Decree)으로 구성되며, Ordonnance(Ordinance)는 법률과 행정명령의 중간에 위치하는 법률명령으로 정부가 시정 방침의 수행을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는 법률명령임(자료: 세계법제정보센터, 2016)

292) Ordinance No. 2017-1764. Michael S Sackheim & Nathan A Howell, 2020, p. 122. 재인용

### III.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 및 회원국별 현황 79

- DLT을 통해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을 유럽 중앙예탁결제원 규정(CSDR)을 적용하지 않는 증권으로 제한함<sup>293)</sup>
- 분산원장에 기록되는 주식의 발행은 계좌에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봄<sup>294)</sup>
- 2018년 12월 24일 분산원장기술 요건을 규정한 시행령<sup>295)</sup>(Decree 2018-1226)을 발표함<sup>296)</sup>
  - 모든 분산원장기술은 등록과 등록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증권의 소유자 및 증권의 성격 및 증권발행 수를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구현되어야 한다고 규정함<sup>297)</sup>
  -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분산원장시스템에 등록된 기록을 외부 데이터 시스템에 주기적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함
  - 분산원장에 기록한 증권의 보유자는 반드시 거래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2) 금융법률상 규제

- 현행 「통화 및 금융법(CMF)」은 디지털자산을 암호화폐와 토큰으로 구분하고 규제를 달리함<sup>298)</sup>
  - 암호화폐는 '중앙은행 또는 공공당국이 발행·보증하지 않는 가치의 디지털표시로서, 법정통화에 연계되어 있지 않고 통화로서의 법적 지위도 가지지 않은 것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들에 의해 교환의 매개로서 받아들여지고 전자적으로 전송·저

293) CSDR을 적용하지 하지 않는 증권은 중앙증권예탁기관(central depository)에 기록이 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정규 거래소, 다자간거래시스템(MTF) 또는 조직화된 거래시설(Organized Trading Facility, OTF) 등 EU 금융지침(MiFID)에서 규정한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유통 가능한 채무증권(negotiable debt securities)을 말함(프랑스 금융당국(AMF), 2020, p. 22)

294) 「통화 및 금융법」 L211-3

295) Decret(Decree)는 행정부가 법률의 집행을 위해 행하는 명령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령과 유사함(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 336)

296) Michael S Sackheim & Nathan A Howell, 2020, p. 122

297) 「통화 및 금융법」 R211-9-7

298) 「통화 및 금융법」 제54-10-1조

장·교환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sup>299)</sup>

- 암호화폐의 정의는 EU의 자금세탁방지법(AMLD5)상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정의를 차용함<sup>300)</sup>

- 토큰은 '일체의 무형자산으로 분장원장기술을 활용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권리를 발행·등록·기록·매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함<sup>301)</sup>
- 다만 「통화 및 금융법(CMF)」 제211-1조에서 규정하는 금융상품(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의 성격을 가지는 토큰과 제223-1조에서 규정한 예금증서(bons de caisse)의 특성<sup>302)</sup>을 충족하는 토큰은 제외함<sup>303)</sup>
  - 프랑스 금융당국(AMF)은 MiFID II에 따른 금융증권의 특성이 있는 증권토큰은 디지털자산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투자설명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힘<sup>304)</sup>

□ 프랑스는 「통화 및 금융법(CMF)」에 EU DLTR의 내용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DDADUE, Law 2023-171)과 시행령(Decree 2023-421)을 2023년 3월 23일과 2023년 5월 31일에 각각 발표함<sup>305)</sup>

- 새로 입법한 법안을 통해 한시적으로 소규모로 발행한 일반주식 및 채권도 분산원장의 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함<sup>306)</sup>
- 분장원장기술(DLT)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그 유형과 한도에 제한이 있으며, DLT 시장 인프라가 다를 수 있는 규모 역시 제한이 있음<sup>307)</sup>

299) 「통화 및 금융법」 L54-10-1조 제2항

300) EU Directive 2018/843, Article 1, (2)(d)

301) 「통화 및 금융법」 L54-10-1조 제1항, L552-2조

302) 예금증서는 대출에 대한 대가로 발행되어 특정일자에 약속된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증서를 말함(통화 및 금융법(Code monétaire et financier) L223-1)

303) 「통화 및 금융법」 L54-10-1조 제1항, L552-2조

304) 프랑스 금융당국(AMF), 2020.

305) 이 법률은 2023년 3월 23일부터 3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EU 의회의 협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함

306) Law 2023/171(DDADUE), no. 7, 2023. 3. 9.

307) EU Directive 2022/858 Article 3, paragraph 1

### III.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 및 회원국별 현황 81

- 발행자의 시가총액 또는 잠정 시가총액이 5억유로 미만인 주식
  - 발행규모가 10억유로 미만인 채권(bonds), 다른 형태의 증권화된 채권 (securitised debt), 이와 관련된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s) 또는 단기금융상품(money market instruments)
  - 운용자산의 시장가치가 5억유로 미만인 집합투자펀드(units in collective investment undertakings)로 운용자산의 시장가치가 5억유로 미만인 것
- 발행 증권은 EU DLTR에서 규정하는 DLT 시장 인프라에서만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함<sup>308)</sup>
- 시행령(2023-421)에서는 EU DLT 시장 인프라를 통해 발행되는 주식은 무기명 주식의 형태임을 통화 및 금융법에 명시함<sup>309)</sup>
- 현재 프랑스에서 발행 및 유통되는 증권토큰은 중앙예탁기관 등록 여부 또는 EU DLT 인프라에서 발행 및 유통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sup>310)</sup>
- 2018년 7월부터 중앙예탁기관에 등록하지 않는 지분증권, 채무증권의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함
- 2023년 3월 23일부터 발행 규모의 제한을 받는 무기명 주식, 채권 등에 한해 한시적으로 EU DLT 시장 인프라에서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함

---

308) EU Directive 2022/858 Article 2, paragraph 5

309) 시행령(Decree 2023-421)

310) 「통화 및 금융법」 L211-7조

〈표 Ⅲ-3〉 프랑스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적 규제 연혁

일자	법률명 <sup>1)</sup>	개정내용
2014. 1.	-	암호화폐 구매자와 판매자 간 자금 이체 중개활동을 결제서비스로 규정하고, 결제서비스업자 라이선스를 도입함
2016. 4.	Ordonance No. 2016-520	블록체인 개념을 최초 입법함 클라우드렌딩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이 약속어음을 DLT를 통한 발행·유통을 허용함
2016. 12.	Ordonance No. 2016-1635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및 중개자를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함
2017. 12.	Ordonance No. 2017-1674	DLT를 활용하여 비상장주식과 채무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함
2018. 12.	Decree 2018-1226	분산원장 요건을 시행령을 통해 공개함
2019. 5.	PACTE 법률 (Law 2019-468)	토큰 공개 권유를 허용, 토큰 발행인의 정보 제공 의무, 자산 감시·감독 의무를 규정함
2023. 3.	DDADUE 법률 (Law 2023-171)	EU DLTR을 국내 입법하여, 소규모 주식 및 채권에 한해 DLT를 통한 EU DLT 시장인프라에서 발행·유통을 한시적으로 허용함
2023. 5.	Decree 2023-421	EU DLT 시장 인프라를 통해 발행되는 주식은 무기명 형태의 주식임을 명문화함

주: 1) 프랑스의 법은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Loi), 법률명령(Ordonnance), 시행령(Decree)으로 구성되며, Ordonnance는 법률명령으로 정부가 특정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입법하는 것이며, Decree는 시행령으로 행정부에 의해 정립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자료: 본문 내용 참조

## 나. 증권토큰 사례

□ 프랑스는 비상장주식과 채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토큰증권으로 발행한 사례가 있음<sup>311)</sup>

○ Societe Generale는 2019년 4월 23일 'Forge Project'의 일환으로 1백만달러 상당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Covered bonds)을 토큰형태로 이더리움 퍼블릭

311) 프랑스 금융당국(AMF), *ETAT DES LIEUX ET ANALYSE RELATIVE A L'APPLICATION DE LA REGLEMENTATION FINANCIERE AUX SECURITY TOKENS*, 2020. 3. Chapter 1.1

블록체인을 통해 발행함

- Nebulous는 2018년 4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토큰형태로 발행함
    - 이 토큰은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었고, 해당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의결권과 수익분배권을 가짐
  - Carthagea는 2019년 3월 요양원 건립비용을 조달하고자 1억유로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토큰증권을 발행함
    - 최소 10만유로를 투자하는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발행함
- 2019년 6월 유럽 최초로 고급 부동산(AnnA Villa Luxury Property)의 소유권을 토큰화한 증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발행함<sup>312)</sup>
- 이더리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Equisafe 투자 플랫폼에서 발행되었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블록체인에 기록함
  - 거래 절차는 다음과 같음<sup>313)</sup>
    - i) 공정증서(notarial deed)를 통해 부동산 가치를 6.5백만유로로 평가하고, 조합(joint stock company)형태의 SAPEB AnnA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이전함
    - ii) 블록체인 거래플랫폼인 Equisafe는 SAPEB AnnA를 발행인으로 등록하고, 회사의 지분을 100개로 토큰화하여 부동산 개발회사인 SAPEB Immobilier에 블록체인을 통해 이전함
    - iii) 발행된 토큰은 한 개당 10만 개의 토큰으로 쪼개어 제2차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어 최소 6.52유로의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게 됨
  - 발행된 토큰 증권은 통화 및 금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sup>314)</sup>으로 토큰증권의 판매 및 교환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배당권, 투표권도 포함됨

312) OECD, "The Tokenisation of Assets and Potential implications for Financial Market," 2020. p. 51

313) Forbes, "Europe Completes Its First Ever Blockchain Real Estate Sale for €6.5 Million," <https://www.forbes.com/sites/kamranrosen/2019/06/30/europe-completes-its-first-ever-blockchain-real-estate-sale-for-65-million/>, 검색일자: 2024. 7. 31.

314) 「통화 및 금융법」 제L.211-1조 제II항에서 규정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기구 펀드를 말함

## 다. 과세제도

### 1) 부가가치세

- 프랑스 세법에서는 디지털자산의 VAT 과세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례와 프랑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디지털자산에 대한 VAT 과세 여부를 결정함
    - 2015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전통 통화나 기타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서 제외해야 함<sup>315)</sup>
    - 2018년 프랑스 대법원 판례는 암호화폐를 세법상 무형자산으로 봄<sup>316)</sup>
- 디지털자산을 법정 화폐와 교환하거나 디지털자산 간 교환하는 경우 VAT를 면세 함<sup>317)</sup>
  - 다만 암호화폐를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거나 암호화폐 채굴활동으로 수익을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VAT를 과세함
- 프랑스 세무당국은 2024년 2월 14일 대체불가능토큰(NFT)에 대한 VAT 규정과 관련한 시행규칙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내용에 따르면 NFT가 표상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VAT 과세를 결정함<sup>318)</sup>

315) Kirill Kuzhelko, 2022.

316) CE, arrêts du 26 avril 2018, n° 417809, 418030, 418031, 418032, 418033; 프랑스 과세 당국, “02/09/2019 : RPPM - Création d’un régime fiscal spécifique applicable aux cessions d’actifs numériques réalisées à titre occasionnel,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par les particuliers (loi n° 2018-1317 du 28 décembre 2018 de finances 2019, art. 41),” <https://bofip.impots.gouv.fr/bofip/11978-PGP.html/identifiant=ACTU-2019-00174>, 검색일자: 2024. 9. 23.

317) IBFD, “France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3.7 Virtual Assets (Last Reviewed: 31 January 202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fr\\_s\\_3.&refresh=1722493589899%23evat\\_fr\\_s\\_3.7.](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fr_s_3.&refresh=1722493589899%23evat_fr_s_3.7.), 검색일자: 2024. 8. 1.

318) KPMG, “France: Tax authority guidance on VAT treatment of non-fungible tokens,” <https://kpmg.com/us/en/home/insights/2024/02/tnf-france-guidance-vat-treatment->

- NFT는 분할 및 대체가 불가능하고 통화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토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NFT 거래는 금융거래로 보지 않음에 따라 VAT를 과세함
- 다만 NFT가 미술품 또는 지적재산을 표상하는 경우 경감세율을 적용함
  - 유형의 미술품의 NFT와 관련된 디지털카드의 제작 및 판매 시 기본자산이 미술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 5.5%의 VAT 경감세율을 적용함
  - NFT와 관련된 디지털 그래픽의 생성 및 판매 시 기본자산이 프랑스 지식재산법상 지식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 10%의 VAT 경감세율을 적용함

## 2) 소득세

- 프랑스는 「조세일반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제150 VH bis조를 도입하여 디지털자산 관련 소득을 과세함
- 소득세 과세대상 디지털자산은 「통화 및 금융법」에서 규정하는 디지털자산(les actifs numériques)이며 토큰과 암호화폐를 포함함
  - 세법에 디지털자산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통화 및 금융법」의 정의를 차용함
  - 디지털자산은 토큰과 암호화폐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금융상품<sup>319)</sup>의 성격을 갖는 토큰, 통화와 연계되는 스테이블 코인, 대체불가능토큰(NFT)은 디지털자산으로 보지 않음<sup>320)</sup>
- 본문에서는 디지털자산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토큰을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제도를 기술함

---

nfts.html, 검색일자: 2024. 7. 31.

319) 금융상품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현금성양도증서(cash certificate)를 말함  
320) Waltio, 2024, p. 15

## 가) 디지털자산

## (1) 취득

- 채굴활동으로 암호화폐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비상업소득(Bénéfices non commerciaux, BNC)<sup>321)</sup>으로 과세하고<sup>322)</sup> 채굴 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상업활동으로 보아 상업소득(Bénéfices industriels et commerciaux, BIC)으로 과세함<sup>323)</sup>
  - 채굴로 취득한 암호화폐 가격이 전자기기 비용 등 채굴 소요 비용보다 큰 경우 소득이 발생한다고 봄<sup>324)</sup>
  - 비상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며, 연간 매출액이 77,700유로 미만인 경우 연간 매출액의 34%만큼 필요경비 공제를 허용함<sup>325)</sup>
- 하드포크, 에어드롭, 렌딩과 스테이킹 거래로 취득하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시적인 과세처리 규정은 정해진 바 없고, 향후 해당 거래로 취득한 디지털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함<sup>326)</sup>

321) 비상업소득은 우리나라의 기타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다른 소득에서 규정하지 않는 소득을 모두 비상업소득에 포함하며, 일시적, 우발적인 성격을 가진 소득을 말함(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 357)

322) 프랑스 재무부, <https://www.economie.gouv.fr/cedef/regime-fiscal-cryptomonnaies>, 검색일자: 2024. 8. 14.

323) Blockpit, <https://www.blockpit.io/tax-guides/crypto-tax-france>, 2024.08.01., 검색일자: 2024. 8. 19.

324) Cointelegraph, "Taxation on cryptocurrency mining activity in France," Question 2, 2022. 5. 2., <https://fr.cointelegraph.com/explained/taxation-on-cryptocurrency-mining-activities-in-france>, 검색일자: 2024. 8. 13.

325) 프랑스 기업청,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vosdroits/F23267?lang=en>, 검색일자: 2014. 8. 14.

326) IBFD, *Taxing Crypto-Asset Transactions - Chapter 3: Review of the Current State of the Taxation of Crypto-Assets - Books*, Table 3.1., 2022. 6. 1.; Blockpit, <https://www.blockpit.io/tax-guides/crypto-tax-france>, 검색일자: 2024. 8. 19.

(2) 매매 및 교환

- 프랑스는 2019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자본이득(Plus-values)으로 과세함<sup>327)</sup>
  - 디지털자산과 법정 화폐 간 교환, 재화 및 서비스와 디지털자산의 교환은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만 디지털자산 간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과세 거래로 간주하지 않음
  - 세율은 소득세 12.8%와 사회보장세 17.2%를 합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함
  - 양도차익이 연간 305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함<sup>328)</sup>
  - 2023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는 디지털자산 양도소득의 종합소득 합산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종합소득세율은 면세점인 11,294유로를 초과하는 과세표준구간에 대해 11~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함<sup>329)</sup>
    - 디지털자산의 양도차익은 다른 소득과의 손실상계를 허용하지 않음<sup>330)</sup>
  
- 전문 투자자와 같은 조건으로 디지털자산 거래를 하는 자는 비상업소득(BNC)으로 분류하여 11~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합산과세함<sup>331)</sup>
  - 2022년까지는 전문적으로 디지털자산 거래를 하는 납세자는 상업소득(BIC)으로 과세하였음<sup>332)</sup>
  - 2023년부터 전문가와 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수행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전문적인 활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상업소득(BNC)으로 과세함<sup>333)</sup>

327) 프랑스 「조세일반법(CGI)」 150 VH bis

328) 프랑스 「조세일반법(CGI)」 154 VH bis II, B

329) 프랑스 행정부(Republique Francais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419?lang=en>, 검색일자: 2024. 8. 14.

330) 프랑스 「조세일반법(CGI)」 154 VH bis IV, B

33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p. 379~385; IBFD, *France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Individual Income Tax*, sec 1.7.3. (Last Reviewed: 1 July 2024); <https://www.economie.gouv.fr/cedef/regime-fiscal-cryptomonnaies>, 검색일자: 2024. 8. 21.

332) 「조세일반법(CGI)」 제34조

333) 「조세일반법(CGI)」 제92조. 2023년 법 개정 이전에는 상업소득(BIC)으로 과세함(Le guide de la

- 납세자의 전문투자자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은 없으나 거래량, 거래금액, 투자기간, 노하우, 정교화된 도구 등으로 판단함<sup>334)</sup>
- 예시를 들자면, 투자 펀드 업종에 종사하는 투자자는 투자 전문가로 분류된 사례가 있음
- 비상업소득의 과세대상 소득은 현금주의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결손금 및 각종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연간 VAT를 제외한 매출액이 77,700유로 미만인 경우 총소득의 34%의 공제를 허용함<sup>335)</sup>
  - 비상업소득은 다른 소득에서 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며, 미공제금액은 6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됨

#### 나) 증권토큰

- 증권토큰의 과세를 위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sup>336)</sup> 금융상품의 성격을 갖는 경우 금융상품의 과세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임

#### (1) 분배

- 증권토큰에서 분배받는 소득은 증권토큰이 채무증권인지 지분증권인지 여부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 부동산 토큰이 표시하는 권리를 자산의 미래 수익에 대한 청구권 계약으로 보아 채무증권의 범주에 속한다는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 공개된 바 있어<sup>337)</sup> 이자소득

---

fiscalité des actifs numériques 2024. p. 13)

334) Waltio, *Le guide de la fiscalité des actifs numériques*, 2024. pp. 13~14

335) 프랑스 기업청,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vosdroits/F32105>, 검색일자: 2024. 8. 21.

336) Jowi, "En quoi consiste la tokenisation de l'immobilier ?(What is the tokenization of real estate?)," <https://www.jowi.fr/tokenisation-immobilier/>, 검색일자: 2024. 8. 13.

337) 프랑스 금융당국(AMF), "Activity of future revenue sharing platforms (royalties): legal

으로 과세할 수 있음

- 그러나 부동산 토큰화는 부동산 공유 법인(Société de Libre Partenariat, SLP)의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형태로도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증권토큰은 지분증권으로 분류하여<sup>338)</sup>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자본자산소득에 포함하여 3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납세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sup>339)</sup>
  - 분리과세 시 적용세율 30%는 소득세율 12.8%에 사회보장세율 17.2%를 합산한 세율임
  - 종합과세 시 면세점인 11,294유로를 초과하는 과세표준구간에 대해 11~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함<sup>340)</sup>

(2) 양도

- 증권토큰 양도를 증권의 양도로 보아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며, 3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거나 납세자가 선택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할 수 있음<sup>341)</sup>
  - 자본이득 과세대상 증권은 유통이 가능한 증권으로 정의하고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으로 나누고 있음<sup>342)</sup>

---

qualifications and applicable regulations,” <https://www.amf-france.org/fr/actualites-publications/actualites/activite-des-plateformes-de-partage-de-revenus-futurs-royalties-qualifications-juridiques-et>, 검색일자: 2024. 8. 13.

338) AGN Avocats, <https://www.agn-avocats.fr/blog/fiscalite/quels-moyens-juridiques-pour-tokeniser-en-france-des-actifs-par-blockchain/>, 2023. 3. 20., 검색일자: 2024. 8. 15.

339) IBFD, *France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July 2024)*, section. 1.10.3.3.

340) 프랑스 행정부(Republique Francais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419?lang=en>, 검색일자: 2024. 7. 11.

341) IBFD, *France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July 2024)*, section 1.7.2.2. Private portfolio.

342) 프랑스 행정부,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glossaire/R1863>, 검색일자: 2024. 8. 23.

- 양도소득세율 30%는 소득세 12.8%와 사회보장세 17.2%를 합산한 세율임
- 납세자가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11~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함<sup>343)</sup>
  - 종합소득 과세표준 11,294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음
  -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허용함
    - 양도차익의 50% 공제: 1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65% 공제: 4년 이상 8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85% 공제: 8년 이상 보유
  -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동일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미 공제액은 향후 10년간 양도차익에서 50만유로를 한도로 공제가 허용됨

### (3) 과세제도 요약

- 프랑스 「조세일반법」은 디지털자산 과세를 위한 과세 규정을 별도 신설하였으며, 금융상품이 아닌 토큰과 암호화폐 양도 시 디지털자산 과세규정에 따라 과세함
  - 암호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전문적 활동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비상업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양도소득은 30%(사회보장기금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하지만,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는 종합소득 합산 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비상업소득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 합산과세함
- 프랑스는 증권토큰의 과세를 위한 별도 규정이 없지만, 금융상품으로 보는 증권토큰은 「조세일반법」상 금융상품 관련 과세 규정이 적용할 것을 보임
  - 토큰증권의 분배소득인 이자, 배당소득은 모두 자본자산소득으로 과세하며, 토큰증권 양도 시 자본이득세로 과세할 수 있음

343) 프랑스 행정부(Republique Francais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419?lang=en>, 검색일자: 2024. 7. 11.

Ⅲ.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 및 회원국별 현황 91

- 자본자산소득, 자본이득 모두 3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납세자가 선택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할 수 있음
  
- 증권의 양도소득과 디지털자산의 양도소득은 세율과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은 동일하나 면세점, 양도차손 이월공제 규정에서 차이가 존재함
  - 증권과 디지털자산 양도 시 30%(소득세율 12.8%, 사회보장세 17.2%)의 세율로 과세하며, 종합과세 선택 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1~45%의 세율로 과세함
  - 증권의 양도소득 종합과세 시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만 디지털자산의 경우 그러하지 않음
  - 증권의 양도소득 종합과세 선택 시 11,294유로이며, 디지털자산 양도소득의 면세점은 305유로임
  - 양도차손 발생 시 각 소득에서만 손익통산이 허용되며, 증권 양도손실의 경우 미공제금액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한 반면 디지털자산의 양도손실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표 III-4〉 프랑스의 디지털자산과 토큰증권의 과세제도

구분	디지털자산	증권토큰
취득 시 과세	채굴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비사업소득(기타소득) 과세	-
소득분배 시 과세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양도 시 과세	자본이득 분리과세/ 비사업소득(기타소득) 종합소득 과세 <sup>1)</sup>	자본이득 분리과세
자본이득 종합소득 합산과세	납세자 선택 시 종합과세	납세자 선택 시 종합과세
적용세율 <sup>2)</sup>	30% (종합과세 선택 시 11~45%)	30% (종합과세 선택 시 11~45%)
보유기간 특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면세점	분리과세 시: 305유로 종합소득 과세: 11,294유로	분리과세 시: 0유로 종합소득 과세: 11,294유로
손익통산	동일 연도의 동일 소득 내에서만 통산 가능	동일 연도의 동일 소득 내에서만 통산 가능
이월공제	이월공제 허용 안함	이월공제 10년 허용

주: 1) 거래량,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전문 투자자 활동과 유사하다고 보는 경우 비사업소득(기타 소득)으로 과세함

2) 적용세율 30%는 소득세 12.8%와 사회보장세 17.2%를 합산함

자료: 본문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함

## IV. 국제 비교 및 시사점

### 1. 규제제도

- EU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는 이분화된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토큰은 MiFID II 및 DLTR을 적용하고, 그 외 암호자산은 MiCAR를 통해 규제함
- 2024년 현재 EU 회원국 대부분은 EU 제5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AML/CFT) 준칙을 토대로 암호자산 관련 규제를 운용함
  - 대부분 회원국은 2024년 12월 30일 MiCAR의 시행에 맞추어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으로 보임
- 독일과 프랑스는 EU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의 접근방식을 선제적으로 수용하여 자국의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운용하며, 이하 본문은 한국, 독일, 프랑스의 제도를 중심으로 국제 비교함
- (이분화 접근방식) 한국, 독일, 프랑스는 EU와 같이 이분화된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운용(예정)함
  - 한국은 2017년 9월 모든 형태의 ICO 전면 금지 이후<sup>344)</sup>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가

344) 금융위원회는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 수신 등 사기 위험이 증가하고,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 과열 및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기술 및 용어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 기반 투자를 전면 금지함(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개최」, 2017. 9. 29.)

상자산에 대한 이원적 규제를 2022년에 발표하였지만, 2024년 현재까지 디지털 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법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지 못함

-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금법」이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 이전까지 가상자산 규제 인프라의 주요 기능을 수행함
-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와 이용자의 자산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함
- 조각투자상품인 토큰증권에 대해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해 한시적 특례 조치를 취함

○ 독일은 「은행업법」, 「증권법」, 「투자법」의 개정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마련하고, 증권성을 갖는 토큰과 그 외 토큰을 구분하여 이원적으로 규제함

- 「은행업법」은 암호자산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EU의 AML/CFT 준칙 내용을 반영하여 암호자산 중 교환 및 지불 기능이 있는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수탁업을 규제함
- 증권성을 띠는 증권토큰은 「증권투자설명서법(WpPG)」과 「증권거래법(WpHG)」 등 자본시장법률을 적용함

○ 프랑스는 2019년과 2023년 「통화 및 금융법(CMF)」의 개정을 통해 이분화된 디지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 및 운용함

- 2019년 PACTE 법률의 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 전반을 규율하는 법 규정을 도입하고, 2023년 EU DLTR의 국내 입법을 통해 DLT 기반 증권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

□ (증권성) 디지털자산 규제는 한국, 독일, 프랑스 모두 금융감독기관이 주관하지만,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유무에 따라 자본시장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투자)상품과 그렇지 않는 가상자산(또는 가상화폐, 암호화폐)로 구분하여 규제함<sup>345)</sup>

○ 독일, 프랑스의 경우 증권성은 EU 법률과 MiFID II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금융 법률에 따라 판정함

345) 증권성 판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2. 나. 토큰증권' 편에서 후술함

- 한국은 조각투자상품에 대해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증권성을 판정하지만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바는 없음
- (DLT 기반 증권) 독일과 프랑스는 DLT 기반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하면서 DLT 기반 증권의 제3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미러링 방식의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 한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하는 미러링 방식을 통해 권리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음
  - 독일은 「전자증권법」의 제정을 통해 DLT 기반 증권을 민법상 물건(동산)으로 의제하고, 실물자산과의 연동 없이 DLT 기반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함
  - 프랑스는 2016년 특례를 통해 분산원장 방식의 증권 등록을 최초 허용한 후 DLT 기반 증권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적 체계를 구축함
- (DLT 기반 증권 유형) DLT 기반 증권을 토큰화 증권(Tokenization securities)과 네이티브 토큰(native token) 혹은 증권 토큰으로 구분할 때 한국은 전자만 가능하고, 프랑스와 독일은 후자가 지배적임
  - 한국은 「전자증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각투자상품 형태의 DLT 기반 증권(토큰화 증권)이 주를 이루고 토큰 증권 그 자체가 제삼자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증권에 해당하지 않음
  - 독일, 프랑스는 「전자증권법」 또는 「민법」 등의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 외부에 실물 자산의 존재 없이 기본적으로 분산원장상에서만 발행 및 보관하는 네이티브 증권이 지배적인 것으로 관찰됨
  - 독일, 프랑스의 DLT 기반 증권은 조각투자 형태의 증권도 일부 존재하지만, 금융투자상품으로 취급하는 대부분 DLT 기반 증권은 네이티브 토큰임
    - 독일의 DLT 기반 증권 유형은 무기명 사채 또는 무기명 담보부사채의 일종인 저당증권, 계약형 펀드의 무기명 수익증권에 한함
    - 프랑스의 DLT 기반 증권 유형은 2018년부터 적용하는 블록체인 법률명령에

다른 비상장주식과 채무증권이 있고, 2023년 개정 법률에 따라 특정 무기명 주식과 채권이 있음

## 2. 과세제도

### 가. 가상자산<sup>346)</sup>

- 한국, 프랑스는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위한 별도 법 규정을 두고 있고, 독일은 세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함<sup>347)</sup>
  - 한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서 가상자산 대여·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함
    -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소득 관련 소득을 과세할 예정이지만, 2024년 세법 개정안에 2027년 1월 1일까지 추가적인 과세 유예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프랑스는 「조세 및 일반법」에 디지털자산 양도 시 과세하는 규정(제150 VH bis 조)을 신설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함
  - 독일은 2022년 발표한 과세당국의 유권해석과 2023년 대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함
-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의 정의를 내릴 때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다른 법의 정의를 차용하지만 독일은 금융규제기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소득세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
  - 한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346) 우리나라는 세법에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디지털자산(토큰, 암호화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독일은 암호자산(가상화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본문은 우리나라의 제도와 국제 비교를 위해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총칭하고, 가상자산에는 금융상품의 특징을 가지는 토큰은 제외함

347)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이지만, 2024년 세법개정안 통과 시 과세 유예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로 정의함

- 다만 유틸리티 토큰, 전자화폐, 게임물 이용 결과물,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 발행 전자화폐,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 전자적 형태의 예금, 수집 목적의 대체불가한 전자적 증표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함<sup>348)</sup>

○ 독일은 「은행업법」<sup>349)</sup>에 따른 법적 정의와 금융당국의 분류(통화 및 결제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토큰)를 토대로 하되 소득세 과세처리는 자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접근방식을 취함

- 「증권거래법」상 증권성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 전자화폐, 결제 거래에만 사용하는 금전적 가치(전자상품권, 전자토큰)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 프랑스는 「통화 및 금융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정의<sup>350)</sup>를 차용하여 소득세 과세 처리함

- 금융상품의 성격을 갖는 토큰, 스테이블 코인, NFT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34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349) 독일 「은행업법」은 EU의 자금세탁방지법(AMLD5)상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정의를 차용함

350) 프랑스 「통화 및 금융법」은 EU의 자금세탁방지법(AMLD5)상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정의를 차용함

〈표 IV-1〉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 규정

구분	한국	독일	프랑스
과세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2022년 과세당국의 유권해석과 법원 판례	「조세일반법」 제150VH bis조
세법상 가상자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가상자산	금융당국의 접근방식을 토대로 개별적 판단 <sup>2)</sup>	「통화 및 금융법」상 가상자산
제외	유틸리티 토큰, 전자화폐, 게임물 이용 결과물,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 발행 전자화폐,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 전자적 형태의 예금, 수집 목적의 대체불가한 전자적 증표 등 <sup>1)</sup>	독일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성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 전자화폐, 결제 거래에만 사용하는 금전적 가치(전자상품권, 전자토큰)	금융상품의 성격을 갖는 토큰, 스테이블 코인, NFT
과세 시행	미시행 <sup>3)</sup>	시행	시행

주: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 독일은 독일 「은행업법」에서 암호자산의 법적 정의를 내리지만 암호자산 분류에 대해 증권법과 투자법에서 각각 달리 규정함

3)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이지만, 2024년 세법개정안이 통과하는 경우 과세 유예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자료: 본문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함

- (취득 및 보유 단계) 독일은 한국과 프랑스와 달리 가상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 당국의 유권해석을 통해 과세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힘
  - 한국은 가상자산의 대여로 인한 소득을 과세하지만 그 범주에 채굴이나 렌딩 등으로 취득하는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포함하는 지는 명확하지 않음
    - 채굴이나 스테이킹과 관련한 활동이 사업성을 띠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독일은 사업성 여부에 따라 채굴, 렌딩, 에어드롭 등을 통해 취득하는 가상자산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하드포크로 인해 취득하는 가상자산은 처분 시 과세함

- 프랑스는 가상자산의 양도 및 교환으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명시하지만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로 인해 취득하는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 처리는 불분명함
  - 채굴 활동으로 취득하는 가상자산은 사업성 여부에 따라 비상업소득(기타소득) 과 상업소득으로 과세함
- 취득 및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는 종합소득 합산과세의 방식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분리과세 방식의 단일세율 20%를 적용함
  - 독일은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기타 역무의 제공으로 보는 가상자산 기타소득에 대해 연 256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함

〈표 IV-2〉 조사국의 가상자산 과세 처리(취득·보유 단계)

구분	한국	독일		프랑스	
		개인용 자산	사업용 자산	개인투자자	사업자
채굴	- <sup>1)</sup>	기타소득	사업소득	비상업소득 (기타소득)	상업소득
스테이킹	- <sup>1)</sup>			- <sup>4)</sup>	
렌딩	- <sup>2)</sup>			- <sup>4)</sup>	
하드포크	- <sup>2)</sup>	처분 시 과세		- <sup>4)</sup>	
에어드롭	- <sup>2)</sup>	기타소득 <sup>3)</sup>	사업소득	- <sup>4)</sup>	
과세방식	분리과세	종합소득 합산과세		종합소득 합산과세	
적용세율	20%	14~42%		11~45%	
면세기준	-	연 256유로	-	-	

주: 1) 우리나라는 채굴이나 스테이킹으로 취득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명시적인 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활동이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우리나라는 렌딩, 하드포크와 에어드롭에 대해 명시적인 법 규정을 두지 않음  
 3) 독일은 에어드롭을 기타 역무 제공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만, 가상화폐와 기타 역무 제공 간 경제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  
 4) 프랑스는 스테이킹, 렌딩, 하드포크, 에어드롭으로 취득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처리는 불분명함

자료: 본문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함

- (처분 단계의 소득 유형) 한국과 독일은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만, 프랑스는 가상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함
- 다만 프랑스와 독일은 가상자산의 매매 등을 전문적 또는 사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상업소득(프랑스) 또는 사업소득(독일)으로 취급함
- 프랑스는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등 활동이 전문적 활동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비상업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독일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처분의 범위에는 i) 가상자산과 법정화폐 간 교환 ii) 가상자산 간 교환 iii)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가상자산의 지급을 들 수 있는데 한국, 독일, 프랑스의 규정은 차이가 있음
- 한국은 가상자산과 법정화폐의 교환과 가상자산 간 교환을 처분의 범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만,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가상자산은 그러하지 않음<sup>351)</sup>
  - 독일은 가상화폐와 법정화폐와의 교환, 다른 가상화폐와의 교환,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의 지급을 처분으로 봄
  - 프랑스는 독일과 달리 디지털자산 간 교환은 처분의 범주에서 제외함
- (처분 단계의 적용세율) 한국과 프랑스는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한국)과 양도소득(프랑스)으로 분리과세하고, 독일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 합산과세함
- 한국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함
-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허용함
- 독일은 1년 미만 보유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14~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함

35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에 대한 기존 과세실무와 사법상 해석을 통해 처분으로 포섭될 것으로 보임

-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이 연 1,000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함
- 사업용 자산인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14~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함
- 프랑스는 보유기관에 관계없이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12.8%(사회보장세 17.2% 별도)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 선택 시 11~45%의 세율을 적용함
  - 개인 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양도소득이 연 305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함
  - 전문 투자자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비상업소득(기타소득)으로 11~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함

〈표 IV-3〉 조사국의 가상자산 과세 처리(처분 단계)

구분	한국	독일		프랑스	
		개인용 자산	사업용 자산	개인투자자	전문투자자 <sup>1)</sup>
소득 구분	기타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비상업소득(기타소득)
과세방식	분리과세	종합소득 합산과세	종합소득 합산과세	분리과세 <sup>3)</sup>	종합소득 합산과세
적용세율	20%	14~42%	14~42%	12.8% (사회보장세 17.2% 별도)	11~45%
보유기간 특례	-	1년 이상 비과세	-	-	-
면세점/기본공제	연 250만원	연 1,000유로	-	연 305유로	-
처분의 범주	· 가상자산과 법정화폐 교환 ·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sup>2)</sup>	· 가상화폐와 법정화폐와의 교환 · 다른 가상화폐와의 교환 ·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의 지급		· 디지털자산과 법정화폐와의 교환 ·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대가로 디지털자산의 지급	

주: 1) 프랑스는 전문투자자 여부는 거래량, 거래빈도, 거래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2) 한국은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경우를 처분의 범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에 대한 기존 과세실무와 사법상 해석을 통해 처분으로 포섭될 것으로 보임

3) 프랑스 개인 납세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선택할 수 있음

자료: 본문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함

- (손익통산) 한국과 프랑스는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 시 동일 소득 내에서만 손익통산을 허용하며, 별도의 이월공제 규정은 없음
  - 독일의 유권해석에서 가상자산 손익통산과 관련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손익통산 여부는 불명확함
  - 프랑스는 전문투자자로 간주하는 경우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인 비상업소득으로 분류하여 해당 소득 내에서 손익통산 및 6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함

#### 나. 토큰증권<sup>352)</sup>

- 조사대상국 모두 증권토큰 과세를 위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증권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세법상 증권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함
  - 한국, 독일, 프랑스는 세무 목적상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정을 금융법률에 따르며 증권성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의 범주에서 제외하여 금융(투자)상품 과세규정을 적용함
  
- (증권성) 독일과 프랑스는 EU MiFID II 규정<sup>353)</sup>을 반영하여 과세 목적상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정하며, 한국은 조각투자상품에 한해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따라 증권성을 판단함
  - 한국은 조각투자상품의 증권성 유무를 다루면서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면서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제시한 바 있음
    - 금융투자상품의 구성 요소인 i) 이익 취득 및 손실 회피의 목적(금융투자 목적)

352)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여 토큰형태로 발행한 것을 '토큰증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는 증권토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혼용함

353) EU의 MiFID II는 금융상품을 Annex I 섹션 C 규정에서 열거하는 양도성 증권을 포함한 11개 금융상품으로 정의하는데, 양도 가능성, 자본시장에서의 거래를 보장하는 협상 가능성과 표준화 등 형식적 기준의 적용을 전제함

- ii)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의 지급 iii) 계약상의 권리 iv) 원본 손실위험(투자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서<sup>354)</sup>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6가지 증권의 유형에 속하는 경우 증권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은 i) 공동사업의 형태 ii) 투자자의 금전 등 투자 iii) 사업자가 주로 사업 수행 iv)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 v) 투자자의 이익 획득 목적 등으로 미국 하위(howey) 기준을 원용함
  - 독일은 양도 가능성, 금융시장에서의 유통 가능성,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등 전통적 증권상 권리의 구현 등을 증권성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며, 증권성을 충족하는 암호자산을 자본시장법률의 금융상품으로 처리함
  - 프랑스는 MiFID II에서 규정하는 금융증권의 특성이 있는 증권토큰은 디지털자산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자본시장법률을 적용함
- 전통적인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토큰증권의 분배 및 양도소득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는 모두 자본(자산)소득으로 과세하여 분리과세하는 반면 한국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 프랑스는 증권토큰의 분배는 자본(자산)소득으로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며, 두 소득 모두 12.8%(사회보장세 17.2% 별도)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나 납세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할 수 있음
  - 독일은 증권토큰의 유형을 전통적 금융채권과 현물혜택 청구권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분배 및 양도로 인한 소득은 자본(자산)소득으로 25%의 분리과세하고, 후자의 분배 및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14~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함
  - 한국은 과세당국의 유권해석과 세법 해석을 통해 현재 신탁수익증권 관련 소득은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계약증권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

354) 정순섭, 2008, pp. 284~287; 김건석·정순섭, 2023, pp. 32~41

- 배당소득의 경우 14%의 소득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종합소득 합산과세하는 경우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20%, 25%의 소득세율을 적용함
- 다만 2024년 세법개정안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행 집합투자기구 과세제도와 동일하게 과세할 예정임

〈표 IV-4〉 주요국의 토큰증권 과세제도

구분		한국		독일		프랑스
세법상 토큰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금융채권	현물혜택 청구권 <sup>4)</sup>	금융증권
소득 분류	분배 소득	배당소득	- <sup>2)</sup>	자본(자산) 소득	기타소득	자본(자산) 소득 <sup>3)</sup>
	양도 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sup>1)</sup>	- <sup>2)</sup>	자본(자산) 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sup>3)</sup>
세율		14% <sup>5)</sup> 20%, 25%	14% <sup>5)</sup>	25%	14~45%	12.8% 사회보장세 17.2% 별도)

주: 1) 유권해석은 배당소득으로 취급한 바 있으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에 대해 명시적 법 규정은 두지 않고 2024년 세법개정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것으로 공개함

3) 프랑스는 자본(자산)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지만 적용세율이나 분리과세방식은 동일함

4) 독일은 자본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배당, 양도소득을 자본(자산)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증권토큰이 표상하는 권리가 현물혜택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 재산의 양도로 보고 기타 소득으로 과세 처리함

5) 배당소득에 적용하는 세율 14%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며, 종합소득 합산과세하는 경우 최고 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0%, 25%를 적용함

자료: 본문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함

### 3. 시사점

#### 가. 경제적 실질에 따른 이분화된 접근방식의 확립

- 조사국은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토큰과 그 외 가상자산의 규제와 과세에 관해 이분법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관찰되며, 이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규제 및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조사국은 가상자산을 EU MiFID II 또는 자본시장법률에 따른 증권(또는 금융상품)으로 볼 때 가상자산의 범주에서 제외하여 금융상품 과세제도를 적용함
  - 가상자산이 표시하는 권리나 기능에 따라 그 유형으로 분류할 때, 증권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범주에서 제외하여 자본시장법률을 적용함
    - EU DLTR 및 자본시장법률의 면제 규정에 의해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는 DLT 기반의 무기명 채권(독일, 프랑스)이나 중소기업 비상장주식(프랑스) 외에도 증권성을 띠는 토큰은 해당 국가의 자본시장법률을 적용함
  - 조사국은 양도 가능성, 협상 가능성, 표준화라는 EU 법률의 형식적인 기준을 토대로 전통적 증권과 유사한 경우 증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함
    - 독일은 양도 가능성, 금융시장에서의 유통 가능성, 전통적 증권과 유사한 권리 구현 등의 요건을 토대로 증권성을 판단하고, 프랑스는 MiFID II의 금융증권 특성이 있는 토큰으로 통화 및 금융법에 따른 전통적 금융상품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금융상품으로 분류함
    -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에 대한 증권성 판단은 주로 미국 SEC 중심으로 재량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MiCAR의 적용을 받는 가상자산과 MiFID II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에 대해 형식적 기준을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등을 금융상품으로 볼 여지는 매우 낮음
  - 증권성 요건을 충족하여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증권토큰을 가상자산 세제가

아닌 금융상품 과세제도를 적용함

- 독일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증권토큰은 자본(자산)소득으로 분류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세제 간 차이를 두고 있음
- 프랑스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자본(자산)소득으로 분리과세하지만 다른 자본(자산)소득과 손익통산할 수 없고,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증권토큰의 양도손익은 다른 자본소득과의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허용함

- 한국은 디지털자산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하여 이원적 규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과세 인프라 역시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는 것이 조세 중립성 차원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ICO 발행 자체를 금지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조각투자상품(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 외 금융상품으로 간주한 가상자산(토큰)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이 요구되지 않았음
  -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완비하고 과세 정상화에 대비하여 증권성을 띄는 가상자산에 대한 판단기준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증권성 판단에 따른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증권성 요건을 충족한 토큰의 경우 가상자산 세제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라고 정의하고 전자증권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거래나 이전하는 가상자산은 증권성 유무와 무관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
  - 과세 목적상 증권성 요건을 새로이 마련하거나 자본시장법률상 증권성 요건을 준용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나. 가상자산 과세 실무 개선 방안

-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sup>355)</sup>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액 (개인)은 10조 4천억원으로 실제 가상자산 이용자(거래자)의 규모는 더 상당할 것으로 보임
  - 2023년 1천 432명이 130조 8천억원의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신고하였는데, 신고 법인 73개의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액은 120조 4천억원임<sup>356)</sup>
-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세 인프라의 구축 미비를 이유로 가상자산 소득을 전부 과세하지 않는데, 국제적 현황과 비교할 때 현행 실무는 매우 이례적임
  - 2020년 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소득 과세 규정을 마련하였지만, 2025년 1월 1일까지 시행을 연기한 바 있고, 앞으로 2년 더 과세 시행을 유예할 가능성이 있음
  - EU 규제 인프라가 가상자산 거래를 디파이 세상에서 거래소(또는 가상자산 사업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회원국 대부분이 거래소 또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거치는 소득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현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비과세 실무는 이례적임
  - 우리나라와 같이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회원국은 그리스, 사이프러스, 몰타, 슬로베니아가 있음
- 현행 가상자산 비과세 실무는 조세 회피 행위를 유발하면서 동시에 과세 인프라 구축을 지연시킬 수 있음
  - 개인 거래로 위장한 법인의 조세 회피를 부추기면서 동시에 다른 소득과의 차별

35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가상자산계좌를 신고대상으로 포함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62조)

356) 코인 발행사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 가운데 유보 물량을 해외 지갑에 보유하던 중 올해 최초로 신고한 것이 신고액에 반영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함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 검색일자: 2024. 8. 23.)

과세로 조세 중립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측면이 있음

- 비과세 실무로 인해 개인에게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할 수 없음에 따라 디파이(Defi) 가상거래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축적이 어려운 환경을 조성함
- 현행 실무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신고의 간소화 방안이나 원천징수제도 등을 적용하여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

### 1) 과세소득 계산의 간소화

- 현재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은 선입선출법을 원칙으로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면서 납세자에게 그 입증 책임을 두고 있음
  -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은 해당 가격을 구한 후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구하는 방식이라 가상자산 거래 특징을 고려한다면 납세자가 현재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입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음
    -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가격 변동 폭이 심함
    - 가상자산 거래는 국내외 거래소에서 24시간 내내 이루어지고 디파이(Defi) 거래소를 통한 거래, 가상자산 간 교환 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핀란드,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방법에 대한 대체안을 적용함<sup>357)</sup>
  - 핀란드는 개인 납세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양도소득의 20%(10년 이상 보유 시 40%)를 추계공제함
  - 영국은 대량 거래하는 동일 종류의 암호자산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가액 풀링방식(same day rule, 30 days rule)을 적용함<sup>358)</sup>

357) S Parsons, 2023, p. 18

358) 강동익·홍성희·박수진, 2022, p. 92

- 이와 관련하여 취득가액 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총평균법이나 가상자산 필요경비 추계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가상자산 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해 필요경비 추계공제를 허용하여(2024년 세법개정안 포함), 과세 실무를 간소화하고 취득가액의 입증 책임을 완화함
    - 다만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실무가 정착된 후에는 추계공제의 적용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2) 가상자산 신고의 간소화

- 현행 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지만 가상자산을 파악하기 위한 제반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원천징수를 통해 소액 거래자의 납세협력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가상자산 소득은 분리과세하지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액 거래자(이용자)의 경우 납세협력의무가 가중함
  - 가상자산 사업자의 원천징수를 통해 예비적으로 분리과세하고, 납세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합산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협력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가상자산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한다면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가상자산 소득 신고에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먼저 종합소득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 및 수정하여 소득세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함<sup>359)</sup>
    - 현재 종합소득 외에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도 현재 증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함
  - 국세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거주자의 해외금융계

359) 국세청 보도자료,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700만 명, ARS·모바일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2024. 4. 40.

좌 신고 내역을 통해 납세자의 가상자산 소득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므로 모뎀채움 서비스의 활용을 통한 신고 간소화도 고려할 가치가 있음

-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이 과세 유예 기간이지만 가상자산 거래자(이용자)의 자발적 가상자산 소득의 신고를 허용하여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 및 추적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가상자산 거래자(이용자)를 통한 거래소 및 디파이 가상자산 거래 정보의 수집 및 추적을 통해 과세 인프라의 개선 및 개발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특금법 및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 개인과 내국법인에게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의무를 지움
- 자발적인 신고의 이행을 유인하기 위해 부동산 매입에 대한 자금출처 입증 책임 완화나 자진신고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과세 실무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 3) 가상자산 거래 유형별 과세 효과에 대한 안내서

- 조세 불확실성의 완화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 유형별 과세 효과를 설명하는 과세당국의 안내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 유예하는 현행 실무로 인해 거래소 및 디파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유형별 과세 효과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음
- 대여 및 양도 외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가 과세당국의 세법 해석을 토대로 이루어짐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조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음
  - 최근 국세청은 마케팅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상자산 에어드롭을 경품으로 보고 2018~2021년 기간 중 에어드롭 이벤트 참여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데, 이벤트 주최자의 사전적 대응이나 과세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납세자의 조세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라고 보임

- EU 회원국은 가상자산 규제 인프라를 완비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관할권 내에서는 식별되는 거래별 과세 결과에 대한 안내서를 공개하여 과세 불확실성의 완화를 시도함
  - 세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독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스웨덴 등은 과세당국의 안내서를 통해 거래별 과세 규정을 상세히 설명함
  -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 개별 세법 규정을 마련한 오스트리아는 하드포크, 에어드롭, 스테이킹 등 유형별로 과세 효과를 밝힘
  -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가상자산 규제 인프라가 선진적인 미국, 영국, 일본 역시 세법상 법 규정의 도입과 함께 거래 유형별 과세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지침이나 매뉴얼을 공개함<sup>360)</sup>
  
- 과세당국은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 유형별 조세 효과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조세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다. 가상자산 과세소득 범위의 점진적 확대

-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의 대여,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대여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없음
  - 가상자산의 양도는 가상자산과 법정화폐의 교환과 가상화폐 간 교환이라 정의하고 있으나 대여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음
  
- 가상자산 대여소득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sup>361)</sup> 현재까지

360) 미국 연방 국세청은 2014년 가상화폐에 관한 세무행정 지침(IRS Notice 2014-21 등)을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조세 불확실성의 제거를 시도했고, 2023년 IRC Section 6045 (g)(3)(D) 개정과 2024년 9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규정(89 FR 56480)을 고시한 바 있고, 세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하는 영국은 2018, 2019, 2022년에 걸쳐 개인, 법인, 디파이 상황의 가상자산 거래 과세를 위한 내부지침을 공개하여 조세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일본은 2017년과 2018년 가상자산 소득계산 및 가상통화 세무상 취급 등에 대한 입장을 공개한 후 2019년 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규정을 도입함(강동익·홍성희·박수진, 2022, pp. 51~80)

대여소득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 가상자산 대여거래로 볼 수 있는 거래는 렌딩, 위임 스테이킹 등으로 이들 거래에 대해 가상자산의 취득과 대여 중 어떠한 거래 유형으로 분류할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임
  - 렌딩, 스테이킹 거래는 주로 디파이 거래로 우리나라는 디파이 이용률이 저조하고,<sup>362)</sup> 디파이 거래 과세를 위한 인프라 미비로 가상자산의 대여소득을 파악하고 분류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판단됨
- 가상자산 대여 거래의 세원 포착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명세서를 통해 다양한 대여 거래의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을 것임
- 가상자산사업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담은 거래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함
    - 거래명세서에는 거래자, 거래 유형(매도, 교환, 대여, 기타 가상자산 취득(하드포크, 에어드롭, 스테이킹)), 양도,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포함됨
-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가상자산의 과세를 유예하 기보다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고, 거래소를 통한 소득 포착도 예전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여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대부분 조사국이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과세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과세유예보다는 과세범위를 조정하여 양도소득에 대해 우선 과세할 필요가 있음

361) 강동익 외, 2023, pp. 113~116

362)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거래량 중 70%는 중앙거래소를 통한 거래, 25%는 디파이 거래임(Chainalysis, "Eastern Asia: Do Recent Hong Kong Developments Signal More to Come for China and Region at Large?," <https://www.chainalysis.com/blog/eastern-asia-cryptocurrency-adoption/>, 검색일자: 2024. 8. 20.)

- 향후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를 통해 가상자산 대여거래 데이터가 축적된 이후 과세범위를 확대하여 가상자산의 대여소득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임

### 라. 토큰증권 과세 규정 정비의 필요

- 최근 조각투자 사업이 새로이 등장하면서 발행·유통을 기대하지 않았던 증권이 발행·유통됨에 따라 신종증권과 관련한 과세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 기존 자본시장법률은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이나 유통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현재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이나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과세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 현재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소득은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과세 처리하지만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함
  - 부동산 관련 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유권해석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지만,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그러하지 않음
- 현행 세법의 해석을 토대로 조각투자상품의 과세 처리를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지만 시장간접투자기구 과세와의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음
  -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투자자가 수령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법인과세신탁 규정)이나 소득내용별로 과세하고, 증권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투자계약증권을 과세 목적상 익명조합 출자지분 등으로 간주한다면 투자자가 수령하는 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 증권 양도는 ‘주식 등363’에 포섭되는 지분증권

---

363) 「자본시장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 및 제4조 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하며, 지분증권에는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이 포함됨

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을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투자계약증권이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을 통해 발행되었다면 과세 목적상 가상자산으로 취급하여 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sup>364)</sup> 해당 규정은 과세 유예 중이므로 소득세는 과세할 수 없음
-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과세 처리는 과세 효율성 및 조세 중립성 측면에서 기존의 간접투자기구와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투자자에게 투시 과세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시점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 효율성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기존의 간접투자수단인 집합투자기구, 자산유동화증권, 부동산리츠, 부동산펀드로부터의 분배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 비적격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의 투자자가 수령하는 분배금을 2025년 1월 1일부터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조세 중립성과 과세 효율성이 간접투자 과세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조각투자상품은 주로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 등 정형적 증권을 발행하고, 금융 세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독일과 프랑스 모두 자본시장법률에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증권 유형을 두지 않고, 신탁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조각투자 사업자 대부분은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의 형태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보임
  - 그래서 프랑스는 조각투자 사업자가 발행하는 토큰화된 증권을 전통적 증권처럼 취급하여 금융 세제를 적용하고, 독일은 금융세제와 함께 토큰화된 증권이 현물혜

364) 한우, 미술품 등 조각투자 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적 형태의 증권은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포섭할 수 있음. 블록체인 또는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투자계약 증권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볼 수 있어 「소득세법」의 가상자산 정의를 충족하며,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전자증권법」상 전자증권에도 해당하지 않음

택에 대한 청구권을 표상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조각투자상품인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소득은 다른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과세 결과를 적용할 수 있지만 비금전수익증권과 관련하여 추가 보완이 요구됨
  - 「자본시장법」 제110조의 개정을 통해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발행이 허용되는 경우 신탁수익권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세법 개정은 조각투자상품인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을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증권의 분배 및 양도로 인한 소득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추가 보완이 필요함<sup>365)</sup>
  - 현행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소득은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에 따라 상이하게 과세되고 있으며,<sup>366)</sup> 경제적 실질 및 조세 중립성을 고려했을 때 양도의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증권에 초점을 맞추어 법적 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sup>367)</sup>
  -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도 사업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자신의 지분만큼 손익을 분배받는 지분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증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 중립성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임

365) 2024년 세법 개정안 통과 시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은 2025년 1월 1일부터 지급받는 분부터, 그리고 투자계약증권은 2025년 7월 1일부터 지급받는 분부터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임(「소득세법」 제87조의 19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4호)

366) 투자회사의 출자지분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고, 투자신탁·투자조합의 출자지분 양도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367) 문성훈, 2009, pp. 291~292; 손영철, 2012, p. 105. 집합투자기구의 분배소득은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어 집합투자증권 양도 시에도 법적 형태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으로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경제적 기능의 동일성에 비추어 볼 때 옳고, 조세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존재함

## V. 결론

- 본 연구는 2020년 도입한 가상자산 세제와 최근 등장한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조 각투자상품의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미비점이 관찰됨에 따라 개선방안을 검토함
  
-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 규제 인프라를 중심으로 회원국의 규제 및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독일과 프랑스를 조사국으로 채택하여 구체적인 규제 및 과세 제도를 조사함
  - 유럽연합(EU)은 2020년 디지털 금융 패키지 공개 이후 이분화된 규제 인프라를 구축하여 현재 시행(예정) 중에 있고, 회원국은 EU 규제 인프라에 맞춰 암호자산 과 증권토큰 규제 체계를 운용 및 마련하고 있음
  - 조사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선제적으로 EU의 규제 인프라를 수용하여 증권토큰 시장 조성 과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함
  
- 유럽연합(EU)의 대부분 회원국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과세하는 것으로 관찰되어 현재까지 과세 유예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현재 회원국 중 사이프러스, 그리스, 몰타, 슬로베니아만 암호자산 관련 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두 차례 과세시기를 연장한 바 있으며,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 기를 2027년 1월 1일로 연장하는 안을 담고 있음
  - 조사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토큰과 그 외 가상자산에 대한 세제를 운용하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 자산 토큰화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독일과 프랑스는 네이티브 토큰과 토큰화 증권 모두의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현재 토큰화 증권만 허용됨
- 독일과 프랑스 모두 네이티브 토큰과 조각투자상품에 대해 자본시장법률에 따른 전통적인 증권으로 취급하거나(독일, 프랑스) 또는 현물혜택에 대한 청구권(독일)으로 처리함

- 본 연구는 디지털자산 관련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토큰과 그 외 가상자산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금융 세제를 적용하고 후자는 가상자산 세제를 적용하여 조세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과세소득 계산 간소화, 가상자산 신고 간소화, 가상자산 거래 유형별 과세효과에 대한 안내서 제공 등 가상자산 과세 실무를 개선하여 더 이상 과세유예 없이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가상자산 대여거래의 과세를 위한 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먼저 과세를 시행하고 향후 가상자산 대여소득도 과세하도록 과세소득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 조각투자상품의 소득세 과세는 유권해석으로 운용하는 바, 조세 효율성 및 조세 중립성 측면에서 기존의 간접투자기구와 유사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강동익·홍성희·박수진, 『가상자산 및 디파이에 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현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취약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2021.
- \_\_\_\_\_, 「신탁업 혁신방안 발표」, 2022a.
- \_\_\_\_\_, 「조각투자 시장의 규율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주)뮤직카우 제재면제 의결 및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의 증권성 판단 -」, 2022b.
- \_\_\_\_\_,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지정/14건 지정기간 연장 등-」, 2022c.
- \_\_\_\_\_,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2022d.
- \_\_\_\_\_,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2023a.
- \_\_\_\_\_,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2023b.
-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4.
- 김건석·정순섭, 『자본시장법』, 박영사, 2023.
- 대한민국정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2022.
-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 『주식 신탁법』, 제3판, 박영사, 2021.
- 문성훈, 「집합투자증권 양도시 소득세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09. pp. 263~303.
- 백제흠, 「신탁법상 신탁의 납세의무자」, 『조세법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20. pp. 85~150.

- 삼일PwC경영연구원, 『조각투자의 이해 및 STO(토큰증권 발행) 시장 전망』, 삼일회계법인, 2024.
-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의 법률체제』, 2016.
- 손영철, 「집합투자기구(VEHICLE)의 법인과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연구』, 제1권 제2호, 한국세무사회, 2012. pp. 101~146.
- 이영경, 「조각투자의 거래구조와 투자자 보호」,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99호, 법무부, 2022. pp. 37~75.
- 이정수, 「토큰이코노미(Token Economy)의 입법과제」, 『금융법연구』, 제19권 제3호, 금융법학회, 2022, pp. 53~91.
- \_\_\_\_\_,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적 의의와 쟁점 및 향후 입법방향」, 『증권법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23, pp. 89~121.
- 이종교, 「신탁 관련 소득과세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세무와 회계연구』, 제9권 제3호,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0. pp. 93~136.
- 재정경제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2006.
- 정대익, 「독일 전자증권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금융법연구』, 제18권 제3호, 금융법학회, 2021, pp. 5~44.
- 정지수,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적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20-03호, 자본시장연구원, 2020.
- 정순섭, 『금융법』, 홍문사, 2023.
- \_\_\_\_\_, 「금융규제법상 포괄개념 도입의 가능성과 타당성-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1호, 2008, pp. 281~314.
- 정훈·김재경, 「토큰 증권으로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과세방안-개인투자자 과세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29권 제1호, 2023. pp. 391~451.
- 조경준,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에 관한 제도 설계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학위논문, 2024.
- 조용규·최영노·남궁주현, 「블록체인을 이용한 수익권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적 쟁점」, 『상사법연구』, 제40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21. pp. 159~2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2019.

한서희, 「조각투자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제20권 제3호, 금융법학회, 2023. pp. 77~103.

### 〈외국 문헌〉

Aleksandra Bal, “Developing a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Taxation of Virtual Currencies,” *Intertax*, Volume 47, Issue 2, 2019, pp. 219~233.

Aleksandra Bal, “Blockchain, Initial Coin Offerings and Other Developments in the Virtual Currency Market,” *Finance & Capital Markets* 20(2), IBFD, 2018.

AMF, *ETAT DES LIEUX ET ANALYSE RELATIVE A L'APPLICATION DE LA REGLEMENTATION FINANCIERE AUX SECURITY TOKENS*, 2020.

Apolline Blandin et al., *Global Cryptoasset Regulatory Landscape Study*, University of Cambridge Faculty of Law, Research Paper, No. 23. 2019, SSRN Electronic Journal,

Benson, V., Adamyk, B., Chinnaswamy, A. et al., “Harmonising cryptocurrency regulation in Europe: opportunities for preventing illicit transactions,” *European Journal Law and Economics*, Volume 57, 2024, pp. 37~61.

Clifford Chance, *Security Token Offerings - a European Perspective on Regulation*, 2020.

Dirk A. Zetsche et al., “The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 and the EU Digital Finance Strategy,” *Capital Markets Law Journal*, Volume 16, Issue 2, 2021, pp. 203~225.

ECB Crypto-Assets Task Force, *Crypto-Assets: Implications for financial stability, monetary policy, and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2019.

ESMA, *Advice on Initial Coin Offerings and Crypto-Assets*, 2019.

- European Central Bank(ECB), *Virtual currency schemes – a further analysis*, 2015.
-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 *Virtual Currencies – Key Definitions and Potential AML/CFT Risks*, 2014.
- Financial Conduct Authority, *Guidance on Cryptoassets*, Consultation Paper, 2019.
- Hacker, Philipp and Thomale, Chris, “Crypto-Securities Regulation: ICOs, Token Sales and Cryptocurrencies under EU Financial Law,” *European Company and Financial Law Review*, 15(4), 2018, pp. 645~696.
- Hans Stamm and Matthias Meinert, “German regulatory framework for market participants in crypto assets,” *AIMA Journal*, 129, The Alternative Investment Management Association (AIMA), 2022, pp. 66~70.
- IBFD, *Taxing Crypto-Asset Transactions – Chapter 3: Review of the Current State of the Taxation of Crypto-Assets – Books*, 2022. Table 3.1.
- Kate Goldman and Arnav Kumar, *A Taxonomy of Digital Assts*, Milken Institute, 2021.
- Kirill Kuzhelko, “Taxation of individuals holding cryptocurrencies in Europe Comparative analysis of Germany, France and Italy,” *Marter’s Programme i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Tax Law Master Thesis*, UPPSALA UNIVERSITET, 2022.
- Michael S Sackheim and Nathan A Howell, *VIRTUAL CURRENCY REGULATION REVIEW*, THE LAW REVIEWS, 2020.
- Moniz, R. Botelho, “The 2023 Portuguese State Budget: Are Families and Companies Sufficiently Protected Against Inflation?,” *European Taxation*, Volume 63, No. 2/3, 2023.
- OECD, *The Tokenisation of Assets and Potential Implications for Financial Markets*, 2020.

- \_\_\_\_\_, *Regulatory Approaches to the Tokenisation of Assets*, OECD Blockchain Policy Series, 2021.
- Shaun Parsons, *Taxing Crypto-Asset Transactions: Foundations for a Globally Coordinated Approach*, IBFD Doctoral Series, 2023.
- Philipp Maume, "Initial Coin offerings and EU Prospectus disclosure," *European Business Law Review*, Vol. 31, Issue 2, 2020.
- Philipp Maume and Finn Kesper, "The EU DLT Pilot Regime for Digital Assets," *forthcoming in European Company Law (ECL)*, 2023.
- PwC, *Navigating the Global Crypto Landscape with PwC: 2024 Outlook*, 2023.
- \_\_\_\_\_, *Annual Global Crypto Tax Report*, 2024.
- Roberta D'Apice(A curd di), *OLTRE LE CRIPTOVALUTE Tecnologie a registro distribuito a servizio dell'asset management*, Comitato Digital Finance Assogestioni, 2023.
- Roy Choudhury, et al., *Impact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n Global Capital Markets*, The Global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GFMA), Boston Consulting Group (BCG), Clifford Chance and Cravath and Swaine & Moore LLP, 2023.
- The Global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GFMA), *The Impact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n Global Capital Markets*, 2023.
- Waltio, *Le guide de la fiscalité des actifs numériques*, 2024.
- Zetsche, Dirk Andreas and Annunziata, Filippo and Annunziata, Filippo and Arner, Douglas W. and Buckley, Ross P., "The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R) and the EU Digital Finance Strategy," European Banking Institute, Working Paper Series No. 2020/77, University of Luxembourg Law Working Paper Series No. 2020-018, University of Hong Kong Faculty of Law Research Paper No. 2020/059., 2020.
- Zhang, Laney, Author, et al. *Taxation of Cryptocurrency Block Rewards in*

*Selected Jurisdictions*, The Law Library of Congress, 2021.

### 〈웹사이트〉

ACPR BANQUEDE FRANCE, [https://acpr.banque-france.fr/sites/default/files/20140101\\_acpr\\_position\\_bitcoin.pdf](https://acpr.banque-france.fr/sites/default/files/20140101_acpr_position_bitcoin.pdf), 검색일자: 2024. 7. 16.

AGN Avocats, <https://www.agn-avocats.fr/blog/fiscalite/quels-moyens-juridiques-pour-tokeniser-en-france-des-actifs-par-blockchain/>, 2023. 3. 20., 검색일자: 2024. 8. 15.

Blockpit, <https://www.blockpit.io/tax-guides/crypto-tax-france>, 검색일자: 2024. 8. 19.

Cointelegraph, “Taxation on cryptocurrency mining activity in France, Question 2,” <https://fr.cointelegraph.com/explained/taxation-on-cryptocurrency-mining-activities-in-france>, 검색일자: 2024. 8. 13.

ESILV, “Cryptocurrencies and Taxes in France: All There is to Know,” <https://www.esilv.fr/en/cryptocurrencies-and-taxes-in-france-all-there-is-to-know/>, 검색일자: 2024. 7. 31.

IBFD, “France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July 2024),” section. 1.10.3.3.

IBFD, “France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3.7 Virtual Assets (Last Reviewed: 31 January 202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fr\\_s\\_3.&refresh=1722493589899%23evat\\_fr\\_s\\_3.7](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fr_s_3.&refresh=1722493589899%23evat_fr_s_3.7) ., 검색일자: 2024. 8. 1.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A French point of view: from crypto assets to digital assets,” <https://www.ibanet.org/article/f59c675e-e95e-4c74-bdc3-ea5a42e8ef9c>, 검색일자: 2024. 7. 9.

Jowi, “En quoi consiste la tokenisation de l’immobilier ?(What is the tokenization of real estate?),” <https://www.jowi.fr/tokenisation-immobilier/>, 검색일자:

2024. 8. 13.

KPMG, “France: Tax authority guidance on VAT treatment of non-fungible tokens,”  
<https://kpmg.com/us/en/home/insights/2024/02/tnf-france-guidance-vat-treatment-nfts.html>, 검색일자: 2024. 7. 31.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EU] 디지털 운영 복원력에 관한 법률(DORA)의 핵심 요점(2024)」,  
<https://static.upbitcare.com/081a1f7e-a72e-43af-baa5-e00319ce29ee.pdf>, 검색일자: 2024. 8. 12.

영국 국세청, <http://www.gov.uk>, 검색일자: 2024. 8. 12.

프랑스 금융당국(AMF), “Activity of future revenue sharing platforms (royalties): legal qualifications and applicable regulations,” <https://www.amf-france.org/fr/actualites-publications/actualites/active-des-plateformes-de-partage-de-revenus-futurs-royalties-qualifications-juridiques-et>, 검색일자: 2024. 8. 13.

프랑스 기업청,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vosdroits/F23267?lang=en>,  
검색일자: 2014. 8. 14.

\_\_\_\_\_,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vosdroits/F32105>, 검색일자: 2024. 8. 21.

프랑스 재무부, <https://www.economie.gouv.fr/cedef/regime-fiscal-cryptomonnaies>, 검색일자 2024. 8. 14.

프랑스 행정부(Republicque Francais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419?lang=en>, 검색일자: 2024. 8. 14.

한국핀테크지원센터, [https://sandbox.fintech.or.kr/overview/about\\_system.do?lang=ko](https://sandbox.fintech.or.kr/overview/about_system.do?lang=ko), 검색일자: 2024. 8. 12.

## [별첨 1] EU 회원국별 암호자산 규제제도 현황

- 오스트리아는 암호자산 거래는 구체적 규정 없이 일반법 해석을 통해 규제하며, 유럽연합 법률을 토대로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sup>368)</sup>
  -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하는 MiCAR를 반영하여 규제기관은 디지털자산을 분류함
    - 스테이블 코인은 MiCAR에 따라 전자화폐 토큰 또는 자산준거토큰(asset-reference token)의 형태로 발행할 수 있음
  -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SP)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규정과 규제 조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금융시장 규제기관에 등록하여야 함
  
- 벨기에는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MiCAR 시행에 따라 규제 인프라를 구축함<sup>369)</sup>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의 측면에서 2017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법률(AML법)에 따라 2020년부터 가상화폐 교환 및 보관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함<sup>370)</sup>
  - 2022년 7월 5일 법률(Omnibus Act)에 따라 2023년부터 금융 서비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화폐 마케팅을 규제함
  
- 불가리아는 암호자산 거래는 규제하지 않지만 2024년 12월 30일부터 MiCAR를 반영하여 기존 접근방식을 변경할 예정임<sup>371)</sup>
  - 최근까지 불가리아 국립은행(BNB)과 금융감독위원회(FSC)는 암호자산은 금융상

368) PWC, 2023, p. 27

369) Elliptic, "Belgium," <https://www.elliptic.co/country-guides/belgium>, 검색일자 2024. 8. 19.

370) CMS, "CMS Expert Guide to Crypto Regulation in Belgium," <https://cms.law/en/int/expert-guides/cms-expert-guide-to-crypto-regulation/belgium>, 검색일자: 2024. 8. 19.

371) PWC, 2023, p. 33

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함

- 2019년 12월부터 암호자산 거래소 및 보관 서비스 제공자는 불가리아 자금세탁 방지법(AML)을 적용받고, 2023년 10월부터 가상자산의 교환, 양도, 보관, 통제, 공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도 AML의 적용대상에 포함함
  - VASP는 금융규제기관의 승인 및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세무기관(NRA)의 특별등록부에 등록할 의무가 있음
  
- 크로아티아는 암호자산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MiCAR 시행에 따라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sup>372)</sup>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의 측면에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크로아티아 AML법의 규제를 받음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크로아티아 금융서비스감독기관(HANFA)에 등록하여야 함
  
- 사이프루스는 암호자산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MiCAR 시행에 따라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sup>373)</sup>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의 측면에서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는 사이프러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및 억제법(L188(I)/2007)의 적용을 받음
    - 서비스 제공자는 사이프러스증권거래위원회(CYSEC)에 등록하여야 함
  
- 체코 공화국은 암호자산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MiCAR 시행에 따라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sup>374)</sup>

372) CMS, "CMS Expert Guide to Crypto Regulation in Croatia," <https://cms.law/en/int/expert-guides/cms-expert-guide-to-crypto-regulation/croatia>, 검색일자: 2024. 8. 8.

373) CMS, "CMS Expert Guide to Crypto Regulation in Cyprus," <https://cms.law/en/int/expert-guides/cms-expert-guide-to-crypto-regulation/cyprus>, 검색일자: 2024. 8. 8.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의 측면에서 가상자산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체코 자금세탁방지법(AML)의 규제를 받음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현재 체코 사업허가법(Trade License Act)에 따라 허가를 취득해야 함
    - MiCAR 시행으로 현재 실무는 종료될 예정임
- 덴마크 금융규제기관은 암호자산 거래를 규제하지 않지만, MiCAR의 시행에 따라 기존 접근방식을 변경할 예정임<sup>375)</sup>
- 현재 암호자산은 덴마크 금융사업법에 따른 통화 또는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자산의 보유 또는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DFSA)의 규제는 없음
  - 가상화폐 거래소 및 보관 서비스 제공자는 AML 규정의 적용을 받음
- 에스토니아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MiCAR를 반영하여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개정할 예정임<sup>376)</sup>
- 암호자산을 에스토니아 채권법(Law of Obligations Act)에 따라 재산(property)로 취급함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법(AML)의 규제를 받으며, VASP 활동은 금융정보원(FIU)의 승인이 필요함
  - 코인 공모(Initial Coin Offering)로 발행하는 토큰의 법적 성격이 증권으로 간주하는 경우 에스토니아 증권시장법과 관련 EU 법률을 적용하여 에스토니아 금융감독청(EFSRA)의 규제를 받을 수 있음
- 핀란드는 MiCAR 시행 이후 유럽연합 법률을 토대로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

374) CMS, "CMS Expert Guide to Crypto Regulation in Czech Republic," <https://cms.law/en/int/expert-guides/cms-expert-guide-to-crypto-regulation/czech-republic>, 검색일자: 2024. 8. 8.

375) PWC, 2023, p. 38

376) PWC, 2023, p. 39

할 예정임<sup>377)</sup>

- 가상화폐 발행자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가상화폐 공급자에 대한 핀란드법 (572/2019)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에 관한 핀란드법 (444/2017)을 통해 핀란드 금융감독기관(FSA)이 주관하여 규제함
  - EU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준칙<sup>378)</sup>의 시행으로 지불수단의 사기에 관한 핀란드 형법(39/1889)의 적용 대상 지불수단에 가상화폐를 포함함
- 프랑스는 2017년 블록체인 명령(Blockchain Order)과 2019년 Pacte 법률<sup>379)</sup>의 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에 맞춰진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함<sup>380)</sup>
- 2023년 EU DLTR과 MiCAR 시행에 대해 2023년 DDADUE 법<sup>381)</sup>을 제정하여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규제하는 금융 증권 프레임워크와 법적 환경을 개선함
  - 2019년 프랑스 통화 및 금융법(CMF)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을 토큰(유틸리티 토큰, 증권 토큰)과 암호화폐(또는 지불 토큰)으로 구분함
    - 암호화폐 등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가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등록과 선택적 승인을 규정함
  - DLT를 통한 특정 증권 토큰의 등록 및 유통을 허용하고, DDADUE 법률에 따라 DLT 시장 인프라<sup>382)</sup>에서 허용하는 무기명 금융증권의 등록과 거래를 합법화함
    - DASP는 디지털자산 서비스의 수행을 위해 건전성감독기관(ACPR)의 사전승인을 받고 금융시장감독기관(AMF)에 등록하여야 함
  - 제5차 EU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준칙에 따라 DASP와 코인 공모 발행을 승인받은 토큰 발행자에게 AML/CFT 의무를 적용함

377) PWC, 2023, pp. 40~41

378) EU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2019/790)

379) Pacte 법률은 Plan d'Action pour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의 약자로 2019년 마크롱 정부가 기업의 성장과 전환을 위한 실행방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380) PWC, 2023, pp. 43~44

381) DDADUE 법은 경제, 건강, 노동, 운송 및 농업 분야에서 EU 법에 맞게 조정된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는 법률을 의미함

382) 특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관에는 투자 회사, 시장 운영자 및 중앙 증권 예탁 기관(CDS)이 포함되어 DLT 다자간 거래 시설과 DLT 결제 및 거래 및 결제 시스템을 운영함

- 프랑스는 암호자산 이전의 추적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FATF 권고안 16의 트레블 규칙(travel rule)을 시행하여 DASP와 토큰 발행자는 일반 고객과 실질적인 소유자를 식별하여야 함

□ 독일은 은행업법(KWG), 전자증권법(eWpG), 독일 증권기관감독법(WpIG) 등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방금융감독청(BaFin)이 주요 규제 감독기관임<sup>383)</sup>

- MiCAR의 도입에 따라 기존 제도는 2024년 12월 30일까지 전환할 예정임
  - 2023년 10월 23일에 금융 시장의 디지털화에 대한 법률 초안 (Finanzmarktdigitalisierungsgesetz, FinmadiG)<sup>384)</sup>을 공개한 바 있으며 2024년 12월 30일 발효 예정임<sup>385)</sup>
- 암호자산의 보관 및 안전 보관에는 독일 은행업법(KWG)에 따라 승인이 필요하며, 디파이(DeFi)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BaFin과 독일 입법부에서 명확히 밝힌 바 없음
  - 은행법과 증권기관감독법에 따라 암호자산은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므로 일부 스테이킹 및 대출 활동은 규제대상 대출로 간주할 수 있음
- 전자증권법(eWpG)은 토큰을 포함한 비물질화된 증권에 대한 디지털 등록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포함)의 사용을 규정하고 DLT 기반 무기명 채권 (Inhaberschuldverschreibungen) 발행을 허용함
- 제5차 EU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준칙을 입법화한 자금세탁

383) PWC, 2023, pp. 45~46

384) FinmadiG 초안은 암호자산(MiCAR), 디지털 운영 회복성(DORA), 크라우드펀딩(ECSPR) 및 시장 남용과 관련된 여러 EU 규정 및 준칙의 상호 운용성을 구현 및 보장하고, 독일 내 규칙의 감독 및 집행을 위한 국내 입법화를 목표로 함

385) FinmadiG 초안에 암호자산시장감독에 대한 법률(Kryptomärkteaufsichtsgesetz, KMAG)의 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KMAG는 BaFin의 감독 프로세스 및 권한을 명확히 하고, 암호 자산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새로운 보고 및 감사 의무를 포함하여 KWG 및 WpHG의 정의, 개념 및 프로세스에 대한 개정을 담고 있음. 그리고 금융기업감독법(Finanzkonglomerate-Aufsichtsgesetz, FKAG)에는 암호 자산을 취급하는 금융 대기업의 식별, 감독 및 보고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포함되어 BaFin에 추가적인 감독 및 조사 권한을 부여함

방지법(GwG) 규정은 암호자산 거래소 및 전자지갑 제공자에게 적용함  
 - 암호자산 이전을 중개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트레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그리스는 암호자산 규제를 위한 통합된 인프라는 구축하지 않음<sup>386)</sup>
  - 다만 자금세탁방지(AML)의 관점에서 가상자산 및 암호자산 제공자에 대한 승인 절차를 도입하고 그리스 자본시장감독기관(HCMC)이 제공자의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등록 및 감독을 담당함
- 헝가리는 암호자산 관련 구체적인 법적 규제 틀은 없지만, 2024년 12월 30일부터 MiCAR를 반영하여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sup>387)</sup>
  - 다만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의 측면에서 헝가리 금융정보원(FIU)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자와 보관 지갑 제공자를 감독함
- 아일랜드는 암호자산 규제를 위한 통합된 인프라는 구축하지 않았지만 MiCAR를 반영하여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sup>388)</sup>
  - 다만 자금세탁방지(AML)의 관점에서 중앙은행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감독함
- 이탈리아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틀을 구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EU 디지털 금융 패키지(MiCAR, DORA, DLT 파일럿 제도)를 반영하여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갖출 예정임<sup>389)</sup>
  - 2022년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한 바 있고, 금융시장 감독기관(CONSOB)이 예탁 및 공모 관련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감독함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는 2022년부터 금융기관 감독기관(Organismo

386) PWC, 2023, pp. 50~51

387) PWC, 2023, pp. 56~57

388) PWC, 2023, p. 61

389) PWC, 2023, p. 64

- Agenti e Mediatori, OAM)에 등록하고,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의 측면에서 2007년 법률 231호에 따라 이탈리아 금융정보원(UIF)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감독함
  - EU DLT 파일럿 제도의 시행을 위해 특정 금융상품의 디지털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 25호를 2023년 3월 17일에 제정함<sup>390)</sup>
    - DLT 기반 자산 토큰화 및 증권 토큰에 대해 다름
- 라트비아는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지 않았지만, MiCAR 도입에 따라 전환할 예정임<sup>391)</sup>
- 2017년부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법률(AML/CTPF 법)이 가상화폐와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함
  - 다만 계약에 따른 지불수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수단, 기부 및 소비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경우<sup>392)</sup> 은행 및 국세청(SRS)에 신고 및 등록의무가 없으며 AML/CTPF 법의 적용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음
  - 가상자산이 금융상품 또는 공모를 위한 금융상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금융상품시장법(FIML)을 적용할 수 있으며 MiCAR를 통해 규제할 예정임
- 리투아니아는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지 않았지만, MiCAR 도입에 따라 전환할 예정임<sup>393)</sup>
-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는 일반적으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규정의 적용을 받음
    - 트래블 규칙(Travel rule)은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2019년 리투아니아 은행(BoL)은 Security Token Offering 지침의 발표를 통해 MiFID II상 금융상품의 범주에 속하는 토큰의 요건을 공개한 바 있음<sup>394)</sup>

390) Roberta D'Apice, 2023, p. 21

391) PWC, 2023, p. 68

392) 지불 및 교환토큰 또는 유틸리티 토큰을 의미함

393) PWC, 2023, p. 70

- 토큰이 주식, 채권 및 기타 형태의 비지분 증권 또는 기타 협상 가능한 (negotiable) 증권이 부여하는 권리와 유사하거나 동등한 권리를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양도성 증권(transferable securities)의 요건을 충족함
- 토큰의 협상 가능성이 계약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유가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사례별 평가가 필요함

□ 룩셈부르크는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체제는 없으며 MiCAR의 시행에 따라 규제 인프라를 전환할 예정임<sup>395)</sup>

- 금융업감독기관(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CSSF)을 중심으로 DLT와 가상자산의 도입을 위한 금융 혁신 관련 특례 정책을 운용함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의 측면에서 2020년 3월부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CSSF에 등록하고 AML/CFT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금융상품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틀을 2019년부터 마련함
  - 2019년 3월 1일 법률(Bill n°7363)은 기존 증권계좌 등록 규정을 개정하여 DLT를 증권계좌 등록을 위한 매체로 승인함
  - 2021년 1월 22일 법률(Bill n°7637)은 비물질화 증권(dematerialised securities)의 발행을 기록하기 위해 블록체인 및 기타 DLT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
  - 2023년 3월 14일 DLT 파일럿 제도의 국내 입법을 위해 법률(Bill n°8055)을 제정하고 담보약정에 DLT 사용을 허용함에 따라 증권계좌에 등록된 금융상품을 담보로 전자적 DLT를 사용할 수 있게 함

□ 몰타는 2018년부터 가상자산 규제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입법 작업을 착수하고 MiCAR 시행에 맞춰 제도를 전환할 예정임<sup>396)</sup>

394) BoL, "GUIDELINES ON SECURITY TOKEN OFFERING," [https://www.lb.lt/uploads/documents/docs/23488\\_be8ce9606ecb203bf8a9a4bde09ac399.pdf](https://www.lb.lt/uploads/documents/docs/23488_be8ce9606ecb203bf8a9a4bde09ac399.pdf), 검색일자: 2024. 8. 13.

395) PWC, 2023, pp. 72~73

396) PWC, 2023, pp. 74~75

- 현재 몰타에서 가상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성하는 법률은 가상금융자산법(VFA), 몰타 디지털 혁신기관법(MDIA), 혁신 기술 조치 및 서비스법(ITAS)이 있음
  - VFA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규정을 포함하여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제공자, 암호화폐 자산 관리자를 대상으로 VFA 공모 발행 및 VFA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sup>397)</sup>
  - MDIA는 블록체인 산업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고 산업에서 운영되는 기업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 ITAS는 기술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인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함
  
- 네덜란드 암호자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으며 MiCAR 시행에 따라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sup>398)</sup>
  - 자금세탁방지의 측면에서 제정한 네덜란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Wwft)을 통하여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 인프라를 제공함
  - 네덜란드 금융감독법(FSA)은 전자화폐나 전통적인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 인프라를 제공함
    - 전자화폐에 대한 감독기관은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이고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암호자산에 대한 감독기관은 네덜란드 금융시장감독기관(AFM)임
  
- 폴란드는 암호자산 거래는 구체적 규정 없이 일반법 해석을 통해 규제하며, MiCAR 시행에 따라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sup>399)</sup>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의 측면에서 폴란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함

397) 가상금융자산을 디지털 교환 매체, 계산 단위 또는 가치 저장소로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디지털 매체 기록으로 정의하며 (a) 전자 화폐, (b) 금융 상품, (c) 가상 토큰은 포함하지 않음

398) CMS, “CMS Expert Guide to Crypto Regulation in The Netherlands,” <https://cms.law/en/int/expert-guides/cms-expert-guide-to-crypto-regulation/the-netherlands>, 검색일자: 2024. 8. 8.

399) PWC, 2023, pp. 83~84

- 일부 결제나 지불을 위한 토큰은 폴란드 결제 서비스법에 따른 전자화폐로 보고 폴란드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음<sup>400)</sup>
- 포르투갈은 암호자산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MiCAR 시행에 따라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sup>401)</sup>
  - 암호자산 규제는 주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의 측면과 개인 소득세 과세 목적으로 이루어짐
    - 암호자산 활동은 주로 AML/CFT법(83/2017)의 적용을 받으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포르투갈 중앙은행(BdP)에 등록하여야 함
  - 포르투갈은 DLT 기반 금융상품을 규정하는 EU DLT 파일럿 제도의 국내 입법을 위해 2023년 8월 8일자로 법률 66/2023를 제정함
- 루마니아는 암호자산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MiCAR 시행에 따라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sup>402)</sup>
  - 다만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의 측면에서 루마니아 자금세탁 방지법(AML)의 개정을 통해 암호자산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함
  - 증권으로 분류하는 토큰을 유통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발행인은 EU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암호화폐 서비스가 EU 규정에 따른 금융 서비스로 보는 경우 승인이 필요함
- 슬로바키아는 암호자산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MiCAR 시행에 따라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sup>403)</sup>
  - 암호자산 규제는 주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의 측면과 개인

400) CMS, "CMS Expert Guide to Crypto Regulation in Poland," <https://cms.law/en/int/expert-guides/cms-expert-guide-to-crypto-regulation/poland>, 검색일자: 2024. 8. 8.

401) PWC, 2023, pp. 85~86

402) CMS, "CMS Expert Guide to Crypto Regulation in Romania," <https://cms.law/en/int/expert-guides/cms-expert-guide-to-crypto-regulation/romania>, 검색일자: 2024. 8. 8.

403) PWC, 2023, p. 90

소득세 과세 목적으로 이루어짐

-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는 슬로바키아 AML법에 따라 거래 허가가  
필요함

○ MiCAR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입법 조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주요 감독기관  
은 슬로바키아 중앙은행이 될 예정임

□ 슬로베니아는 암호자산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MiCAR 시행에 따라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sup>404)</sup>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의 측면에서 슬로베니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법(ZPPDFT-2)이 암호자산 시장을 규제함

○ 현행 슬로베니아 법률에 따라 암호자산을 증권, 예금, 전자화폐, 기타 유형의 자  
산 또는 규제된 금융 상품으로 분류하는 경우, 해당 특정 자산에 대한 법률을 적  
용함

□ 스페인은 증권시장법과 증권시장 및 투자 서비스에 관한 법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를 하고 있으며, MiCAR 도입을 통해 규제 인프라를 정립할 예정임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의 측면에서 스페인 중앙은행은  
AML/CFT법(10/2010)에 따라 가상화폐 발행자와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를 감  
독함

○ 증권시장법 제240bis조의 제정을 통해 2022년부터 암호자산의 광고업을 규제하  
고, 2023년 증권시장 및 투자 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시장위원회  
(CNMV)는 금융상품으로 구분하지 않는 특정 암호자산의 발행, 공모, 거래 승인  
등을 규제함

□ 스웨덴은 암호자산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MiCAR 시

---

404) CMS, "CMS Expert Guide to Crypto Regulation in Slovenia," <https://cms.law/en/int/expert-guides/cms-expert-guide-to-crypto-regulation/slovenia>, 검색일자: 2024. 8. 8.

행에 따라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sup>405)</sup>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의 측면에서 스웨덴 AML법(2017:630)법과 특정금융운영법(1996:1006)에 따라 가상화폐 발행자 및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는 스웨덴 금융감독원(SFSA)에 등록해야 함

---

405) PWC, 2023, p. 94

〈표 1〉 EU 회원국별 암호자산 규제제도

국가	EU MiCAR	현지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	DLT 기반 증권 <sup>1)</sup>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AR을 통해 2024년 12월 30일부터 암호자산 관련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li> <li>MiCAR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L/CFT 규정을 통해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함</li> </ul>	-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AR을 통해 2024년 12월 30일부터 암호자산 관련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L/CFT 규정을 통해 가상화폐 교환 및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함</li> <li>2023년 금융 서비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상화폐 마케팅을 규제함</li> </ul>	-
불가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AR을 통해 2024년 12월 30일부터 암호자산 관련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L 규정을 통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함</li> <li>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세무 기관(NRA)의 등록의무가 있음</li> <li>금융감독기관(BNB, FSC)은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하지 않음</li> </ul>	-
크로아티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AR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L 규정을 통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함</li> </ul>	-
사이프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AR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L/CFT 규정을 통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함</li> </ul>	-
체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AR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L 규정을 통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함</li> </ul>	-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AR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L 규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및 보관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함</li> <li>금융감독기관은 암호자산을 통화 또는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음</li> </ul>	-

〈표 1〉의 계속

국가	EU MiCAR	현지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	DLT 기반 증권 <sup>1)</sup>
에스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AR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L 규정을 통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함</li> <li>암호자산을 채권법에 따른 재산(property)으로 규정함</li> <li>AML/CFT 규정을 통해 가상화폐 발행자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CO을 통해 발행한 토큰의 법적 성격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경우 금융감독청의 규제를 받음</li> </ul>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AR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7년 블록체인 명령 및 2019년 Pacte 법률의 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 규제 인프라 구축함</li> <li>AML/CFT 규정에 의해 디지털 자산서비스 제공자와 토큰 발행자를 규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DLT 기반 증권의 등록 및 유통을 허용</li> <li>DDADUE 법률을 통해 DLT 시장 인프라에서 허용하는 무기명 금융증권의 거래를 합법화함</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3년 MiCAR 및 DLTR 시행에 대해 2023년 DDADUE법 제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AR 시행에 대비하여 2023년 디지털화에 대한 법률안을 공개, 2024년 12월 30일자로 발효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증권법을 통해 DLT 기반 무기명 채권의 발행을 허용함</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AR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법과 증권기관감독법에 따라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함</li> <li>AML/CFT 규정을 통해 암호자산 거래소 및 전자지갑 제공자를 규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증권법을 통해 DLT 기반 무기명 채권의 발행을 허용함</li> </ul>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L 규정을 통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표 1〉의 계속

국가	EU MiCAR	현지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	DLT 기반 증권 <sup>1)</sup>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AR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L/CFT 규정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자와 보관자 감공자를 규제함</li> </ul>	-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AR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L 규정을 통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감독함</li> </ul>	-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AR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년 금융시장 감독기관이 예탁 및 공모 관련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감독함</li> <li>AML/CFT 규정을 통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감독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LTR 시행에 대비하여 DLT 기반 자산 토큰화 및 증권 토큰을 다루는 법률을 제정함</li> </ul>
라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AR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L/CFT 규정으로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함</li> </ul>	-
리투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AR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L/CFT 규정을 통해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9년 BoL은 STO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상품의 범주에 속하는 토큰의 요건을 공개함</li> </ul>
룩셈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AR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L/CFT 규정을 통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9년부터 DLT 기반 증권 발행 샌드박스 제도를 운용함</li> <li>2019년 DLT 증권제와 등록을 허용함</li> <li>2021년 비물질화 증권의 발행을 DLT에 기록하는 것을 허용함</li> <li>2023년 DLTR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를 정비함</li> </ul>

〈표 1〉의 계속

국가	EU MiCAR	현지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	DLT 기반 증권 <sup>1)</sup>
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AR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L/CFT 규정을 반영한 가상 금융자산법, 디지털혁신기관법, 혁신기술조치 및 서비스법을 통해 가상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함</li> </ul>	-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AR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L 규정을 통해 가상화폐 및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네덜란드 금융감독법을 통해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암호자산을 규제함</li> </ul>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AR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L 규정을 통해 가상화폐 및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함</li> </ul>	-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AR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L 규정을 통해 가상화폐 및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LT 기반 금융상품을 규정하는 DLTR의 국내 입법을 위해 법률 66/2023을 2023년에 제정함</li> </ul>
루마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AR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L/CFT 규정을 통해 암호자산 및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U 규정을 통해 증권으로 분류하는 토큰의 유통을 규제함</li> </ul>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AR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암호자산 규제는 AML/CFT 규정과 소득세법을 통해 이루어짐</li> </ul>	-
슬로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AR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L/CFT 규정을 통해 암호자산 및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슬로베니아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률의 규정을 적용함</li> </ul>

〈표 1〉의 계속

국가	EU MiCAR	현지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	DLT 기반 증권 <sup>1)</sup>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AR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정비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L/CFT 규정을 통해 가상화폐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감독함</li> <li>2022년부터 증권시장법 제 240bis조 개정을 통해 암호자산 광고를 규제함</li> <li>2023년 증권시장 및 투자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암호자산의 발행 및 공모, 거래를 규제함</li> </ul>	-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AR을 통해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L/CFT 규정을 통해 가상화폐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감독함</li> </ul>	-

주: 1) 각 국가에서 금융상품으로 분류하여 규제하는 토큰 또는 DLT 기반 증권에 대한 규정을 설명함  
 자료: PWC(2023); Elliptic 국가별 안내(<https://www.elliptic.co>); CMS Expert Guide to Crypto Regulation(<https://cms.law/>)

## [별첨 2] EU 회원국별 암호자산 과세제도 현황

### 1.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암호화폐 관련 소득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을 도입함<sup>406)</sup>
  - 2021년 2월 28일 이후 신규 취득한 암호화폐와 관련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2022년 3월 1일부터 부과함
    - 하드포크나 에어드롭을 통해 취득한 암호화폐는 신규 취득한 것으로 봄
  
- 오스트리아는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경상소득과 자본자산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 처리함<sup>407)</sup>
  - 암호화폐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수수료 및 거래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적 과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획득하는 경우 경상소득으로 과세함<sup>408)</sup>
  - 암호화폐 가치의 실현 증가로 인한 소득과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은 자본자산소득으로 과세함<sup>409)</sup>
    - 암호화폐 가치의 실현 증가는 판매 또는 법정 지불수단을 포함한 기타 자산 및 서비스와 교환을 의미하며 암호화폐 간 교환은 포함하지 않음<sup>410)</sup>
    - 암호화폐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스테이킹, 에어드롭, 하드포크를 통해 획득하는 암호화폐는 경상소득으로 보지 않고 자본자산소득으로 처리함<sup>411)</sup>

406) Bundesministerium Finanzen, “Steuerliche Behandlung von Kryptowährungen,” <https://www.bmf.gv.at/themen/steuern/sparen-veranlagen/steuerliche-behandlung-von-kryptowaeehrungen.html>, 검색일자 2024. 7. 31; 오스트리아 소득세법(ESTG) 제27b조

407) 오스트리아는 사적 재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이 보유기간 1년 미만, 44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비과세함

408) 오스트리아 소득세법(ESTG) 제27b조 제2항

409) 오스트리아 소득세법(ESTG) 제27조

410) 오스트리아 소득세법(ESTG) 제27b조 제3항

411) 스테이킹,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을 통해 획득한 암호화폐의 취득원가를 영(0)으로 처리함(오스트

- 암호자산 관련 자본자산소득에 대한 오스트리아 과세권 상실로 이어지는 상황도 매대로 간주함<sup>412)</sup>

○ 암호화폐의 자본자산손실은 다른 자본자산소득과 통산할 수 없음<sup>413)</sup>

□ 암호화폐 관련 경상소득과 자본자산소득 모두 27.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sup>414)</sup> 암호화폐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함<sup>415)</sup>

○ 다만 사업목적으로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암호자산 관련 소득은 누진세율로 과세함

## 2. 벨기에

□ 벨기에에는 암호자산 과세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을 도입하지 않고 세법상 일반 원칙을 적용함

□ 전문적 활동과 관련한 경우에는 일반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하고, 그 외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sup>416)</sup>

○ 암호자산 관련하여 전문적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25~50%의 누진세율을 과세함

○ 암호자산 관련 활동이 전문적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여 33%의 단일세율을 적용함<sup>417)</sup>

---

리아 소득세법(EStG 제27조 제4항 제5호)

412) 오스트리아 소득세법(EStG) 제27조 제6항 제1호. 출국세(exit tax)의 일환으로 그러함

413) 오스트리아 소득세법(EStG) 제27조 제8항 제1호

414) 오스트리아 소득세법(EStG) 제27a조 제1항 제2호

415) 오스트리아 소득세법(EStG) 제33조 제1항. 소득세 과세표준 12,816유로 미만은 면세함

416) FISCONETplus, "Blockchain," [https://www.minfin.fgov.be/myminfin-web/pages/public/fisconet/document/1346e129-0cb0-4eb5-bf31-927083890fb7#\\_Toc121150486](https://www.minfin.fgov.be/myminfin-web/pages/public/fisconet/document/1346e129-0cb0-4eb5-bf31-927083890fb7#_Toc121150486), 검색일자: 2024. 7. 31.

417) 벨기에 소득세법(CIR 92) 제90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171조 제1항

- 다만 암호자산 관련 운영이 사적 재산의 정상적인 관리 범위<sup>418)</sup>에 속하는 경우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음
-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과 관련한 소득세 과세 처리는 명확하지 않음
- 개인 납세자의 NFT 거래는 민법상 권리의 양도로 간주하여 자본이득으로 33%의 단일세율로 과세함

### 3. 불가리아

- 불가리아는 암호자산 과세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을 도입하지 않고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함<sup>419)</sup>
- 불가리아는 암호자산 활동이 전문적 활동으로 간주되는 경우 관련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15%의 세율을 과세함
  -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암호자산의 매매나 교환으로 인한 소득은 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소득으로 간주하여 1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함
  - 법정화폐와의 교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가, 암호자산 간 교환은 자산의 처분으로 봄

418) 사적 재산의 정상적인 관리는 관리를 위해 수행하는 행위와 함께 재산요소의 결실, 실현, 재투자를 위해 수행하는 행위로 투기적 의도로 수행하지 않고 빈도상 전문적 활동의 특성을 갖지 않아야 함 (<https://cms.law/en/int/expert-guides/cms-expert-guide-on-taxation-of-crypto-assets/belgium>, 검색일자: 2024. 7. 31.)

419) CMS, "Crypto Tax Legislation & Law in Bulgaria," <https://cms.law/en/int/expert-guide/s/cms-expert-guide-on-taxation-of-crypto-assets/bulgaria>, 검색일자: 2024. 7. 31.

#### 4. 크로아티아

- 크로아티아는 암호자산 과세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을 도입하지 않고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함<sup>420)</sup>
-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소득은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암호화폐 채굴 활동이 영리목적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소득(자영업)으로 과세하고, 사업성이 없는 경우 암호화폐 채굴로 획득한 암호화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 적용하는 세율은 거주지별로 15~23.6%(과세소득 50,400유로 미만), 25~35.4%(과세소득 50,400유로 이상)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함
- 암호화폐 매매 및 교환 소득은 금융소득의 일부로 취급하여 12%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함
  - 크로아티아 과세당국은 암호화폐가 금융자산 중 단기금융상품(money market instruments)과 유사하고 금융자산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2017년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 다만 암호화폐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하며, 암호화폐 간 교환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

420) CMS, "Crypto Tax Legislation & Law in Croatia," <https://cms.law/en/int/expert-guides/cms-expert-guide-on-taxation-of-crypto-assets/croatia>, 검색일자: 2024. 7. 31.

## 5. 사이프러스

- 사이프러스는 암호자산 과세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을 도입하지 않고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함
  - 19,500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20~35%의 누진세율을 적용함<sup>421)</sup>
  - 사이프러스 개인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관련 소득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자본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 6. 체코 공화국

- 체코 공화국은 암호화폐 과세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을 도입하지 않고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함<sup>422)</sup>
- 암호화폐 채굴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고 암호화폐 매매 및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sup>423)</sup>
  - 매매 및 교환은 법정화폐와의 교환이나 암호화폐 간 교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등을 의미함
  - 과세소득 구간별로 15%, 23%의 누진세율로 개인 소득세를 과세함<sup>424)</sup>

---

421) IBFD, "Cyprus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21 July 202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cy\\_s\\_1.&refresh=1722920918076%23ita\\_cy\\_s\\_1.7](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cy_s_1.&refresh=1722920918076%23ita_cy_s_1.7).

422) PWC, 2024, p. 54

423) <https://blog.millionero.com/blog/tax-on-cryptocurrencies-in-the-czech-republic-everything-you-need-to-know-before-investing/>, 검색일자: 2024. 8. 6.

424) 23%의 세율은 연평균 급여(2024년 기준 1,582,812체코 크로나)의 3배를 초과하는 소득구간에 적용함(IBFD, "Czech Republic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0 July 202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b\\_cz\\_s\\_1.&refresh=1722919304712%23gthb\\_cz\\_s\\_1.6](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b_cz_s_1.&refresh=1722919304712%23gthb_cz_s_1.6). 검색일자: 2024. 8. 6.)

## 7. 덴마크

- 덴마크는 암호자산 과세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을 도입하지 않고 세법상 일반 원칙을 적용함<sup>425)</sup>
  - 상업적 규모에 따라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취미소득 (hobbies income)으로 처리함<sup>426)</sup>
  -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투기적 활동으로 간주하여 최고 52.07%의 누진세율(지방세 포함)을 적용함<sup>427)</sup>
    -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취급하여 암호화폐 처분으로 인한 소득을 자본 이득과 유사하게 과세함
  - 덴마크 과세당국은 스테이킹, 에어드롭, 하드포크에 대한 구체적 유권해석을 공개하지 않음

## 8. 에스토니아

- 에스토니아는 암호화폐 과세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을 도입하지 않고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함<sup>428)</sup>
- 암호화폐 채굴은 일반적으로 사업활동으로 간주하며 채굴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20%의 세율로 과세함
  - 스테이킹 보상은 취득 시 과세하며, 에어드롭이나 하드포크로 취득한 암호화폐는

425) PWC, 2024, p. 57

426) Zhang, Laney, et al., 2021, p. 28

427) 덴마크는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의 총 세율은 52.07%의 한도를 적용받는데 최고 소득세 27.10%와 최고 지방 소득세 25.067%의 총 세율은 52.07%로 제한함(Bloomberg Tax, "Country Portfolio"; Bloomberg Tax, "Cryptocurrency Definitions and Taxation Roadmap," 2023. 9. <https://skat.dk/en-us/individuals/shares-and-securities/tax-on-cryptocurrency-know-the-rules-and-avoid-a-tax-bill>). 전통적인 자산에 대한 자본소득은 최대 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함

428) PWC, 2024, p. 60

처분 시 과세함<sup>429)</sup>

- 암호화폐 매매나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며 20%의 세율을 적용함
  - 법정화폐와 교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암호화폐 간 교환으로 인한 소득임
  - 세무목적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자산의 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

## 9. 핀란드<sup>430)</sup>

- 핀란드는 가상화폐 과세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을 도입하지 않고 세법상 일반 원칙을 적용함<sup>431)</sup>
- 핀란드는 가상화폐의 용도와 취득방법에 따라 획득소득 또는 자본자산으로부터의 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 처리함<sup>432)</sup>
  - 작업증명 프로토콜이나 마이닝을 통해 취득한 가상화폐는 획득소득(earned income)으로 처리함
    - 획득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4~44%의 누진세율을 적용함
  - 지분 증명 프로토콜이나 스테이킹의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기반을 둔

429) Crypto Tax Platform, "Guide to declaring crypto taxes in Estonia (2024)," <https://divly.com/en/guides/estonia-crypto-taxes>, 검색일자: 2024. 8. 6.

430) [https://www.vero.fi/sv/Detaljerade\\_skatteanvisningar/anvisningar/48411/beskattning-av-virtuella-valutor3/](https://www.vero.fi/sv/Detaljerade_skatteanvisningar/anvisningar/48411/beskattning-av-virtuella-valutor3/)

431) 현재 가상화폐 과세 처리는 2020년 1월 공개한 핀란드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이루어짐 (Vero, "Taxation of Virtual Currencies (Jan. 22, 2020)," <https://perma.cc/CP4W-5BZD> (most recent English translation), <https://perma.cc/T8Z4-CHJW> (official version in Finnish), <https://perma.cc/RDB3-JHQ5>, 검색일자: 2024. 8. 5.)

432) 자본 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으로 배당금, 이자, 자본이득(양도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특정주식계좌 이익, 사업소득 등 특정부문을 포함하며, 획득소득(earned income)은 자본소득이 아닌 모든 소득을 의미함

- 소득으로 보고 새로운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시점에 자본소득으로 과세함
- 하드포크를 통해 취득하는 가상화폐는 취득원가를 영(0)으로 하여 가상화폐의 처분 시 소득세를 과세함
  - 가상화폐와 법정화폐 간 교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의 이전, 가상화폐 간 교환 등으로 인한 소득은 핀란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자본소득(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30% 또는 34%의 세율을 적용함<sup>433)</sup>
    - 핀란드 소득세법 제48조 제6항에 따라 과세연도 중 과세대상 양도자산<sup>434)</sup>의 양도소득 총액이 1,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과세의 적용을 배제함
    - 개인 납세자의 경우 실제 취득원가가 아닌 양도가액의 20%(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40%)로 계산한 추계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을 산출함
  - 한편 가상화폐 채굴 및 거래를 상당한 규모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10. 프랑스

- 프랑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조세일반법(CGI) 제150 VH bis조에 따라 디지털자산 관련 소득을 소득세 과세함<sup>435)</sup>
  -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매매소득은 자본소득으로 보고 해당 과세연도 자본 소득 총액이 305유로 이상인 경우 12.8%의 소득세율로 과세함
    - 17.2%의 사회보장기금을 추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며, 누진세율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음
  - 암호화폐 거래 활동이 전문 투자자의 활동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비상업소득(기

433) 자본소득 과세표준이 30,000유로 이하는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30,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34%의 세율을 적용함

434) 주거용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하고, 가재도구의 처분으로 인한 이익은 과세연도 중 5,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함. 이 외 재산에서 발생한 처분이익은 1,000 유로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IBFD, "Finland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202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b\\_fi\\_auth&refresh=1722835085739%23gthb\\_fi\\_auth](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b_fi_auth&refresh=1722835085739%23gthb_fi_auth), 검색일자: 2024. 8. 6.)

435) 프랑스 소득세법(CGI) 제154조 VH bis

타소득)으로 보고 11~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함<sup>436)</sup>

-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소득은 상업소득으로 누진세율을 과세함<sup>437)</sup>
- 프랑스는 DLT 기반 증권토큰의 발행을 허용하는데, 증권토큰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여 과세함<sup>438)</sup>
  - 보유 중에 발생한 소득과 매매로 인한 자본소득은 모두 12.8%의 세율(사회보장기금 17.2% 별도)로 소득세 과세하며, 누진세율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음

## 11. 독일

- 독일은 암호자산에 관한 구체적인 법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함
  - 현재 암호자산 과세처리는 2022년 과세당국이 발행한 유권해석을 토대로 이루어짐
- 가상화폐 관련 활동의 사업성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 사업소득에는 가상화폐 채굴, 렌딩, 에어드롭으로 인한 소득도 포함함
  - 사업과 관련 없이 에어드롭으로 수령하는 가상화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으며, 과세기간 중 기타소득 총액이 256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함
  - 가상화폐가 비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 가상화폐의 매매 및 교환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기타소득(양도소득) 총액이 연

436) 10,777 유로 이하 과세소득은 소득세 면세하며, 9.7%의 사회보장기금은 포함하지 않음(EY,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2023-24, p. 481, [https://assets.ey.com/content/dam/ey-sites/ey-com/en\\_gl/topics/tax/tax-pdfs/2024/ey-worldwide-personal-tax-and-immigration-guide-april-2024-v1.pdf#page=472](https://assets.ey.com/content/dam/ey-sites/ey-com/en_gl/topics/tax/tax-pdfs/2024/ey-worldwide-personal-tax-and-immigration-guide-april-2024-v1.pdf#page=472), 검색일자 2024. 8. 19.)

437) <https://www.globallegalinsights.com/practice-areas/blockchain-laws-and-regulations/france/>, 검색일자 2024. 8. 9.

438)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토큰 등에 대한 과세제도를 달리 공개한 바는 없지만, 금융상품의 자본이득에 대한 기존 소득세제의 범주에서 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12.8%의 정액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임

1,000유로 미만인 경우 비과세함

○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은 14%~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함

□ 유틸리티 토큰의 매매 및 교환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양도소득)으로 과세함

□ 독일은 증권 토큰의 발행을 허용하는데, 증권 토큰에 구현한 법적 권리의 성격에 따라 자본자산 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함

○ 재무적 청구권을 구현한 경우에는 금융채권으로 보고 증권 토큰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은 경상자본소득으로 과세하고 매매로 인한 소득은 25%의 세율로 자본이득으로 과세함

○ 현물 혜택에 대한 청구권을 구현한 경우에는 14%~45%의 누진세율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12. 그리스

□ 그리스는 현재 암호자산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sup>439)</sup>

## 13. 헝가리

□ 헝가리는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암호자산 관련 소득을 과세하며 암호자산 매매 및 교환으로 인한 자본소득은 15%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함<sup>440)</sup>

439) 2024년 2월 29일자 그리스 재무부는 암호화폐 및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 및 통제 체계 수립을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함(Vassilis Dafnomilis, Greece Establishes Working Group for Cryptocurrency, Digital Asset Taxation Framework,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3-05\\_gr\\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3-05_gr_1.html), 검색일자 2024. 7. 31.)

440) 헝가리 소득세법(LIIT) section 67/C; 암호화폐 거래소 외부에서의 거래는 15%의 소득세 외 13%의 사회보장세를 부과함: <https://gurcanpartners.com/latest-cryptocurrency-regulations-in-hungary/>, 검색일자 2024. 8. 19.

- 법정통화로 교환하거나 또는 상품 또는 재화를 교환하는 경우 자본소득으로 과세하며 암호자산 간 교환은 제외함
- 채굴, 스테이킹, 디파이 등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법정통화로 교환하여 소득 실현한 경우에 자본소득으로 과세함

## 14. 아일랜드

- 아일랜드는 암호자산에 관한 구체적인 법규 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함<sup>441)</sup>
  - 개인 납세자의 암호자산 매매 또는 거래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20%,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개인 납세자에게 발생한 암호자산의 처분으로 소득은 일반적으로 자본소득으로 처리하여 자본소득 면세기준인 1,270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33%의 단일세율을 적용함
  - 아일랜드는 암호화폐 채굴, 에어드롭, 스테이킹, 하드포크 등으로 획득하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소득세 처리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공개한 바 없음

## 15. 이탈리아

- 2023년 이전까지 암호자산 관련 소득에 대해 외환거래와 유사하게 처리한다는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을 통해 소득세를 과세함
  - 암호화폐 거래를 외환거래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소득세를 과세함<sup>442)</sup>
    - 1년 중 최소 7일 연속 영업일 동안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암호자산 총가치가

441) Irish Tax and Customs, "Taxation of Crypto-Asset Transactions(Part 02-01-03),"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tdm/income-tax-capital-gains-tax-corporation-tax/part-02/02-01-03.pdf>

442) 이탈리아 소득세(Testo unico delle imposte sui redditi, TUIR) 제67조

- 51,645.69유로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26%의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함
- 그러나 2022년 이탈리아 대법원이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결한 후 접근방식에 변화를 보임
    - 대법원은 ‘투자자가 재정수익을 기대하면서 자산에 대한 취득비용을 지불하는 투자금의 수준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위험을 수반하는 암호 자산은 금융 상품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함<sup>443)</sup>
  - 이탈리아는 2023년 예산법<sup>444)</sup>을 통해 구체적인 암호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 2023년 1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자산의 교환, 상환, 매매로 인한 소득은 2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26%의 세율로 과세함<sup>445)</sup>
      -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가진 암호자산 간 교환은 과세사건으로 보지 않음
      - 자본손익 간 통산은 허용하며, 통산 후 2천유로를 초과하는 자본손실은 4년간 차기 이월하여 통산함
      - 암호자산 보유단계에서 발생한 소득과 자본손실 간 통산은 할 수 없음
  - 그리고 납세자의 암호자산 신고의무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sup>446)</sup>
    - 2023년 이전부터 보유하는 암호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2023년 1월 1일 현재 시가로 상향 조정하고, 그 상향 조정액에 대해 14%의 소득세가 부과하는 대체소득세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암호자산 보유 및 관련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소득세 감면규정을 도입함<sup>447)</sup>

443) Supreme Court of Cassation Case No. 44378, Nov. 22, 2022.

444) Law No. 197, Dec 29, 2022, Art 1 (126-137)

445) “Trattamento fiscale delle cripto-attività, Commento alla Circolare 27 ottobre 2023, n.30/E,” [https://it.andersen.com/wp-content/uploads/2023/11/circolare\\_criptoattivita.pdf](https://it.andersen.com/wp-content/uploads/2023/11/circolare_criptoattivita.pdf), 검색일자: 2024. 7. 30.

446) Law No. 197, Dec 29, 2022, Art 1 (138-143).

447) 미신고 암호자산 관련 소득에 대해 납세자에게 해당 암호자산의 연말 가치 또는 처분일 현재 가치

## 16. 라트비아

- 라트비아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가상화폐를 자본이득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본자산으로 정의함<sup>448)</sup>
  -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자본소득은 20%의 세율로 과세하며 다른 자본자산과 손익 통산은 허용하지 않음<sup>449)</sup>
  - 가상화폐 채굴 활동이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20~31%의 누진세율을 적용함

## 17. 리투아니아

- 리투아니아는 암호자산에 관한 구체적인 법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세법상 일반 원칙을 적용함<sup>450)</sup>
  - 가상화폐 채굴을 포함한 활동이 영리목적を 가지고 지속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가상화폐와 토큰 관련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20%, 32%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음
  - 가상화폐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기타자산(양도소득)으로 15% 또는 20%의 세율로

에 대해 3.5%의 소득세와 해당 암호자산 가치의 0.5%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부과함(Law No. 197, Dec 29, 2022, Art 1 (138-143)).

448) 라트비아 개인소득세법(ITL) 제119조 (2); IBFD, “Latvia - Private Investment Income - Country Tax Guides - 1. Taxation of Resident Individuals (Last Reviewed: 1 May 202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pi\\_lv\\_s\\_1.2.4.%23epi\\_lv\\_s\\_1.2.5.](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pi_lv_s_1.2.4.%23epi_lv_s_1.2.5.), 검색일자: 2024. 8. 6.

449) PWC, 2024, p. 113

450) 리투아니아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과세 처리가 이루어짐(<https://www.vmi.lt/evmi/documents/20142/391185/Paa%C5%A1kinimas+d%C4%97I+virtuali%C5%B3++RM-21969.pdf/30a8e9a1-132d-5f91-314c-64ff290f8d8b?t=1545390441331>; <https://www.vmi.lt/evmi/documents/20142/391071/Virtualios+valiutos+GPM.PDF/954957f9-18f5-1ec9-8c77-fa79d956c6d8?t=1664350832765>; <https://www.vmi.lt/evmi/documents/20142/391200/Virtualios+valiutos++apmokestinimas++pelno+mokes%C4%8Diu/18d516ab-3a1b-3c21-260d-201e9cc1a64d?t=1664351971890>)

소득세를 과세함

- 과세연도 중 2,5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함
- 증권으로 간주하는 토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15%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양도소득이 과세연도 중 5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함

## 18. 룩셈부르크

- 룩셈부르크는 암호자산에 관한 구체적인 법규 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세법상 일반 원칙을 적용함<sup>451)</sup>
- 가상화폐 매매 및 채굴 활동의 사업성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가상화폐 매매 및 채굴 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독립적인 영리 활동으로 농업, 임업, 자유직업활동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sup>452)</sup> 가상화폐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사업소득은 1.14~34.55%의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함
  - 그러나 채굴 활동이 상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sup>453)</sup>
    -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총액이 500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함
- 한편 가상화폐 매매나 교환으로 인한 소득은 사적 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투기 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자본이득)으로 과세함<sup>454)</sup>
  - 가상화폐와 법정화폐 간 교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

451) 암호자산 소득세 처리는 과세당국이 2018년 7월 26일자로 공개한 유권해석을 토대로 함("Circulaire du directeur des contributions, L.I.R. No. 14/5 - 99/3 - 99bis/3 du 26 juillet 2018, July 26, 2018," <https://perma.cc/93FC-Z7M8>)

452) 룩셈부르크 소득세법(LIR) 제14조에서 정하는 상업소득의 요건으로 가상화폐 채굴, 가상화폐의 온라인 교환 운영, 가상화폐의 자동 배포 등은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

453) 룩셈부르크 소득세법(LIR) 제99조

454) 룩셈부르크 소득세법 제99bis조

의 교환, 가상화폐 간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함

- 가상화폐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총액이 500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함
  - 투기소득은 자본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자본소득공제(최대 50,000유로)나 인플레이션 재평가 등은 허용하지 않음
  - 기타소득은 1.14~34.55%의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함

## 19. 몰타

- 몰타는 암호자산 과세는 암호자산에 관한 구체적인 법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함<sup>455)</sup>
  - 몰타 과세당국은 분산원장기술(DLT)자산을 코인(coins),<sup>456)</sup> 금융 토큰,<sup>457)</sup> 유틸리티 토큰<sup>458)</sup>으로 구분하고 DLT 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활동의 특성, 당사자의 지위, 개별 사례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함
- 코인 또는 암호화폐 거래가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15~3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코인의 자본소득은 비과세함
  - 코인 교환 사업에서 실현한 이익은 법정화폐 환전업과 동일하게 과세함
  - 사업목적으로 보유한 코인의 매매소득 및 암호화폐 채굴에서 발생한 소득은 경상

455) 몰타는 2018년 분산원장기술(DLT)자산의 과세에 대한 지침을 발표함(Commissioner for Revenue, "Guidelines on the Income Tax Treatment of Transactions or Arrangements Involving DLT Assets (Nov. 1, 2018)," <https://perma.cc/9DMA-LYUL>, 검색일: 2024. 8. 6.). 본문은 지침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456) 코인은 발행인의 프로젝트 및 자본과 관련이 없고, 그 유용성, 가치 또는 응용 프로그램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증권의 특성을 전혀 갖지 않는 DLT 자산으로 지불 수단이나 교환 매체로 사용되도록 설계되었거나 가치 저장소로 기능하는 암호화폐임

457) 금융 토큰은 주식, 사채, 집합 투자 제도의 단위 또는 파생 상품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DLT 자산을 말하며 금융 상품을 포함하며 증권 토큰, 자산 토큰, 자산준거토큰이라 함

458) 유틸리티 토큰의 이용, 가치 및 적용은 제한된 DLT 플랫폼 네트워크 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하는 데만 국한하며 증권의 특성이 없음

### 소득으로 과세함

- 금융 토큰 또는 유틸리티 토큰의 양도는 사업상 거래 또는 자본자산의 양도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처리를 달리함
  - 사업상 거래(trading transactions)인 경우 토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사업상 거래가 아닌 경우, 토큰이 소득세법상 증권<sup>459)</sup>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자본소득으로 과세하며 누진세율을 적용함
  -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토큰의 양도는 자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 20. 네덜란드<sup>460)</sup>

- 네덜란드는 암호자산에 관한 구체적인 법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함<sup>461)</sup>
- 암호화폐 관련 소득은 사업목적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Box 1) 또는 저축/투자소득(Box 3)으로 구분하여 과세함<sup>462)</sup>
  - 암호화폐 관련 소득이 사업활동 및 근로활동과 연계된 경우 고용/사업소득(Box 1)

459) 증권성은 몰타 소득세법 제5조에 따라 토큰이 회사 이익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고 수익률이 고정 수익률에 국한되지 않는지, 또는 집합 투자 계획의 단위 또는 보험과 연계된 장기 사업과 관련된 단위와 같은 도구인지 여부로 결정함

460) Belastingdienst, "Cryptovaluta (zoals bitcoins)," <https://www.belastingdienst.nl/wps/wcm/connect/nl/werk-en-inkomen/content/cryptovaluta>, 검색일자: 2024. 7. 30.; Bloomberg Tax, "Cryptocurrency Definitions and Taxation Roadmap," 2023. 9.

461) Ministry of Finance, "Beantwoording vragen vaste CIE Financiën fiscale aspecten cryptovaluta, Kamerstukken I 2017/18, 34 775 and 34 700," <https://zoek.officielebekendmakingen.nl/kst-34775-AA.html>

462) 네덜란드는 과세소득을 세 가지 범주(Box)로 구분하고 범주에 속하지 않는 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각 범주별 소득계산방법과 세율을 달리 적용함. Box 1에는 고용, 사업 활동, 기타 활동, 정기적 지불 및 소유자 거주 주택 등으로 인한 소득을 포함하고 Box 3으로 구분하는 소득은 부동산, 배당, 상당한 수준의 주식 관련 자본이득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Box 1과 Box 2로 과세)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자본소득을 포함함((Aleksandra Bal, 2019, p. 223)

으로 최고 49.5%의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함

- 그 외 개인 납세자의 암호화폐 관련 모든 소득은 저축/투자소득(Box 3)으로 분류하여 32%의 세율로 부유세(wealth tax)를 부과함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는 순 자산액이 57천유로(배우자 합산 114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21. 폴란드

- 폴란드는 암호자산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법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세법상 일반 원칙을 적용함<sup>463)</sup>
  - 2024년 암호자산 과세를 위한 세법 개정을 준비 중임<sup>464)</sup>
- 폴란드는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을 자본 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 처리함
  - 암호화폐 매매로 인한 소득은 자본 소득과 유사하게 처리하여 19%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함
  - 거래 활동이 상업성을 지닌 경우 비농업 사업소득으로 12%, 32%의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19%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sup>465)</sup>

463) Krajowa Administracja Skarbowa (KAS), "Skutki podatkowe obrotu kryptowalutami w PIT, VAT i PCC," [https://mf-arch2.mf.gov.pl/web/bip/ministerstwo-finansow/wiadomosci/aktualnosci/-/asset\\_publisher/M1vU/content/skutki-podatkowe-obrotu-kryptowalutami-w-pit-vat-i-pcc?redirect=https%3A%2F%2Fmf-arch2.mf.gov.pl%2Fweb%2Fbip%2Fministerstwo-finansow%2Fwiadomosci%2Faktualnosci%3Fp\\_p\\_id%3D101\\_INSTANCE\\_M1vU%26p\\_p\\_lifecycle%3D0%26p\\_p\\_state%3Dnormal%26p\\_p\\_mode%3Dview%26p\\_p\\_col\\_id%3Dcolumn-2%26p\\_p\\_col\\_count%3D1%26\\_101\\_INSTANCE\\_M1vU\\_advancedSearch%3Dfalse%26\\_101\\_INSTANCE\\_M1vU\\_keywords%3D%26\\_101\\_INSTANCE\\_M1vU\\_delta%3D20%26\\_101\\_INSTANCE\\_M1vU\\_cur%3D6%26\\_101\\_INSTANCE\\_M1vU\\_andOperator%3Dtrue](https://mf-arch2.mf.gov.pl/web/bip/ministerstwo-finansow/wiadomosci/aktualnosci/-/asset_publisher/M1vU/content/skutki-podatkowe-obrotu-kryptowalutami-w-pit-vat-i-pcc?redirect=https%3A%2F%2Fmf-arch2.mf.gov.pl%2Fweb%2Fbip%2Fministerstwo-finansow%2Fwiadomosci%2Faktualnosci%3Fp_p_id%3D101_INSTANCE_M1vU%26p_p_lifecycle%3D0%26p_p_state%3Dnormal%26p_p_mode%3Dview%26p_p_col_id%3Dcolumn-2%26p_p_col_count%3D1%26_101_INSTANCE_M1vU_advancedSearch%3Dfalse%26_101_INSTANCE_M1vU_keywords%3D%26_101_INSTANCE_M1vU_delta%3D20%26_101_INSTANCE_M1vU_cur%3D6%26_101_INSTANCE_M1vU_andOperator%3Dtrue), 검색일자: 2024. 8. 6.

464) <https://www.infor.pl/twoje-pieniadze/kryptowaluty/6504878.kryptowaluty-w-polsce-w-koncu-beda-uregulowane-ustawa-a-co-z-podatkami.html>

465) IBFD, "Poland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 22. 포르투갈

- 포르투갈은 2023년 예산법을 통해 암호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 처리 규정을 마련함<sup>466)</sup>
  - 2023년 이전까지 암호자산 관련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자본소득 또는 투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과세하지 않음<sup>467)</sup>
    - 다만 암호자산 관련 활동이 사업 또는 전문적 활동의 일부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포르투갈은 암호자산 관련 소득을 사업소득, 투자소득, 자본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함<sup>468)</sup>
  - 사업 또는 전문적 활동으로 인한 암호자산 관련 소득은 사업소득(범주 B)으로 보고 13.25~48%의 누진세율로 과세함<sup>469)</sup>
  - 사업 또는 전문적 활동 외 스테이킹과 같이 암호자산 운영에서 발행하는 소득은 투자소득(범주 E)으로 분류하고 암호자산 매매 및 교환으로 인한 소득은 자본소득(범주 G)으로 분류하며 28%의 단일세율을 적용함
    - 자본소득은 암호자산 보유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함
    - 납세자가 포르투갈 외부 국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암호자산을 매매한 것으로 보고 자본소득을 과세함
  - 각 소득 범주 내에서 손익통산을 허용하며, 모든 범주별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누

(Last Reviewed: 20 June 202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pl\\_s\\_1.10.2.&refresh=1722924817100%23ita\\_pl\\_s\\_1.10.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pl_s_1.10.2.&refresh=1722924817100%23ita_pl_s_1.10.1).

466) “Art. 218 of sec. I, Ch. I 2023 State Budget Law.” <https://diariodarepublica.pt/dr/detalhe/lei/24-d-2022-205557192>;

467) “포르투갈 국세청 유권해석 5717/2015,” [https://info.portaldasfinancas.gov.pt/pt/informacao\\_fiscal/informacoes\\_vinculativas/rendimento/cirs/Documents/PIV\\_09541.pdf](https://info.portaldasfinancas.gov.pt/pt/informacao_fiscal/informacoes_vinculativas/rendimento/cirs/Documents/PIV_09541.pdf)

468) CMS, “CRYPTO TAX LEGISLATION & LAW IN PORTUGAL,” <https://cms.law/en/int/expert-guides/cms-expert-guide-on-taxation-of-crypto-assets/portugal>, 검색일자: 2024. 7. 31.

469) 전문적 소득이 200천유로 이하인 경우 암호자산 채굴 활동으로 발행하는 소득의 95%, 기타 암호자산 관련 거래로 인한 소득의 15%를 과세소득으로 봄

진세율을 적용함

## 23. 루마니아

- 루마니아는 암호자산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법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세법상 일반 원칙을 적용함<sup>470)</sup>
- 암호화폐 거래 활동을 통해 얻은 자본소득이나 기타소득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함<sup>471)</sup>
  - 회계연도 동안의 총수입이 600레우를 초과하지 않는 한 거래당 200레이 미만의 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 24. 슬로바키아

- 슬로바키아는 암호자산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법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1일부터 암호화폐 매매, 채굴, 교환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sup>472)</sup>
  -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간 교환과 자산 또는 서비스와의 교환 외 암호화폐 간 교환으로 인한 소득도 과세함<sup>473)</sup>
  - 기타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9% 또는 25%임
- 2023년 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개인 납세자의 가상화폐 관련 소득에

470) Koinly, "Crypto Tax Guide Romania 2024 [Taxe Crypto Romania]," <https://koinly.io/guides/crypto-tax-romania/>, 검색일자: 2024. 8. 6.

471) ANAF, "Broșură privind tratamentul fiscal al veniturilor realizate de persoanele fizice din transferul de monedă virtuală," [https://static.anaf.ro/static/10/Anaf/AsistentaContribuabili\\_r/Brosusa\\_Criptomonede\\_2023.pdf](https://static.anaf.ro/static/10/Anaf/AsistentaContribuabili_r/Brosusa_Criptomonede_2023.pdf), 검색일자: 2024. 8. 5.

472) <https://rue.ee/blog/cryptocurrency-taxation-in-slovakia/>, 검색일자: 2024. 7. 31.

473) 슬로바키아 소득세법 제2조 제(a)항 제(i)호

대한 과세 부담을 경감함<sup>474)</sup>

- 암호자산 관련 소득은 2,4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과세함
- 그리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은 7%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함<sup>475)</sup>
  - 1년 미만인 경우 19% 또는 25%의 세율을 적용함

## 25. 슬로베니아

- 슬로베니아는 암호자산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법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세법상 일반 원칙을 적용함<sup>476)</sup>
- 슬로베니아는 가상화폐 관련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자본소득으로 과세 처리함
  - 가상화폐 거래 및 채굴로 인한 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고 16~50%의 누진세율로 과세함
  - 가상화폐가 소득세법에 따른 자본자산에 해당하지 않거나 파생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경우 가상화폐 매매 및 교환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증권 및 기타 주식, 투자펀드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소득만 과세 자본소득으로 규정하고, 적용세율은 25%임<sup>477)</sup>

474) Finančné riaditeľstvo SR, “20/DZPaU/2023/I Informácia o novele zákona č. 595/2003 Z. z. o dani z príjmov v znení neskorších predpisov,” [https://www.financnasprava.sk/\\_img/pfsedit/Dokumenty\\_PFS/Zverejnovanie\\_dok/Dane/Novinky\\_leg/Priame\\_dane\\_uct/2023/2023.08.03.\\_020\\_DZPaU\\_2023\\_I\\_novel\\_595.pdf](https://www.financnasprava.sk/_img/pfsedit/Dokumenty_PFS/Zverejnovanie_dok/Dane/Novinky_leg/Priame_dane_uct/2023/2023.08.03._020_DZPaU_2023_I_novel_595.pdf), 검색일자: 2024. 7. 31.

475) Zákon, “ktorým sa mení a dopĺňa zákon č. 595/2003 Z. z. o dani z príjmov v znení neskorších predpisov a ktorým sa menia a dopĺňajú niektoré zákony 315/2023 účinný od 01.01.2024,” <https://zakony.judikaty.info/predpis/zakon-315/2023/audit-dovodove-spravy>, 검색일자 2024. 7. 31.

476) PWC, 2024, p. 179

477) IBFD, “Slovenia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Last Reviewed: 1 March 202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i\\_s\\_1.7.&refresh=1722926287601%23ita\\_si\\_s\\_1.7](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si_s_1.7.&refresh=1722926287601%23ita_si_s_1.7).

## 26. 스페인

- 스페인은 암호자산 과세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의 도입은 하지 않고 세법상 일 반원칙을 적용함<sup>478)</sup>
  - 암호자산의 매매 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 이득은 저축 소득<sup>479)</sup>으로 간주되 여 19~28%의 누진세율로 과세함
  - 사업목적으로 암호자산 관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19~47%의 누진세율을 적 용함
    - 암호화폐 채굴에서 획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과세함

## 27. 스웨덴

- 스웨덴은 암호자산 과세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의 도입은 하지 않고 세법상 일 반원칙을 적용함<sup>480)</sup>
- 암호화폐 채굴은 일반적으로 취미 활동으로 보고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 지만 암호화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적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관련 소득은 20.6% 의 세율로 소득세 과세함

478) 법률(Law 11/2021)의 제정을 통해 스페인과 국외에서 보유하는 암호자산 신고제도를 도입함 (<https://cms.law/en/int/expert-guides/cms-expert-guide-on-taxation-of-crypto-assets/spain>, 검색일자: 2024. 7. 31.); Agencia Tributaria, "Buying and selling virtual currencies: taxation in the investor's personal income tax," [https://sede.agenciatributaria.gob.es/Sede/en\\_gb/ayuda/manuales-videos-folleto/manuales-practicos/irpf-2021/capitulo-11-ganancias-perdidas-patrimoniales/monedas-virtuales/compra-venta-monedas-virtuales-tributacion-inversor.html](https://sede.agenciatributaria.gob.es/Sede/en_gb/ayuda/manuales-videos-folleto/manuales-practicos/irpf-2021/capitulo-11-ganancias-perdidas-patrimoniales/monedas-virtuales/compra-venta-monedas-virtuales-tributacion-inversor.html), 검색일자: 2024. 7. 31.

479) 저축소득은 (i) 동산 소득(배당금, 이자, 금전적 수익, 생명 또는 장애 보험 계약에 대한 현물 급여) 과 (ii) 자산 양도 시 발생하는 손익으로 구성함(스페인 소득세법(LIRPF) 제46조)

480) Skatteverket, "Särskilt om kryptotillgångar i inkomstslaget kapital," <https://www4.skattverket.se/rattsligvagledning/409288.html>, 검색일자: 2024. 8. 19.

- 암호자산 보유로 발생하는 소득(유동성 풀, 스테이킹)은 소득 범주의 자본으로 포함하고 처분 시 과세함
-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세무상 기타 자산으로 분류하여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소득은 3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함<sup>481)</sup>
  - 암호자산 간 교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가, 암호자산 대여(대출)는 자산의 처분으로 간주함
  - 기타 자산에 대해 70%의 자본손실 공제를 허용함

---

481) 스웨덴 소득세법 제52장. Skatteverket 유권해석, “Beskattning av bitcoin och andra s.k. virtuella valutor i inkomstslaget kapital (2014-04-23, dnr 131 212709-14/111),” <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327766.html?date=2014-04-23>

〈표 2〉 EU 회원국별 암호자산 과세제도

국가	암호화폐		DLT 기반 증권 <sup>1)</sup>
	과세	세율/보유기간/면세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호화폐 과세를 위해 오스트리아 소득세법(EStG) 제27b조 도입함</li> <li>• 2022년 3월 1일부터 암호화폐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함</li> <li>• 하드포크, 에어드롭으로 취득한 암호화폐는 신규 취득으로 처리함</li> <li>•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소득은 경상소득으로 과세하고, 암호화폐 이용자에게 발생한 암호화폐 관련 소득은 자본자산소득으로 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소득 및 자본자산소득 27.5%</li> <li>• 암호화폐 대여 소득 20~50%의 누진세율</li> <li>• 암호화폐 자본자산소득은 다른 자본자산소득과 통산할 수 없음</li> <li>• 암호화폐 간 교환은 과세하지 않음(출구세 대상에 해당함)</li> </ul>	-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법상 일반원칙으로 과세함</li> <li>• 암호화폐 관련 전문적 활동으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함</li> <li>• 비전문적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li> <li>•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롭, 하드포크 관련 과세 처리는 명확하지 않음</li> <li>• NFT 거래 소득은 자본이득으로 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소득 25~50%의 누진세율</li> <li>• 기타소득 33%</li> <li>• 자본이득 33%</li> <li>• 사적재산의 정상적인 관리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비교세할</li> </ul>	-

〈표 2〉의 계속

국가	암호화폐		DLT 기반 증권 <sup>1)</sup>
	과세	세율/보유기간/면세	
불가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법상 일반원칙으로 과세함</li> <li>• 암호자산 활동이 진문적 활동으로 간주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함</li> <li>• 암호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으로 인한 소득은 금융자산 소득으로 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소득 15%</li> <li>• 금융자산 소득 10%</li> </ul>	-
크로아티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법상 일반원칙으로 과세함</li> <li>• 암호화폐 활동은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li> <li>• 암호화폐의 매매, 교환으로 인한 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과세표준 별로 15~23.6%, 25~35.4%</li> <li>• 금융소득 12%</li> <li>• 보유기간 2년 이상 비과세함</li> <li>• 암호화폐 간 교환은 과세하지 않음</li> </ul>	-
사이프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법상 일반원칙으로 과세함</li> <li>• 부동산을 제외한 자본소득은 비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소득 19,500유로 초과 소득 20~35%의 누진세율</li> </ul>	-
체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법상 일반원칙으로 과세함</li> <li>• 암호화폐 채굴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함</li> <li>• 암호화폐 매매 및 교환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소득 구간별로 15%, 23%의 누진세율</li> </ul>	-

〈표 2〉의 계속

국가	암호화폐		DLT 기반 증권 <sup>1)</sup>
	과세	세율/보유기간/면세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법상 일반원칙으로 과세함</li> <li>• 암호화폐 채굴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취미소득으로 과세함</li> <li>• 암호화폐 채분 소득은 투자자산의 처분 소득으로 처리함</li> <li>• 세법상 일반원칙으로 과세함</li> <li>•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함</li> <li>• 스테이킹 보상은 취득 시 과세하고, 에어드롭이나 하드포크로 취득한 암호화폐는 처분 시 과세함</li> <li>• 암호화폐 매매 및 교환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산 처분소득 52.07%(지방세 포함)의 누진세율</li> </ul>	-
에스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법상 일반원칙으로 과세함</li> <li>• 가상화폐 채굴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함</li> <li>• 스테이킹 보상은 취득 시 과세하고, 에어드롭이나 하드포크로 취득한 암호화폐는 처분 시 과세함</li> <li>• 암호화폐 매매 및 교환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함</li> <li>• 세법상 일반원칙으로 과세함</li> <li>• 가상화폐 채굴로 인한 소득은 획득소득으로 과세함</li> <li>• 자본증명 프로토콜이나 스테이킹으로 취득한 가상화폐는 보유시점에 자본소득으로 과세함</li> <li>• 하드포크를 통해 취득한 가상화폐는 처분 시 과세함</li> <li>• 가상화폐 매매, 교환, 이전 등으로 인한 소득은 자본소득으로 과세함</li> <li>• 가상화폐 채굴이나 거래가 상당한 규모로 영위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소득 20%</li> <li>• 양도소득 20%</li> <li>• 암호화폐 매매 등으로 인한 양도차손익은 다른 자산의 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li> </ul>	-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법상 일반원칙으로 과세함</li> <li>• 가상화폐 채굴로 인한 소득은 획득소득으로 과세함</li> <li>• 자본증명 프로토콜이나 스테이킹으로 취득한 가상화폐는 보유시점에 자본소득으로 과세함</li> <li>• 하드포크를 통해 취득한 가상화폐는 처분 시 과세함</li> <li>• 가상화폐 매매, 교환, 이전 등으로 인한 소득은 자본소득으로 과세함</li> <li>• 가상화폐 채굴이나 거래가 상당한 규모로 영위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득소득 12.64~44%의 누진세율</li> <li>• 자본소득 30% 또는 34%</li> <li>• 개인 가상화폐의 취득원가 공제는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양도가액의 20%(10년 이상 보유 시 40%)로 계산한 추계액으로 공제함</li> </ul>	-

〈표 2〉의 계속

국가	암호화폐		DLT 기반 증권 <sup>1)</sup>
	과세	세율/보유기간/면세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9년 1월 1일부터 조세일반법(CGI) 제150 VH bis조에 따라 디지털자산 관련 소득을 소득세 과세함</li> <li>암호화폐 매매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전문 투자자 활동으로 간주하는 경우 비상업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도소득 12.8%(사회보장세 17.2% 별도)</li> <li>비상업소득 11~45%의 누진세율(사회보장기금 9.7% 별도)</li> <li>디지털자산 간 교환은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LT 기반 증권 토큰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소득으로 과세하며 12.8%(사회보장기금 17.2% 별도)의 세율을 적용함</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법상 일반원칙으로 과세함</li> <li>사업성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소득, 기타소득 14~45%의 누진세율</li> <li>보유기간 1년 이상 소득세 비과세함</li> <li>과세연도 중 기타소득 총액이 1,000 유로(양도) 또는 256유로(기타 역무) 미만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LT 기반 증권은 증권 토큰에 구현한 법적 권리의 성격에 따라 자본자산 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과세함</li> <li>자본자산소득은 25%의 세율을 기타소득은 14~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함</li> </ul>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세 과세하지 않음</li> </ul>	-	-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법상 일반원칙으로 과세함</li> <li>암호자산 매매 및 교환으로 인한 자본소득은 과세함</li> <li>채굴, 스테이킹, 디파이 등 관련 소득은 법정 통화와 교환할 때 자본소득으로 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본소득 15%</li> <li>암호자산 간 교환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li> </ul>	-

〈표 2〉의 계속

국가	암호화폐		DLT 기반 증권 <sup>1)</sup>
	과세	세율/보유기간/면세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법상 일반원칙으로 과세함</li> <li>• 사업성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자본소득으로 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소득 20%, 40%</li> <li>• 자본소득 33%</li> </ul>	-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예산법을 통해 암호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규정을 마련함</li> <li>• 암호자산의 교환, 상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자본소득으로 과세함</li> <li>• 자본소득 간 통산은 허용하지만 암호자산 보유단계에서 발생한 소득과 자본손실은 통산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소득 26%</li> <li>• 암호자산 관련 자본소득 2천유로 미만 비과세함</li> <li>• 암호자산 간 교환은 과세하지 않음</li> </ul>	-
라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트비아 개인소득세법(ITT) 제 11<sup>o</sup>조 (2)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소득세 과세함</li> <li>•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은 자본 소득으로 과세함</li> <li>• 가상화폐 채굴 활동이 사업성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소득 20%</li> <li>• 사업소득 20~31%의 누진세율</li> </ul>	-

〈표 2〉의 계속

국가	암호화폐		DLT 기반 증권 <sup>1)</sup>
	과세	세율/보유기간/면세	
리투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함</li> <li>• 가상화폐 활동이 사업성이 있는 경우 관련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함</li> <li>•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소득은 기타 자산으로 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소득 20%, 32%</li> <li>• 기타소득 15%, 20%</li> <li>• 자본소득 15%</li> <li>• 기타소득의 경우 과세연도 중 2,500유로 이하 비과세, 자본소득의 경우 500유로 이하 비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으로 간주하는 토큰의 양 또는 자본소득으로 과세함</li> </ul>
룩셈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함</li> <li>• 가상화폐 활동은 사업성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과세함</li> <li>• 가상화폐 매매나 교환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소득, 기타소득 1.14~ 34.55%</li> <li>• 보유기간 6개월 이상 소득세 부과</li> <li>• 과세기간 중 가상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총액 500유로 미만 비과세함</li> </ul>	-
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함</li> <li>• 코인 및 암호화폐 거래가 사업성이 있는 경우 경상소득으로 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소득 15~35%의 누진세율</li> <li>• 코인 및 토큰의 양도는 자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상 증권의 정의에 충족하는 금융 토큰 또는 유틸리티 토큰의 양도는 자본소득으로 과세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함</li> <li>•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함</li> </ul>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함</li> <li>•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자취/투자소득으로 과세함</li> <li>• 자취/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부유세 과세함(순 자산액 57천유로 초과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소득 최고 49.5%의 누진세율</li> <li>• 자취/투자소득 32%(부유세)</li> </ul>	-

〈표 2〉의 계속

국가	암호화폐		DLT 기반 증권 <sup>1)</sup>
	과세	세율/보유기간/면세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함</li> <li>• 사업성 유무에 따라 자본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소득 19%</li> <li>• 비농업 사업소득 12%, 32%의 누진세율</li> <li>• 소규모 사업자 19%</li> </ul>	-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예산법을 통해 암호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마련함</li> <li>• 사업성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 투자소득, 자본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함</li> <li>• 암호자산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투자소득으로 구분하고, 암호자산 매매 및 교환으로 인한 소득은 자본소득으로 분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소득 13.25~48%</li> <li>• 투자소득 28%</li> <li>• 자본소득 28%</li> <li>• 자본소득의 경우 보유기간 365일 이상 비과세하며 출국세 과세대상임</li> <li>• 각 소득 범주 내에서 손익통산 허용함</li> </ul>	-
루마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함</li> <li>• 암호화폐 거래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자본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소득, 기타소득 10%</li> <li>• 총수입 600레우 이하인 경우 거래당 200레우 미만 소득은 비과세함</li> </ul>	-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10월 1일부터 슬로바키아 소득세법에 따라 암호자산 관련 소득을 과세함</li> <li>• 암호화폐 매매, 채굴, 교환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소득 19%, 25%</li> <li>• 보유기간 1년 이상 기타소득 7%</li> <li>• 암호자산 관련 소득 2,400유로 이하 비과세함</li> </ul>	-

〈표 2〉의 계속

국가	암호화폐		DLT 기반 증권 <sup>1)</sup>
	과세	세율/보유기간/면세	
슬로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함</li> <li>• 사업성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자본소득 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소득 16~50%의 누진세율</li> <li>• 자본소득 25%</li> <li>• 소득세법상 자본자산(부동산, 증권, 투자펀드)에 해당하지 않거나 파생상품으로 분류하는 가상화폐의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음</li> </ul>	-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함</li> <li>• 사업성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과 저축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소득 19~47%의 누진세율</li> <li>• 저축소득 19~28%의 누진세율</li> </ul>	-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함</li> <li>• 암호화폐는 기타자산으로 분류하고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자본소득으로 과세함</li> <li>•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소득은 사업성 유무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소득 30%</li> <li>• 사업소득 20.6%</li> </ul>	-

주 : 1) 해당 국가에서 DLT 기반 증권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공개한 경우에 한해 기재함  
 자료 : Bloomberg Tax, "Country Portfolio"; Bloomberg Tax, "Cryptocurrency Definitions and Taxation Roadmap," 2023. 9.; 국가별 과세당국 웹사이트; 암호자산 관련 웹사이트 <https://cms.law/>; IBFD, "Country Tax Guides," 2024; PWC(2024),

세법연구 24-01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 EU의 법적 프레임워크 중심으로 -

---

발행 2024년 10월 31일  
저자 홍병진 · 박수진 · 김민경  
발행인 이영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ISBN 979-11-6655-296-0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